

2024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2024. 1.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의 목적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
-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국민 우려 불식
-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천문학적 국가재정 소요 방지

추진방향

- 국민과 국가가 함께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시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
- 질병 예찰 및 검색 등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신고(전용전화 1588-4060, 1588-9060)와 즉각적인 긴급방역 추진체계 구축
- 일선 방역기관에 대한 장비 지원 등을 통해 방역활동의 적정 수행 도모
- 방역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 등

세부사업

①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 긴급방역비, 예방·검진·방제약품, 통제초소 운영비 등 지원
- 가축전염병 검사실 신축 및 개보수, 소독차량 및 방역차량, 거점 세척·소독시설 신축 비용 지원

②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자체 가축방역 평가 지원 및 가축 질병 근절 대책 홍보 등(방역정책과)
-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 등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구제역방역과)

③ 가축백신지원 사업 : 구제역백신접종 지원 등

④ 살처분보상금 사업 : 살처분보상금 및 생계 및 소득안정비용 지원

⑤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 : 매몰지 사후관리, 발굴·복원, 사체처리 시설·장비 지원 등

⑥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사업 : 공중방역수의사 봉급·수당 지원

Contents

2024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 목차 |

I. 가축방역 사업 총괄표	1
1. 가축방역 사업 총괄표	3
II.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5
1.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총괄표	7
2.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운영비	9
1) 긴급방역비	9
2)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및 임관식 여비	10
3. 예방약품 등 지원	11
4. 방역장비 등 지원	30
5. 소독자원 지원	36
1) 소독자원 임차지원	36
2) 지역축협 소독차량 교체 지원	38
6. 사업별 세부 시행내역	39
① 시·도별 사업량	39
② 시·도별 보조금(국비) 예산	45
③ 시·도별 지방비 예산	52
④ 세부사업 시행요령	59
(1) 가축방역비 산출단가	59
(2) 예방약 공급	61
① 소 질병 백신 지원	61
② 돼지열병·단독 혼합	64
③ 돼지열병 마커백신(제주)	65

④ 돼지 질병 백신 지원(일본뇌염, 돼지 유행성설사병)	66
⑤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	67
⑥ 광견병	68
⑦ 진돗개 디스토펜(DHPPL)·심장사상충	69
⑧ 뉴캐슬병	70
⑨ 뉴캐슬병(양계농가)	71
⑩ 오리 바이러스간염	72
⑪ 야생동물 광견병(미끼예방약)	73
⑫ 야생동물 돼지열병(미끼예방약)	74
(3) 검진약품 공급	75
① 젖소 결핵(PPD)	75
② 한·육우 결핵(거래가축)	76
③ 브루셀라병(M.R.T)	77
④ 브루셀라병(Rose-Bengal)	78
⑤ BSE 진단키트 구입비	79
⑥ 사슴 결핵병	80
⑦ 돼지오제스키병	81
⑧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모니터링	82
⑨ 추백리·가금티푸스(평판)	83
⑩ 추백리·가금티푸스(ELISA)	84
⑩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비	85
(4) 방제약품 공급	86
① 소 진드기	86
② 꿀벌 응애류	87
③ 꿀벌 노제마증	89
④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91
(5)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검사계획	93
(6)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94
(7) AI 검사 체계 개편	95
(8)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	96

(9) 가축질병(돼지) 모니터링 검사계획	97
(10) 소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98
(10)-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채혈비	99
(11) 동물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100
(12)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 지원	101
(13)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	102
(14) 가축질병 검사실 운영지원	103
(15)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104
(16)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105
(17) 가축질병(가금) 모니터링 검사	106
(18)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107
(19) 가축질병(양봉) 모니터링 검사	108
(20)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109
(21)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110
(22)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	111
(23) 거점 소독·세척시설 지원	112
7.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113
III.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151
1. 사업 총괄표	153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원 사업	154
3. 방역본부 자산취득 사업	181
4. 방역직 인건비 지원 사업	189
5.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	194
IV. 가축백신지원 사업	213
1. 사업 총괄표	215
2. 사업별 추진개요	216

1) 말 예방백신 등 지원 사업	216
2)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	217
3) 렘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사업	221
3. 세부사업 시행내역	222
4.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232
V. 살처분보상금 사업	237
1. 살처분보상금	239
2. 생계 및 소득안정	240
VI.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	241
1. 사업 총괄표	243
2.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244
3.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	246
4. 사업 세부내역	249
5. 사업비 집행 및 실적 보고	254
VII.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사업	255
1.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사업	257
※ 가축 방역기관 연락처	259
1. 가축 방역기관 연락처	261

I

가축방역 사업 총괄표



■ 가축방역 사업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23년도 사업비 (국 비)	'24년도 사업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287,079,676	529,495,942	324,975,363	160,166,292	44,354,287
□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99,463,000	184,023,120	96,433,000	79,288,120	8,302,000
○ 긴급방역비 등	4,000,000	4,000,000	4,000,000	-	-
○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 등	61,000	53,000	53,000	-	-
○ 수의사 연수교육 등 지원	3,458,000	-	-	-	-
○ 예방약품 등 지원(경상)	77,124,000	157,665,120	78,630,000	70,733,120	8,302,000
○ 방역장비 등 지원(자본)	9,785,000	17,110,000	8,555,000	8,555,000	-
○ 소독자원 지원	5,035,000	5,195,000	5,195,000	-	-
□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63,817,000	88,852,000	64,837,000	24,015,000	-
○ 방역본부 운영지원	34,602,000	34,774,000	34,774,000	-	-
○ 방역본부 자산취득	1,231,000	1,554,000	1,554,000	-	-
○ 방역직 인건비 지원	13,152,000	22,468,000	13,481,000	8,987,000	-
○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14,832,000	30,056,000	15,028,000	15,028,000	-
□ 가축백신지원 사업	53,021,954	132,051,376	65,264,000	32,668,422	34,118,954
□ 살처분보상금 사업	50,215,000	101,839,750	81,315,000	20,524,750	-
○ 살처분보상금	50,215,000	100,268,750	80,215,000	20,053,750	-
○ 생계 및 소득안정	-	1,571,000	1,100,000	471,000	-
□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	9,769,000	8,533,333	2,930,000	3,670,000	1,933,333
□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사업	13,898,676	14,196,363	14,196,363	-	-

II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농특회계 : 예산과목 3940-335)

1.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총괄표	7
2.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운영비	9
3. 예방약품 등 지원	11
4. 방역장비 등 지원	30
5. 소독자원 지원	36
6. 사업별 세부 시행내역	39
7.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113



I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총괄표

(단위 : 명, 대, 개소 천두, 천수, 천건, 천호, 천군, 천원)

구 분	축종	세부사업명		사 업 량		2023 국 비	2024년 사업비		
				2023년	2024년		계	국 비	지 방 비
합 계				-	-	99,463,000	167,092,686	96,433,000	70,659,686
긴급방역비(재료비)				-	-	4,000,000	4,000,000	4,000,000	-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및 여비 등				150	150	61,000	53,000	53,000	-
예 방	소	질병 백신지원	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카바네병 설사병(주사제) 설사병(경구용) 부제병 바이러스성설사병 젖소유방염	2,395.48	2,417.08	4,909,873	6,204,427	4,175,141	2,029,286
	돼지	돼지열병·단독		25,014	25,226.65	3,201,690	6,458,022	3,229,011	3,229,011
		돼지열병 마커백신		1,309	1,309	1,980,000	3,960,000	1,980,000	1,980,000
		질병 백신 지원	일본뇌염	4,426.84	2,505.11	1,588,204	2,537,230	1,687,756	873,975
			유행성설사병	14,553.2	14,553.2	8,731,796	17,463,840	8,731,920	8,731,920
	개	광견병		444.5	501.2	498,000	826,927	561,308	265,619
		진도개 방역		20.2	20.2	201,005	288,162	201,005	87,157
	닭	뉴캐슬병(부화장)		823,000	872,134	3,292,000	6,977,072	3,488,536	3,488,536
		뉴캐슬병(농가)		853,000	856,951.5	1,706,000	3,427,806	1,713,903	1,713,903
	오리	바이러스 간염		3,393	2,936	111,998	223,938	111,969	111,969
	야생 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916.1	893.93	1,989,229	2,772,958	1,941,070	831,888
		살포실시비(광견병)		911	893.72	384,771	536,233	375,363	160,870
돼지열병 미끼백신		672	453.76	658,749	1,191,731	834,212	357,519		
살포실시비(돼지열병)		672	453.76	279,251	203,135	142,195	60,940		
검 진	소	젖소 결핵(PPD)		272.99	188.54	203,921	281,678	249,479	32,199
		한·육우 결핵(거래가축)		759.90	757.86	2,887,616	5,759,736	2,879,868	2,879,868
		브루셀라(MRT)		64.99	63.23	23,137	25,669	22,505	3,164
		브루셀라(RB)		1,638.64	1,757.32	595,936	819,765	638,803	254,482
		소해면상뇌증(BSE)		12.04	12.00	301,100	600,000	300,000	300,000
	사슴	사슴 결핵		4.3	3.97	160,909	300,360	150,180	150,180
	돼지	오제스키병		92	92.52	144,401	163,595	145,089	18,506
		ASF 모니터링		141.07	274.23	2,821,310	5,402,220	2,701,110	2,701,110
	닭	추백리(평판)		94.6	96.2	7,000	11,929	7,119	4,810
		추백리(ELISA)		12.91	12.85	21,997	22,526	21,883	643
조류인플루엔자		222	222	3,327,710	6,655,420	3,327,710	3,327,710		
방 제	소	진드기		1,072	1,094	39,766	57,972	40,471	17,501
	꿀벌	응애류		3,435	3,432.5	3,005,249	4,290,634	3,003,438	1,287,196
		노제마증		2,045	2,044	1,546,247	2,207,520	1,545,264	662,256
		낭충봉아부패병		1,622	1,621	1,519,105	2,168,896	1,518,228	650,668

구분	축종	세부사업명		사 업 량		2023 국 비	2024년 사업비		
				2023년	2024년		계	국 비	지 방 비
예 방 약 품 등 지 원	가축혈청검사·병성감정사업		2,609	2,630	1,000,382	1,018,803	1,018,803	-	
	예방약류 구매 조달 수수료		-	-	282,907	250,000	250,000	-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검사		1.55	1.55	200,000	400,000	200,000	200,000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2,736	2,736	305,000	610,000	305,000	305,000	
	AI 정밀검사 체계 개편		-	4,000	-	1,212,000	606,000	606,000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286	286	858,000	1,716,000	858,000	858,000	
	가축질병(돼지) 모니터링 검사		286	286	715,000	1,430,000	715,000	715,000	
	소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비		961.66	1,024.89	4,327,458	15,373,350	4,612,002	10,761,348	
	살처분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		20	20	10,000	20,000	10,000	10,000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비		277	177	1,504,664	3,761,660	1,504,664	2,256,996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통신료	70,000	70,000	2,079,000	4,158,000	2,079,000	2,079,000	
		무선인식장치(GPS)	장착비용 지원	25,500	26,000	765,000	1,530,000	765,000	765,000
	가축질병 검사실 운영 지원		21	21	315,000	630,000	315,000	315,000	
	가축질병 가상방역훈련		20	20	150,000	300,000	150,000	150,000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500	500	1,500,000	3,000,000	1,500,000	1,500,000	
	가축질병(가금) 모니터링 검사		500	500	1,000,000	2,000,000	1,000,000	1,000,000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	250	-	600,000	300,000	300,000	
	가축질병(양봉) 모니터링 검사		-	250	-	1,000,000	500,000	500,000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150	150	1,200,000	2,400,000	1,200,000	1,200,000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217	217	13,700,000	27,400,000	13,700,000	13,700,000	
	예방약품 등 지원		1,853,283	1,901,991	77,124,000	150,649,214	78,630,000	70,733,120	
방 역 장 비 등 지 원	방역차량		50	45	1,000,000	1,800,000	900,000	900,000	
	소독차량		40	35	800,000	1,400,000	700,000	700,000	
	시험소 검사장비		97	107	2,515,000	5,030,000	2,515,000	2,515,000	
	소독장비		10	10	50,000	100,000	50,000	50,000	
	거점소독·세척시설	신 축	20	9	1,576,000	3,152,000	1,576,000	1,576,000	
		개보수		30	874,000	1,748,000	874,000	874,000	
	검사시설	신 축	2	1	2,400,000	3,600,000	1,800,000	1,800,000	
		개보수	2	2	140,000	280,000	140,000	140,000	
	방역장비 등 지원		221	239	9,785,000	17,110,000	8,555,000	8,555,000	
소독자원 임차지원		-	-	5,035,000	5,035,000	5,035,000	-		
지역축협 소독차량 교체 지원		-	-	160,000	160,000	160,000	-		
소독자원 지원		-	-	5,035,000	5,195,000	5,195,000	-		

II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운영비

1. 긴급방역비(210-11, 운영비-재료비)

■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조치 추진에 소요되는 진단키트 및 방역복 등 방역물품 구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검사를 위한 재료 구입 등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 등에 필요한 예방 약품 등 방역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발생농가 및 인접지역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 소요 비용
 - 기타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 긴급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방약·진단 키트 등의 구입과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체계
 - ① 시·도 및 관계기관에서 상기 사유 발생 시 농식품부에 긴급방역비 지원 요청 (구체적인 사유, 소요예산 및 사업비 산출기준 첨부)
 - ② 농식품부에서 시·도 및 관계기관의 요청내용을 검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
 - ③ 농식품부에서 해당 기관에 자금 재배정 및 내역 통보

※ 시·도 및 관계기관에서는 긴급방역비 집행 완료 후 집행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4,000,000	4,000,000	-	-

* 지원비율 : 국비 100%, **배정예산은 반드시 연내 집행 완료**(연내 미집행시 차년도 배정 시 반영)

2.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및 임관식 여비(210-01 일반수용비, 220-01 국내여비)

■ 사업목적

- 신규 임용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가축방역 업무 수행능력 배양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중방역수의사 신규 임용자(약 150명)
- 지원근거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의 여비 및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공중방역수의사 신규 임용자의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 공중방역수의사 임관식 개최 후, 근무지 배치 시 소요되는 여비
- 지원방법
 -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비는 농식품부에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일괄 지급하되, 여비는 임관식 개최 후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배치지역에 따라 개별 지급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53,000	53,000	-	-

* 지원비율 : 국비 100%

III 예방약품 등 지원(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1. 예방·검진·기생충구제 약품 지원

■ 예방·검진·기생충구제 약품 종류

● 예방약품 : 21종 <세부내역: 61쪽~74쪽>

- 소 : 9종(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카바네병, 설사병(주사), 설사병(경구), 부제병, 소바이러스성 설사병, 젖소유방염)
- 돼지 : 6종(돼지열병·단독, 돼지열병 마커백신(제주), 일본뇌염, 유행성설사병, PCV-2)
- 개 : 2종(광견병, 진돗개 디스토퍼·심장사상충)
- 닭 : 1종(뉴캐슬병)
- 오리 : 1종(바이러스간염)
- 야생동물 : 2종(광견병, 돼지열병 미끼예방약)

● 검진약품 : 8종, 11개 품목 <세부내역: 75쪽~85쪽>

- 소 : 3종, 5개 품목(우결핵 PPD, 우결핵 감마인터페론, 브루셀라 MRT, 브루셀라 Rose-Benga, 소해면상뇌증(BSE))
- 사슴 : 1종, 1개 품목(사슴 결핵병)
- 돼지 : 2종, 2개 품목(오제스키병, 아프리카돼지열병)
- 닭 : 2종, 3개 품목(추백리 평판, 추백리 ELISA, 조류인플루엔자)

● 방제약품 : 4종(소-진드기, 꿀벌-응애류·노제마증·낭충봉아부패병) <세부내역: 86쪽~92쪽>

■ 사업물량 배정 및 제품 선정·공급·보관 등 사업실시 요령

① 예방약품

- 물량배정 : 시·도지사는 시·군별 농가수·사육두수 및 전염병 발생동향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 배정기준을 결정

- 광견병은 경기·강원의 경우,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에 대하여는 소·개 사육두수의 100% 공급, 기타 지역은 사육하는 개·소·반려견 순으로 공급
- '21년~ 현재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구제역, 돼지열병, 뉴캐슬병 및 긴급접종명령에 따른 의무 예방접종 지원은 예외로 함)
- 제품선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후
 - 협의회 구성: 방역본부 방역사, 공·개업수의사, 지역축협장, 농가대표 등
 - ※ 정부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제품을 선정하는 경우, 지방비 투입 또는 농가 자부담 조치
- 약품공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부조달계약 단가에 따라 사업계획 물량을 구입한 후,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배부
 - 공통 : 시·군별 방역관, 공·개업수의사 및 방역보조원 등을 통해 공급하되,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배분도 가능(냉장보관시설 준비 시에 한함)
 - 공급대상 : 공동방역 참여농가 및 영세규모 사육농가 우선
 - 뉴캐슬병(단일) 또는 뉴캐슬병 + 전염성기관지염(합제) 예방약
 - 부화장 : 자동분무기 또는 반자동 분무기가 설치되고 축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시·군에 등록된 부화장에 대해 공급하되, 부화 및 접종실적(분무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실적)을 감안하여 물량 공급
 - 농가 : 농가로 하여금 등록된 부화장에서 발급한 분무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증명서에 기재된 물량을 확인한 후 공급

② 검진약품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별 관내 사육두수 및 전염병 발생동향 등을 감안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진물량 배정
-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배정된 검진물량에 따라 진단액을 구입(정부조달계약단가에 따라 구입), 대상농가를 방문하여 검진 실시
 - 검진성적을 해당 농가 및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이동제한, 살처분 등 방역 관리

③ 방제약품

- 물량 배정 : 시·도지사는 시·군별 농가수·사육두수 및 전염병 발생동향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 배정기준을 결정

- '21년~ 현재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에는 유기합성 농약성분이 포함된 방제약품 지원 금지
- 시·도(시·군)은 사업계획에 따라 구제약품을 구입(정부조달계약단가에 따라 구입)하여 대상농가에 공급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개량종 및 재래종 관련협회(한국양봉협회 등) 시·도지회 및 시·군 분회 등과 협의하여 꿀벌 관련 약제 선정* 및 배정 방법을 결정하고,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구제 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시·군의 지방비 부담 여부를 확인
- * 꿀벌응애 방제제 선정 시 2년 연속 동일한 합성화학제 성분※ 이 선정되지 않도록 할 것
[’24년도에는 꿀벌 응애에 저항성이 있다고 보고된 성분(예 : 플루발리네이트) 지원 제외]
- ※ 합성화학제 종류 : 아미트라즈, 시미아줄, 쿠마포스, 플루발리네이트 등
- 시·도지사는 시·군별 꿀벌 방제약품 선정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연 2회: ’24.3월·6월 말까지)

④ 가축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 사업목적

- 혈청검사·병성감정을 통한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예방접종 확인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주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시험소)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사업량 : 105종, 2,630천두분
 - 소 : 19종, 129천두분(혈청검사 61, 병성감정 68)
 - 돼지 : 29종, 523천두분(혈청검사 388, 병성감정 135)
 - 가금류 : 23종, 612천두분(혈청검사 525, 병성감정 87)
 - 기타 : 34종, 1,367천두분(혈청검사 1,287, 병성감정 80)
- 사업내용 :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에 소요되는 진단액류, 재료비 지원
- ※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3 참고

2.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 사업목적

-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관련 민간 수의사(공수의 포함)를 통한 시료채취시 인건비 등을 지급

■ 사업개요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610,000	305,000	305,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급단가 : 민간 수의사(공수의 포함) 시료채취비는 '수의사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거, 203천원(1일 8시간 근로 기준 일당)을 지급하되, 근무지 내 출장여비 20천원 추가 지급 가능

※ 일액 : 203,120원 = 25,390원 × 8시간 / 시급 지원 가능

3. AI 정밀검사 체계 개편

■ 사업목적

-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검사에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활용하여 급증하는 검사물량 신속대응 및 검사능력 확대

■ 사업개요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212,000	606,000	606,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기타 세부사항은 「'24년도 민간 검사기관 AI 정밀검사 사업지침」에 따름

4.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 사업목적

- 농가위생·방역 시설 개선 및 방역의식 제고, 농가별 맞춤형 가축질병 관리 컨설팅 실시
- 돼지소모성질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대외경쟁력 제고
- 실험실 진단을 통해 농장의 정확한 가축전염병 감염 현황을 축주에 제공하여 농장별 전염병 확산 방안 마련 유도

■ 사업개요

- 주 관 : 시·도 및 시·군·구(협조 : 대한한돈협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지원대상 : 286개소(양돈농가 및 종돈장·정액 등 처리업체)
※ 시·도별 : 대구 1, 인천 6, 울산 1, 경기 40, 강원 10, 충북 8, 충남 43, 전북 54, 전남 26, 경북 27, 경남 50, 제주 20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860,000	858,000	858,000	1,144,000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기준 : 개소당 10백만원(국비 3, 지방비 3, 자부담 4)
- 지원내역 : 자문단 시료채취,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비용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주요역할
 - 혈액, 분변, 사체 장기 등 시료채취를 통한 농가에 감염되어 있는 소모성질환 및 그 외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 시료 진단은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계획을 연계하여 시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동물위생시험소 등)에서 진단요령(검역본부)에 따라 실시

- ※ 실험 결과를 축주, 자문단 및 지자체에 공유하여 지자체는 전염병 진단 실적을 차년도사업 시 자문단 선정에 참고
- 컨설팅 자문단은 방역, 질병, 사양 및 환기 전문가로 구성하여 양돈농가 및 종돈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농가 방역 및 질병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 농가별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확대 및 시설개선 방안 등 지도
- 이외 사항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시행(별도 공문 송부 예정)

5. 가축질병(돼지) 모니터링 검사

■ 사업목적

-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대상농가에 대한 농장단위 질병감염 상황 분석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효과 향상 및 현장 질병발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방역정책 수립 시 활용

■ 사업개요

- 주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시험소)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대상 :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대상자 286개소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430,000	715,000	715,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농가별 연 2회 돼지질병 10종 검사 및 질병실태 조사

6.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 등

■ 사업목적

- 한·육우 등을 대상으로 소브루셀라병·결핵병 검진을 강화하여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도태로 질병 확산을 방지
- ※ 돼지 등 다른 축종의 긴급 수요 발생 시,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기준을 준용하되, 사업량 및 지급단가 등을 조정

■ 사업개요

- 사업물량 : 1,025천두
- '24년 사업비 : 15,373,340천원(국비 4,612,002, 지방비 10,761,338)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5,373,340	4,612,002	10,761,338	-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70%

- 지급단가 : 두당 15천원(국비 4.5, 지방비 10.5)

* 부족분 또는 추가소요액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

※ 한가지 질병에 대한 시료 채취 시 두당 10천원(국비 3, 지방비 7)

7.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

■ 사업목적

- 살처분 및 사체처리 현장에 동원된 자의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법 제49조의2 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치료는 전문가 상담치료와 상담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로 하되, 치료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한다.

■ 사업개요

- 주관 : 시·도 및 시·군·구
- 지원대상
 -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등
 - 가축사체 처리에 참여한 살처분 업체 인력 및 관계자, 가축의 소유자,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등
 - 자원봉사자 등 그 밖에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매몰한 사람
- 지원내용 : 국·공립병원·민간의료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 의료비 지원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00	1,000	1,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단가 : 20명×100천원×10일

- 추진체계 : 살처분 이후 심리지원 의료비 소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신청(시·도) → 시도별 예산 교부(농식품부) → 신청자 계좌입금(시·군·구)

※ 기타 세부사항은 “살처분 참여자 심층치료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8.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비

■ 사업목적

- 동물위생시험소 보조인력 충원으로 효율적인 가축방역 업무 수행

■ 사업개요

- 동물위생시험소 본·지소(47개소)에 일용직 가축방역보조원 일용임금 지원
- 사업물량 및 사업비 : 277명/3,761,660천원(국비 1,504,664, 지방비 2,256,996)
- 인건비 지급기준 : 54,320원/일, 13,580천원/연(국비 5,432, 지방비 8,148)
※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인건비 부족분은 지방비를 별도로 확보하여 집행
- 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과 수당 등은 지방비로 별도 지원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3,761,660	1,504,664	2,256,996	-

* 지원비율 : 국비 40%, 지방비 60%

- 보조원 자격 및 채용 우선순위
 - ① 대졸이상 학력의 수의·축산·자연과학 전공자
 - ② 전문대 또는 고졸이상으로 방역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③ 고졸이하 학력 소지자 중 방역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방역보조원 임무
 - 실험실 업무, 농장 시료채취, 소독, 농가 방역지도 및 점검 관리업무 보조
 - 전염병 발생 시 이동제한 통제, 농장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 업무 보조

9.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

■ 사업목적

- 가축질병 발생 시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 정보를 수집분석함으로써 가축방역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마련하고자 축산차량 출입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한 차량 소유주에 대한 통신료 일부를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한 차량 소유자
- 사 업 량 : 70,000대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8,316,000	2,079,000	2,079,000	4,158,000

* 지원비율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지원단가 : 월 9,900원/대(국비 2,475, 지방비 2,475, 자부담 4,950)
 - 사업추진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운행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지원
 - 이동통신사는 매월 시·도 또는 시·군·구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가입내역에 따라 통신비의 50%는 지자체, 50%는 가입자에게 청구
- ※ 이동통신사 청구 서류 : GPS 가입내역, 청구서 등

10.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

■ 사업목적

- 축산차량 GPS 단말기가 상시 작동될 수 있도록 단말기 장착비용 지원을 통한 축산시설 방문기록 상시 수집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축산차량 GPS 단말기 신규 및 교체 수령자
(축산차량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자)
- 사업량 : 25,500대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530,000	765,000	765,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60,000원/대(국비 30,000, 지방비 30,000)
 - 사업추진
 - 축산차량 GPS 단말기를 상시전원 방식으로 설치하고 신규 및 이전 설치 비용을 단말기 설치업체(이통사 또는 단말기 제조업체 지정)에 지급
 - 단말기 설치업체는 매월 말 시·도 또는 시·군·구별 GPS 단말기 설치내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지자체는 다음 월 10일까지 업체에 설치비용 지급
- ※ 설치업체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설치 증빙사진 등

11. 가축질병 검사실 운영 지원

■ 사업목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시설 유지비용 일부 지원

※ 가축전염병 진단 등을 위한 실험실의 경우 일정한 온·습도, 압력 유지와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관리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검사시설을 보유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량 : 21개소(울산 1, 세종 1, 경기 3, 강원 2, 충북 2, 충남 2, 전북 2, 전남 1, 경북 2, 경남 4, 제주 1)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630,000	315,000	315,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30,000천원/개소(국비 15,000, 지방비 15,000)

- 사업추진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전염병 검사실 유지·보수 전문용역기관과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후 사업 추진에 따라 비용 집행

※ 유지·보수비가 부족한 시·도에서는 지방비를 별도 확보하여 추진

12. 가축질병 가상방역훈련

■ 사업목적

- 방역훈련을 통하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훈련 실시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과거 가축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철새 도래지 등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도(시·군·구) 또는 가축질병 발생 우려가 있는 시·도(시·군·구) 등
- 사업량 : 20개소(대구 1, 울산 1, 세종 1, 경기 2, 강원 2, 충북 1, 충남 2, 전북 2, 전남 1, 경북 1, 경남 2, 제주 1, 유보 3)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300,000	150,000	15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15,000천원/건(국비 7,500, 지방비 7,500)
- 사업추진 : 시·도지사는 5월까지 대상 시·군·구를 선정하여 보고하고(시·도 직접 실시 가능),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한 뒤 결과 보고

13.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 사업목적

- 가금농가의 질병 및 사양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가금농가의 구조 및 체질 개선을 통해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본적 예방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1~12월(연중)
- 주관 : 시·도 및 시·군·구
- 협조 :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 조류질병과), 양계·오리·육계·산란계·토종닭협회, 닭고기·계란자조금위원회
- 자문단수 : 74개반, 162명(질병 85명, 사양 77)
- 지원대상 : 500개소(오리 및 닭 사육농가)
 - * 지원대상 농가 : 인천 6, 울산 1, 경기 79, 강원 13, 충북 6, 충남 46, 전북 137, 전남 74, 경북 71, 경남 55, 제주 12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비용
 -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5,000,000	1,500,000	1,500,000	2,000,000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단가 : 10백만원/개소(국비 3, 지방비 3, 자부담 4)
- 주요역할
 - 질병 및 사양 전문가로 구성하여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농가별 자율 방역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개선 방안 지도

14. 가축질병(가금) 모니터링 검사

■ 사업목적

-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대상농가에 대한 농장단위 질병감염 상황 분석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효과 극대화 및 현장 질병 발생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방역정책 수립 시 활용

■ 사업개요

- 주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시험소)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대상 :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대상자 500호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00,000	1,000,000	1,00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농가별 연 5회 가금질병(닭 11종, 오리 4종) 검사 및 질병실태 조사

15.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 사업목적

- “월동 꿀벌 피해 조기회복 및 재방발지 대책”(‘23.3.16.)의 일환으로 양봉농가의 꿀벌질병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농가 컨설팅 지원
 - 농가 질병·사양관리 컨설팅, 응애 모니터링 및 내성 응애 조사분석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1~12월(연중)
- 주관 : 시·도 및 시·군·구

- 협조 :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 세균질병과), 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 대한 꿀벌수의사회
- 자문단수 : '24년도 신규 자문단 선정 예정('24.2월 중)
- 지원대상 : 양봉농가 250개소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 중 100봉군 이상의 농가로 양봉장 기준의 주소지에 등록한 농가에 한함
 - * 지원대상 농가 : 대전 1, 경기 21, 강원 10, 충북 20, 충남 23, 전북 29, 전남 40, 경북 29, 경남 46, 제주 2, 유보 29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비용
 -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000,000	300,000	300,000	400,000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단가 : 4백만원/개소(국비 3, 지방비 3, 자부담 4)
- 주요역할
 - 질병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응애 등 꿀벌질병의 정확한 진단 및 참여 농가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처방제도 안내 및 올바른 약품 구입·사용 방법 등 지도, 체계적 사양관리 실시

16. 가축질병(꿀벌) 모니터링 검사

■ 사업목적

-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대상 농가에 대한 농장 단위 꿀벌응애 등 질병감염 상황 분석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효과 극대화 및 현장 질병 발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꿀벌방역 관리 시 활용

■ 사업개요

- 주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시험소)
- 대상 :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대상농가 250호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000,000	500,000	50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농가별 연 2회 이상 꿀벌질병(14종) 및 응애 감염도·내성 검사와 질병실태 조사

17.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 사업목적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과 달걀 등 축산물 안전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1~12월
- 주 관 : 시·도(시·군·구)
- 지원대상 : 12개 시·도 150개소 이상(산란계 농가)
 - ※ 지원대상 농가 : 인천 3, 울산 2, 세종 10, 경기 27, 강원 10, 충북 11, 충남 16, 전북 10, 전남 13, 경북 22, 경남 17, 제주 9
- 지원내용
 -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 방제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활용한 닭진드기 방제, 충란제거 등의 목적으로 청소·세척·소독 및 사후관리 지원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3,000,000	1,200,000	1,200,000	600,000

* 지원비율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지원단가 : 5만수 사육 시 농가별 20백만원 이하(국비 8, 지방비 8, 자부담 4)

※ 지원제외 대상 규모 : 20만수 초과 산란계 농가

18.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 사업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지자체가 설치하는 통제초소(농장초소 포함) 운영과 소독(거점소독시설에서의 소독 포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 확산 방지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법 제50조제2항에 지자체가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지원대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또는 위기단계 “심각” 단계에 준하는 상황,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특정 시·군에서 검출되어 구제역 전파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상황 시 지자체가 설치하는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 지원
 - ※ “심각” 단계에 준하는 상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결정에 따름
- 지원내역 : 통제초소 운영비용(설치·유지비, 방역용품·인건비 등) 및 소독비용
 - 지원단가 : 1개소×10.5백만원×12개월×50%=63백만원 (지자체 운영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량은 달라질 수 있음)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7,400,000	13,700,000	13,70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체계
 - 소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시·도) → 지출한도액 배정(농식품부)
 - 가축전염병 발생 및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 조치로 통제초소 설치에 소요되는 운영비 추정액의 50%까지 우선 지급
 - ※ 기타 세부사항은 “통제초소 운영지원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 시행지침 참고

Ⅳ 방역장비 등 지원(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지자체 방역시설·장비 등 지원

■ 사업목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의 노후한 가축방역 시설 및 장비를 교체하여 원활한 가축방역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구
- 지원품목 : 방역차량, 소독차량, 소독장비, 검사장비, 거점세척·소독시설 등
- 사업량 : 239대·개소(방역차량 45, 소독차량 35, 소독장비 10, 검사장비 107, 거점세척·소독시설(신축 9개소, 개보수 30개소), 검사실 신축 1개소, 개보수 2개소)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7,110,000	8,555,000	8,555,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부족 예산은 지방비를 추가 확보)

● 지원단가

구분	지원품목		지원단가	국비 및 지방비
1	방역차량		40백만원/대	국비 20, 지방비 20
2	소독차량		40백만원/대	국비 20, 지방비 20
3	시험소 검사장비		별첨2 참고	별첨2 참고
4	소독장비		10백만원/대	국비 5, 지방비 5
5	거점 세척·소독시설	신축	576백만원/개소 (4개소)	국비 288, 지방비 288
			800백만원/개소 (단기인상 반영 5개소)	국비 400, 지방비 400
		개보수	60백만원/개소	국비 30, 지방비 30
6	가축전염병 검사실 신축		6,000백만원/개소(2개년 사업)	국비 3,000, 지방비 3,000
7	가축전염병 검사실 개보수		140백만원/개소	국비 70, 지방비 70

● 사업 추진체계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구는 사업물량 범위 내에서 조달계약 등을 통해 가축방역 시설·장비 구입
- 검사시설 개보수 외 장비 등의 유지·보수비용은 지방비로 부담

나. 시설·장비별 사업개요

1. 방역차량 지원

- 사업목적 :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하거나 신규로 방역차량을 구입하여 방역사업에 활용하여 가축방역 업무의 원활한 추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구
 - 사업량 : 45대(대구 1, 인천 2, 울산 1, 세종 1, 경기 8, 강원 3, 충북 1, 충남 9, 전북 3, 전남 3, 경북 7, 경남 5, 유보 1)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800,000	900,000	90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40,000천원/대(국비 20,000, 지방비 20,000)

※ 차량 구입비용이 4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구입

2. 소독차량 지원

- 사업목적 : 내구연한이 경과한 소독차량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소독차량을 구입하여 농가 소독 지원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구
- 사업량 : 35대(부산 1, 경기 5, 강원 1, 충남 3, 전북 2, 전남 1, 경북 3, 경남 1, 제주 3, 유보 15)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400,000	700,000	70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40,000천원/대(국비 20,000, 지방비 20,000)

※ 차량 구입비용이 4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구입

3.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장비 지원

- 사업목적 :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추진하는 가축전염병 검사,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에 필요한 검사장비를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진단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사업량 : 107대(서울 1, 부산 1, 대구 3, 인천 2, 광주 1, 대전 2, 울산 1, 경기 19, 강원 18, 충북 7, 충남 9, 전북 5, 전남 12, 경북 7, 경남 11, 제주 8)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5,030,000	2,515,000	2,515,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장비 구입 시 국비 지원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가축질병 검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장비 구입 불가

4. 소독장비

- 사업목적 : 질병 발생 시 또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 등 통제초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독장비를 공급·활용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시·도 또는 시·군·구 내 가축방역시설(축산농가는 제외)
 - 사업량 : 10대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00,000	50,000	5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10,000천원/대(국비 5,000, 지방비 5,000)

※ 소독장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별도 확보하여 집행

5. 거점 세척·소독시설

- 사업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차단방역 조치를 위한 지역별 거점 소독·세척 시설 지원
- 사업개요
 - 대상 : 축산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 또는 도축장·사료공장·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시설물 등
 - 사업량 : (신규) 9개소, (개보수) 30개소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4,900,000	2,450,000	2,45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신규설치 우선지원)
 - 신규설치 : 576백만원/개소(국비 288, 지방비 288, 총액 기준)
 - * 2년차 각 144백만원(청주, 원주, 순창, 완도)
 - 신규설치 : 800백만원/개소(국비 400, 지방비 400, 총액 기준)
 - * '23년도 이후 단가인상 반영 1차년도 각 200백만원(포천, 원주, 청주, 청양, 김제)
- ※ 조기 완공 가능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기 교부 가능
- 개보수 : 국비 50%, 지방비 50%
- ※ 거점세척·소독시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별도 확보하여 집행
- ※ 기타 세부사항은 “24년 거점 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

6. 가축질병 검사실 신축

●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검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시설 신축 비용 지원

※ BL3 수준으로 신축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및 사업량 : 신축 1개소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신 축	3,600,000	1,800,000	1,80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2024년은 2년차 1,800백만원 지원(제주)

※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별도 확보하여 집행

7. 가축질병 검사실 개보수

●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검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및 사업량 : 개보수 2개소(서울, 충남)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개보수	280,000	140,000	140,00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개보수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별도 확보하여 집행

V

소독자원 지원

1. 소독자원 임차지원(320-01, 민간경상보조)

■ 사업목적

-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바이러스의 전파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등 소독자원 임차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1~12월
 - 특별방역기간 및 질병 발생 시기를 중심으로 소독자원 임차지원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제
- 사업시행 : 농협경제지주
- 지원내용
 -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 및 발생상황을 대비하여 소독자원 임차 지원(광역방제기, 살수차, 방역차, 드론 등)
- 사업량(누계) : 살수차 1,000대, 광역방제기 300대, 방역차 700대 등
 - 임차 수요에 따라 소독자원 품목 및 대수 변경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5,035,000	5,035,000	-	-

* 지원비율 : 국비 100%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지자체의 소독자원 운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필요한 임차 소독자원 수요를 조사하고 결과를 지자체 등에 통보
- 농협경제지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독자원을 임차하여 지자체에 배정하되, 임차대상 소독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
- 지자체는 소독자원 운용을 위한 사전준비(소독제, 물 공급을 위한 관계부처 협조 등), 소독자원 운전자의 지도 감독

2. 지역축협 소독차량 교체 지원(320-07, 민간자본보조)

■ 사업목적

- 민간 방역기관인 지역축협에 소독차량 교체 지원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1~12월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 사업시행 : 농협경제지주
- 지원내용
 - 민간 방역 기관인 지역 축협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소독차량 교체 지원
- 사업량 : 8대
- '24년 사업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320,000	160,000	-	160,000

* 지원비율 : 국비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40,000천원/대(국비 20,000, 자부담 20,000)

※ 지원비율을 준수하여 대당 최대 22,500원까지 국비 지원 가능하고, 부족분은 자부담으로 집행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농식품부는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을 농협경제지주에 시달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 농식품부에 제출('24.2월)하고 승인 후 그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하되, 지원대상 소독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

VI 사업별 세부 시행내역

1. 시·도별 사업량

(단위 : 천두, 천수)

구분	총 계 (예방, 검진, 방제약품)	예 방				
		소	돼 지			
		질병 백신 지원	열병·단독, 마커백신 (제주)	질병 백신 지원		PCV-2
		탄저·기증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키버네병, 설사병(주사제), 설사병(경구용), 부제병, 소바이러스성설사병, 젖소유방염		일본 뇌염	유행성 설사병	
서울	158.89	-	-	-	-	-
부산	1359.21	1.42	14	2.89	7.8	
대구	4008.88	35.05	100	16.91	100.4	
인천	5590.52	10.35	79.7	5.80	58.2	
광주	697.46	3.56	40	3.02	14.4	
대전	479.14	3.55	1.5	0.09	-	
울산	2497.67	13.26	59	11.30	58.2	
세종	12483.4	18.91	218	21.58	131.9	
경기	364028	326.28	4,690.5	398.85	2,782.7	
강원	34251.8	76.18	1,377.95	99.60	589.7	
충북	108289	109.94	1,800	143.92	800.2	
충남	298553	245.66	5,100	527.61	2,771.2	
전북	500433	239.36	2,978	312.97	1,687.8	
전남	182465	347.28	2,596	245.34	1,471.5	
경북	195664	760.24	3,615	279.36	1,784.2	
경남	64526.8	225.57	2,557	286.49	1,500.0	
제주	20770.5	9.38	1,309	149.38	795.0	
기타	-	-	-	-	-	
계	1,796,256.27	2,425.99	26,535.65	2,505.11	14,553.2	

(단위 : 천두, 천수)

구분	예 방						
	광견병	진돗개	뉴캐슬병		오리 바이러스 간염	야생동물	
			부화장	농가		광견병	돼지 열병
서울	65.3	-	-	-	-	74.2	-
부산	13	-	1,067	180	-	-	-
대구	7.2	-	-	3,521	-	-	-
인천	17.7	-	-	5,318	-	2.5	10
광주	3	-	-	500	-	-	-
대전	2	-	-	400	-	-	-
울산	4	-	-	2,098	-	-	-
세종	2	-	4,000	7,996	-	-	-
경기	165	-	203,789	149,986	45	207	300
강원	79	-	15	30,000	-	610.2	143.76
충북	28	-	53,449	50,144	187	-	-
충남	19	-	162,500	125,080	250	-	-
전북	23	-	333,000	159,932	947	-	-
전남	15	20.2	19,165	154,934	1,952	-	-
경북	23.9	-	79,568	107,365	-	-	-
경남	29	-	5,822	52,111	262	-	-
제주	5	-	9,759	7,387	-	-	-
기타	-	-	-	-	-	-	-
계	501.1	20.2	872,134	856,952	3,643	893.9	453.76

(단위 : 천두, 천수, 천건, 천호)

구분	검진											방제			
	젖소 결핵 (PPD)	한·육우 결핵 (거래 가축)	브루 셀라 (MRT)	브루 셀라 (RB)	BSE	사슴 결핵	오제 스키	ASF 모니 터링	추백리 (평판)	추백리 (ELISA)	조류 인플 루 엔자	소 진드기	꿀벌 응애	꿀벌 노제 마병	낭충 봉아 부패병
서울	-	0.10	-	0.09	-	-	-	-	-	-	1.2	-	6	6	6
부산	0.13	0.30	0.10	1.54	-	-	0.09	0.14	-	-	0.8	-	35	25	10
대구	0.38	4.00	1.03	14.37	1.10	-	0.73	0.71	-	-	2.5	-	89.2	63.2	51.1
인천	0.98	3.70	0.74	7.14	0.48	18	0.04	0.79	0.5	0.1	0.3	-	28.5	15	12
광주	0.21	1.70	0.10	2.80	0.48	-	0.08	0.31	-	-	1.8	-	45	43	38
대전	-	1.80	-	2.90	0.80	-	0.02	0.18	-	-	0.3	-	35	17	14
울산	0.31	5.00	0.19	20.10	0.58	53	0.16	0.37	-	-	1.2	-	76	54	43
세종	2.45	4.30	2.05	16.32	-	24	0.89	0.64	0.1	0.01	2.2	-	22	13	7
경기	83.65	53.00	21.97	179.84	0.85	453	16.05	93.03	15.5	1	31.7	-	203	100	85
강원	9.75	33.10	3.04	142.38	0.65	443	5.19	30.3	1.8	0.3	6.8	19.05	295	150	120
충북	8.12	39.20	3.79	153.99	0.96	447	9.12	47.5	8.2	1	38.0	-	420	250	200
충남	39.23	120.00	12.32	225.86	1.44	897	15.79	14.27	20	3.3	28.3	-	334	187	161
전북	7.34	105.66	2.61	95.99	0.61	341	10.27	10.3	33	4.4	32.6	-	334	188	147
전남	9.75	170.00	4.26	284.57	0.63	447	9.38	8.37	9	1.1	41.8	4.86	360	207	161
경북	16.02	160.00	6.16	376.77	1.00	296	10.53	55.08	5.4	1.1	22.4	-	584	408.8	324.9
경남	9.26	52.90	4.36	218.16	1.94	521	10.39	8.39	2.2	0.4	7.7	-	460	250	187
제주	0.96	3.10	0.51	12.50	0.48	33	3.79	3.85	0.5	0.1	2.1	1069.89	105	67	54
기타	-	-	-	-	-	-	-	-	-	-	-	-	-	-	-
계	188.54	757.86	63.23	1,755.32	12	3,973	92.52	274.23	96.2	12.81	221.7	1,093.8	3,431.7	2,044	1,621

(단위 : 호, 두, 천두, 명, 대, 개소)

구분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AI 치료채취 비용 지원	AI 정밀검사 체계 개편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	가축질병 (돼지) 모니터링	소 브루셀라 및 결핵 채혈비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서울	0.39	-	-	-	-	-	-	-
부산	0.20	-	-	-	-	0.67	-	4
대구	0.16	14	-	1	1	12.46	-	5
인천	0.16	13	-	6	6	5.90	-	4
광주	0.16	-	-	-	-	2.00	-	4
대전	0.16	-	-	-	-	0.95	-	4
울산	0.16	-	-	1	1	11.66	-	2
세종	-	-	-	-	-	10.00	-	5
경기	0.16	410	1,000	40	40	70.92	-	29
강원	-	335	-	10	10	70.00	-	29
충북	-	264	1,000	8	8	67.58	-	21
충남	-	256	1,000	43	43	90.00	-	44
전북	-	738	1,000	54	54	104.38	-	31
전남	-	544	-	26	26	227.51	-	23
경북	-	200	-	27	27	200.86	-	25
경남	-	188	-	50	50	140.00	-	30
제주	-	43	-	20	20	10.00	-	18
기타	-	-	-	-	-	-	20	-
계	1.55	3,005	4,000	286	286	1,024.89	20	278

(단위 : 호, 두, 천두, 명, 대, 개소)

구분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GPS)		가축 질병 검사실 운영비	가축질병 가상방역 훈련	기금 농가 질병 관리 지원	가축질병 (가금) 모니터링	양봉 농가 질병 관리 지원	가축질병 (양봉) 모니터링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통신료	장착비용 지원								
서울	410	160	-	-	-	-	-	-	-	-
부산	390	100	-	-	-	-	-	-	-	1
대구	1,200	403	-	1	-	-	-	-	-	3
인천	870	272	-	-	6	6	-	-	3	2
광주	660	270	-	-	-	-	-	-	-	-
대전	465	180	-	-	-	-	1	1	-	-
울산	910	450	1	1	1	1	-	-	2	1
세종	640	220	1	1	-	-	-	-	10	3
경기	10,000	2,500	3	2	79	79	21	21	27	32
강원	4,555	1,525	2	2	13	13	10	10	10	16
충북	5,316	1,200	2	1	6	6	20	20	11	22
충남	9,350	2,375	2	2	46	46	23	23	16	25
전북	7,600	3,100	2	2	137	137	29	29	10	24
전남	7,424	2,610	1	1	74	74	40	40	13	38
경북	10,920	3,860	2	1	71	71	29	29	22	21
경남	7,860	3,000	4	2	55	55	46	46	17	21
제주	1,430	349	1	1	12	12	2	2	9	8
기타	-	2,926	-	3	-	-	29	29	-	-
계	70,000	25,500	21	20	500	500	250	250	150	217

(단위 : 대, 개소)

구분	시·도(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							
	방역 차량	소독 차량	검사 장비	소독 장비	거점소독시설		가축질병 검사시설 신축	가축질병 검사시설 개보수
					신규	개보수		
서울	-	-	1	-	-	-	-	1
부산	-	1	1	-	-	-	-	-
대구	1	-	3	-	-	-	-	-
인천	2	-	2	-	-	-	-	-
광주	-	-	1	-	-	-	-	-
대전	-	-	2	-	-	-	-	-
울산	1	-	1	-	-	-	-	-
세종	1	-	-	-	-	-	-	-
경기	8	5	19	-	1	2	-	-
강원	3	1	18	1	1	4	-	-
충북	1	-	7	-	2	5	-	-
충남	9	3	9	-	1	4	-	1
전북	3	2	5	-	3	2	-	-
전남	3	1	12	-	1	4	-	-
경북	7	3	7	-	-	1	-	-
경남	5	1	11	1	-	4	-	-
제주	-	3	8	-	-	-	1	-
기타	1	15	-	8	-	4	-	-
계	45	35	107	10	9	30	1	2

2. 시·도별 보조금(국비)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예 방 약 품				
	소	대 지			
	질병 백신 지원	열병·단독, 마커백신 (제주)	질병 백신 지원		PCV-2
	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카바네병, 설사병(주사제), 설사병(경구용), 부제병, 바이러스성설사병, 젖소유방염		일본 뇌염	유행성 설사병	
서울	-	-	-	-	-
부산	2,921	1,792	1,337	4,680	
대구	44,939	12,800	11,788	60,240	
인천	22,038	10,202	3,534	34,920	
광주	4,989	5,120	2,238	8,640	
대전	6,978	192	41	-	
울산	24,171	7,552	6,307	34,920	
세종	39,836	27,904	11,832	79,140	
경기	836,841	600,384	245,009	1,669,620	
강원	195,455	176,377	63,773	353,820	
충북	181,735	230,400	77,725	480,120	
충남	518,758	652,800	381,136	1,662,720	
전북	487,305	381,184	214,133	1,012,680	
전남	518,542	332,288	171,687	882,900	
경북	820,398	462,720	167,276	1,070,520	
경남	446,318	327,296	191,232	900,000	
제주	23,917	1,980,000	138,708	477,000	
기타	-	-	-	-	-
계	4,175,141	5,209,011	1,687,756	8,731,920	

(단위 : 천원)

구분	예 방 약 품						
	광견병	진돗개	뉴캐슬병		오리 바이러스 간염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실시 비 포함)	야생동물 돼지열병 (살포실시 비 포함)
			부화장	농가			
서울	73,206	-	-	-	-	192,282	-
부산	14,560	-	4,268	360	-	-	-
대구	8,071	-	-	7,042	-	-	-
인천	19,824	-	-	10,636	-	6,531	28,840
광주	3,360	-	-	1,000	-	-	-
대전	2,240	-	-	800	-	-	-
울산	4,480	-	-	4,196	-	-	-
세종	2,240	-	16,000	15,992	-	-	-
경기	184,800	-	815,156	299,972	1,485	536,420	532,963
강원	88,480	-	60	60,000	-	1,581,200	414,604
충북	31,360	-	213,796	100,288	6,171	-	-
충남	21,280	-	650,000	250,160	-	-	-
전북	25,760	-	1,332,000	319,864	31,251	-	-
전남	16,800	201,005	76,660	309,868	64,416	-	-
경북	26,767	-	318,272	214,729	-	-	-
경남	32,480	-	23,288	104,222	8,646	-	-
제주	5,600	-	39,036	14,774	-	-	-
기타	-	-	-	-	-	-	-
계	561,308	201,005	3,488,536	1,713,903	111,969	2,316,433	976,407

(단위 : 천원)

구분	검진								
	젖소 결핵 (PPD)	한·육우 결핵 (거래가축)	브루셀라 (MRT)	브루셀라 (RB)	BSE 진단키트	사슴 결핵	오제스키	아프리카 돼지열병 모니터링	추백리 (평판)
서울	-	380	-	33	-	-	-	-	-
부산	175	1,140	37	544	-	-	141	4,400	-
대구	511	15,200	365	5,074	27,500	-	1,152	15,000	-
인천	1,318	14,060	263	2,519	12,000	699	63	8,000	37
광주	283	6,460	37	1,341	12,000	-	125	5,800	-
대전	-	6,840	-	1,377	20,000	-	31	4,000	-
울산	417	19,000	66	7,096	14,500	2,003	251	9,000	-
세종	3,293	16,340	731	5,762	-	907	1,396	10,400	7
경기	112,426	201,400	7,820	63,484	21,250	17,105	25,166	630,000	1,147
강원	13,104	125,780	1,082	50,261	16,250	16,745	8,138	310,000	133
충북	10,914	148,960	1,348	54,360	24,000	16,897	14,306	300,000	607
충남	48,801	456,000	4,385	79,728	36,000	33,907	24,759	320,000	1,480
전북	9,865	401,508	928	33,884	15,250	12,890	16,103	230,000	2,442
전남	13,104	646,000	1,516	100,454	15,750	16,897	14,708	136,000	666
경북	21,531	608,000	2,192	133,001	25,000	11,170	16,512	530,510	400
경남	12,446	201,020	1,552	77,010	48,500	19,694	16,295	118,000	163
제주	1,291	11,780	183	22,875	12,000	1,266	5,943	70,000	37
기타	-	-	-	-	-	-	-	-	-
계	249,479	2,879,868	22,505	638,803	300,000	150,180	145,089	2,701,110	7,119

(단위 : 천원)

구분	검진		방제				가축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추백리 (ELISA)	조류인플루 엔자	소 진드기	꿀벌응애	꿀벌 노제마증	낭충봉아 부패병		
서울	-	17,730	-	5,250	4,536	5,620	36,706	50,000
부산	-	11,410	-	30,625	18,900	9,366	1,258	36,000
대구	-	37,230	-	78,077	47,750	47,889	25,016	19,000
인천	170	5,140	-	24,938	11,340	11,239	13,668	19,000
광주	-	27,650	-	39,375	32,508	35,591	3,425	19,000
대전	-	4,600	-	30,625	12,852	13,112	2,988	19,000
울산	-	18,430	-	66,500	40,824	40,274	3,408	19,000
세종	17	32,950	-	19,250	9,828	6,556	4,574	-
경기	1,703	475,550	-	177,625	75,600	79,611	156,609	19,000
강원	511	102,110	705	258,125	113,400	112,392	41,243	-
충북	1,703	570,110	-	367,500	189,000	187,320	97,531	-
충남	5,620	424,600	-	292,250	141,372	150,793	141,828	-
전북	7,493	489,360	-	292,250	142,128	137,680	192,924	-
전남	1,873	626,930	180	315,000	156,492	150,793	84,687	-
경북	1,873	336,110	-	511,673	309,082	304,272	98,972	-
경남	750	115,890	-	402,500	189,000	175,144	88,391	-
제주	170	31,910	39,586	91,875	50,652	50,576	25,575	-
기타	-	-	-	-	-	-	-	-
계	21,883	3,327,710	40,471	3,003,438	1,545,264	1,518,228	1,018,803	200,000

(단위 : 천원)

구분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AI 정밀검사 체계 개편	돼지소모성 질환지도 지원사업	가축질병 (돼지) 모니터링	소 브루셀라 및 결핵 채혈비	살처분 참여자 심층치료비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서울	-	-	-	-	-	-	-
부산	-	-	-	-	2,997	-	21,728
대구	1,430	-	3,000	2,500	56,070	-	21,728
인천	1,320	-	18,000	15,000	26,550	-	21,728
광주	-	-	-	-	9,000	-	21,728
대전	-	-	-	-	4,275	-	21,728
울산	-	-	3,000	2,500	52,470	-	10,864
세종	-	-	-	-	45,000	-	27,160
경기	41,570	151,500	120,000	100,000	319,140	-	157,528
강원	34,030	-	30,000	25,000	315,000	-	157,528
충북	26,830	151,500	24,000	20,000	304,125	-	114,072
충남	25,980	151,500	129,000	107,500	405,000	-	239,008
전북	74,900	151,500	162,000	135,000	469,710	-	168,392
전남	55,180	-	78,000	65,000	1,023,810	-	124,936
경북	20,310	-	81,000	67,500	903,855	-	135,800
경남	19,070	-	150,000	125,000	630,000	-	162,960
제주	4,380	-	60,000	50,000	45,000	-	97,776
기타	-	-	-	-	-	10,000	-
계	305,000	606,000	858,000	715,000	4,612,002	10,000	1,504,664

(단위 : 천원)

구분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GPS)		가축 질병 검사실 운영비	가축질병 가상방역 훈련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가축질병 (가금) 모니터링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가축질병 (양봉) 모니터링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통신료	장착비용 지원								
서울	12,177	4,800	-	-	-	-	-	-	-	-
부산	11,583	3,000	-	-	-	-	-	-	-	63,000
대구	35,640	12,090	-	7,500	-	-	-	-	-	189,000
인천	25,839	8,160	-	-	18,000	12,000	-	-	24,000	94,500
광주	19,602	8,100	-	-	-	-	-	-	-	-
대전	13,811	5,400	-	-	-	-	1,200	2,000	-	-
울산	27,027	13,500	15,000	7,500	3,000	2,000	-	-	16,000	63,000
세종	19,008	6,600	15,000	7,500	-	-	-	-	80,000	189,000
경기	297,000	75,000	45,000	15,000	237,000	158,000	25,200	42,000	216,000	2,016,000
강원	135,284	45,750	30,000	15,000	39,000	26,000	12,000	20,000	80,000	1,008,000
충북	157,884	36,000	30,000	7,500	18,000	12,000	24,000	40,000	88,000	1,386,000
충남	277,695	71,250	30,000	15,000	138,000	92,000	27,600	46,000	128,000	1,575,000
전북	225,720	93,000	30,000	15,000	411,000	274,000	34,800	58,000	80,000	1,512,000
전남	220,493	78,300	15,000	7,500	222,000	148,000	48,000	80,000	104,000	2,454,500
경북	324,324	115,800	30,000	7,500	213,000	142,000	34,800	58,000	176,000	1,323,000
경남	233,442	90,000	60,000	15,000	165,000	110,000	55,200	92,000	136,000	1,323,000
제주	42,471	10,470	15,000	7,500	36,000	24,000	2,400	4,000	72,000	504,000
기타	-	87,780	-	22,500	-	-	34,800	58,000	-	-
계	2,079,000	765,000	315,000	150,000	1,500,000	1,000,000	300,000	500,000	1,200,000	13,700,000

(단위 : 천원)

구분	시·도(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							
	방역 차량	소독 차량	검사장비	소독 장비	거점소독시설		가축질병 검사시설 신축	가축질병 검사시설 개보수
					신규	개보수		
서울	-	-	30,000	-	-	-	-	70,000
부산	-	20,000	35,000	-	-	-	-	-
대구	20,000	-	34,500	-	-	-	-	-
인천	40,000	-	28,000	-	-	-	-	-
광주	-	-	35,000	-	-	-	-	-
대전	-	-	13,500	-	-	-	-	-
울산	20,000	-	7,500	-	-	-	-	-
세종	20,000	-	-	-	-	-	-	-
경기	160,000	100,000	328,500	-	200,000	60,000	-	-
강원	60,000	20,000	260,000	5,000	200,000	117,500	-	-
충북	20,000	-	280,000	-	344,000	150,000	-	-
충남	180,000	60,000	295,000	-	200,000	120,000	-	70,000
전북	60,000	40,000	315,000	-	488,000	66,500	-	-
전남	60,000	20,000	317,000	-	144,000	120,000	-	-
경북	140,000	60,000	167,000	-	-	30,000	-	-
경남	100,000	20,000	265,000	5,000	-	42,500	-	-
제주	-	60,000	104,000	-	-	-	1,800,000	-
유보	20,000	300,000	-	40,000	-	167,500	-	-
계	900,000	700,000	2,515,000	50,000	1,576,000	874,000	1,800,000	140,000

3. 시·도별 지방비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예 방 약 품				
	소		돼 지		
	질병 백신 지원		질병 백신 지원		PCV-2
	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카바네병, 설사병(주사제), 설사병(경구용), 부제병, 소바이러스성설사병, 젖소유방염		열병·단독, 마커백신 (제주)	일본 뇌염 유행성 설사병	
서울	-	-	-	-	-
부산	1,375	1,792	718	4,680	
대구	23,216	12,800	5,903	60,240	
인천	10,757	10,202	1,807	34,920	
광주	2,410	5,120	1,111	8,640	
대전	3,247	192	22	-	
울산	11,313	7,552	3,272	34,920	
세종	18,759	27,904	6,158	79,140	
경기	378,206	600,384	125,092	1,669,620	
강원	91,590	176,377	32,347	353,820	
충북	88,460	230,400	40,562	480,120	
충남	242,927	652,800	214,409	1,662,720	
전북	225,753	381,184	107,531	1,012,680	
전남	246,541	332,288	85,935	882,900	
경북	467,066	462,720	85,760	1,070,520	
경남	207,219	327,296	96,384	900,000	
제주	10,981	1,980,000	66,964	477,000	
기타	-	-	-	-	-
계	2,029,820	5,209,011	873,975	8,731,920	

(단위 : 천원)

구분	예 방 약 품						
	광견병	진돗개	뉴캐슬병		오리 바이러스 간염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실시 비 포함)	야생동물 돼지열병 (살포실시 비 포함)
			부화장	농가			
서울	34,642	-	-	-	-	82,407	-
부산	6,890	-	4,268	360	-	-	-
대구	3,819	-	-	7,042	-	-	-
인천	9,381	-	-	10,636	-	2,800	12,360
광주	1,590	-	-	1,000	-	-	-
대전	1,060	-	-	800	-	-	-
울산	2,120	-	-	4,196	-	-	-
세종	1,060	-	16,000	15,992	-	-	-
경기	87,450	-	815,156	299,972	1,485	229,894	228,412
강원	41,870	-	60	60,000	-	677,657	177,687
충북	14,840	-	213,796	100,288	6,171	-	-
충남	10,156	-	650,000	250,160	-	-	-
전북	12,190	-	1,332,000	319,864	31,251	-	-
전남	7,950	87,157	76,660	309,868	64,416	-	-
경북	12,667	-	318,272	214,729	-	-	-
경남	15,370	-	23,288	104,222	8,646	-	-
제주	2,650	-	39,036	14,774	-	-	-
기타	-	-	-	-	-	-	-
계	265,705	87,157	3,488,536	1,713,903	111,969	992,758	418,459

(단위 : 천원)

구분	검진약품							
	젖소 결핵 (PPD)	한·육우 결핵 (거래가축)	브루셀라 (MRT)	브루셀라 (RB)	BSE 진단키트	사슴 결핵	오제스키	아프리카 돼지열병 모니터링
서울	-	380	-	9	-	-	-	-
부산	20	1,140	5	154	-	-	18	4,400
대구	57	15,200	52	1,437	27,500	-	147	15,000
인천	147	14,060	37	714	12,000	699	8	8,000
광주	32	6,460	5	380	12,000	-	16	5,800
대전	-	6,840	-	390	20,000	-	4	4,000
울산	47	19,000	10	2,010	14,500	2,003	32	9,000
세종	368	16,340	103	1,632	-	907	178	10,400
경기	12,548	201,400	1,099	17,984	21,250	17,105	3,210	630,000
강원	1,463	125,780	152	14,238	16,250	16,745	1,038	310,000
충북	1,218	148,960	189	15,399	24,000	16,897	1,825	300,000
충남	9,799	456,000	616	22,586	36,000	33,907	3,160	320,000
전북	1,101	401,508	131	9,599	15,250	12,890	2,054	230,000
전남	1,463	646,000	213	28,457	15,750	16,897	1,876	136,000
경북	2,403	608,000	308	37,677	25,000	11,170	2,106	530,510
경남	1,389	201,020	218	21,816	48,500	19,694	2,078	118,000
제주	144	11,780	26	80,000	12,000	1,266	758	70,000
기타	-	-	-	-	-	-	-	-
계	32,199	2,879,868	3,164	254,482	300,000	150,180	18,508	2,701,110

(단위 : 천원)

구분	검진			방제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추백리 (평균)	추백리 (ELISA)	조류인플루 엔자	소진드기	꿀벌응애	꿀벌 노제마증	낭충봉아 부패병	
서울	-	-	17,730	-	2,250	1,944	2,408	50,000
부산	-	-	11,410	-	13,125	8,100	4,014	36,000
대구	-	-	37,230	-	33,462	20,464	20,524	19,000
인천	25	5	5,140	-	10,688	4,860	4,817	19,000
광주	-	-	27,650	-	16,875	13,932	15,253	19,000
대전	-	-	4,600	-	13,125	5,508	5,620	19,000
울산	-	-	18,430	-	28,500	17,496	17,260	19,000
세종	5	1	32,950	-	8,250	4,212	2,810	-
경기	775	50	475,550	-	76,125	32,400	34,119	19,000
강원	90	15	102,110	305	110,625	48,600	48,168	-
충북	410	50	570,110	-	157,500	81,000	80,280	-
충남	1,000	165	424,600	-	125,250	60,588	64,625	-
전북	1,650	220	489,360	-	125,250	60,912	59,006	-
전남	450	55	626,930	78	135,008	67,068	64,624	-
경북	270	55	336,110	-	219,288	132,464	130,402	-
경남	110	22	115,890	-	172,500	81,000	75,062	-
제주	25	5	31,910	17,118	39,375	21,708	21,676	-
기타	-	-	-	-	-	-	-	-
계	4,810	643	3,327,710	17,501	1,287,196	662,256	650,668	200,000

(단위 : 천원)

구분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AI 정밀검사 체계 개편	돼지소모성 질환지도 지원사업	가축질병 (돼지) 모니터링	소 브루셀라 및 결핵 채혈비	살처분 참여자 심층치료비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서울	-	-	-	-	-	-	-
부산	-	-	-	-	6,993	-	32,592
대구	1,430	-	3,000	2,500	130,830	-	32,592
인천	1,320	-	18,000	15,000	61,950	-	32,592
광주	-	-	-	-	21,000	-	32,592
대전	-	-	-	-	9,975	-	32,592
울산	-	-	3,000	2,500	122,430	-	16,296
세종	-	-	-	-	105,000	-	40,740
경기	41,570	151,500	120,000	100,000	744,660	-	236,292
강원	34,030	-	30,000	25,000	735,000	-	236,292
충북	26,830	151,500	24,000	20,000	709,625	-	171,108
충남	25,980	151,500	129,000	107,500	945,000	-	363,148
전북	74,900	151,500	162,000	135,000	1,095,990	-	252,588
전남	55,180	-	78,000	65,000	2,388,900	-	187,404
경북	20,310	-	81,000	67,500	2,108,995	-	203,700
경남	19,070	-	150,000	125,000	1,470,000	-	244,440
제주	4,380	-	60,000	50,000	105,000	-	146,664
기타	-	-	-	-	-	10,000	-
계	305,000	606,000	858,000	715,000	10,761,348	10,000	2,261,632

(단위 : 천원)

구분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GPS)		가축 질병 검사실 운영비	가축질병 가상방역 훈련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가축질병 (가금) 모니터링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가축질병 (양봉) 모니터링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통신료	장착비용 지원								
서울	12,177	4,800	-	-	-	-	-	-	-	-
부산	11,583	3,000	-	-	-	-	-	-	-	63,000
대구	35,640	12,090	-	7,500	-	-	-	-	-	189,000
인천	25,839	8,160	-	-	18,000	12,000	-	-	24,000	94,500
광주	19,602	8,100	-	-	-	-	-	-	-	-
대전	13,811	5,400	-	-	-	-	1,200	2,000	-	-
울산	27,027	13,500	15,000	7,500	3,000	2,000	-	-	16,000	63,000
세종	19,008	6,600	15,000	7,500	-	-	-	-	80,000	189,000
경기	297,000	75,000	45,000	15,000	237,000	158,000	25,200	42,000	216,000	2,016,000
강원	135,284	45,750	30,000	15,000	39,000	26,000	12,000	20,000	80,000	1,008,000
충북	157,884	36,000	30,000	7,500	18,000	12,000	24,000	40,000	88,000	1,386,000
충남	277,695	71,250	30,000	15,000	138,000	92,000	27,600	46,000	128,000	1,575,000
전북	225,720	93,000	30,000	15,000	411,000	274,000	34,800	58,000	80,000	1,512,000
전남	220,493	78,300	15,000	7,500	222,000	148,000	48,000	80,000	104,000	2,454,500
경북	324,324	115,800	30,000	7,500	213,000	142,000	34,800	58,000	176,000	1,323,000
경남	233,442	90,000	60,000	15,000	165,000	110,000	55,200	92,000	136,000	1,323,000
제주	42,471	10,470	15,000	7,500	36,000	24,000	2,400	4,000	72,000	504,000
기타	-	87,780	-	22,500	-	-	34,800	58,000	-	-
계	2,079,000	765,000	315,000	150,000	1,500,000	1,000,000	300,000	500,000	1,200,000	13,700,000

(단위 : 천원)

구분	시·도(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							
	방역 차량	소독 차량	검사장비	소독 장비	거점소독시설		가축질병 검사시설 신축	가축질병 검사시설 개보수
					신규	개보수		
서울	-	-	30,000	-	-	-	-	70,000
부산	-	20,000	35,000	-	-	-	-	-
대구	20,000	-	34,500	-	-	-	-	-
인천	40,000	-	28,000	-	-	-	-	-
광주	-	-	35,000	-	-	-	-	-
대전	-	-	13,500	-	-	-	-	-
울산	20,000	-	7,500	-	-	-	-	-
세종	20,000	-	-	-	-	-	-	-
경기	160,000	100,000	328,500	-	200,000	60,000	-	-
강원	60,000	20,000	260,000	5,000	200,000	117,500	-	-
충북	20,000	-	280,000	-	344,000	150,000	-	-
충남	180,000	60,000	295,000	-	200,000	120,000	-	70,000
전북	60,000	40,000	315,000	-	488,000	66,500	-	-
전남	60,000	20,000	317,000	-	144,000	120,000	-	-
경북	140,000	60,000	167,000	-	-	30,000	-	-
경남	100,000	20,000	265,000	5,000	-	42,500	-	-
제주	-	60,000	104,000	-	-	-	1,800,000	-
유보	20,000	300,000	-	40,000	-	167,500	-	-
계	900,000	700,000	2,515,000	50,000	1,576,000	874,000	1,800,000	140,000

4. 세부사업 시행요령

① 가축방역비 산출단가

(단위 : 원)

구분	축종	세부사업명	약품비			재료비			국비 (소계)	지방비 (소계)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예방	소	탄저·기종저	104	44	148	-	50	50	104	94	198
		전염성비기관염	678	290	968	-	50	50	678	340	1,018
		유행열	1,140	488	1,628	-	50	50	1,140	538	1,678
		질병	1,834	786	2,620	-	50	50	1,834	836	2,670
		백신	2,772	1,188	3,960	-	50	50	2,772	1,238	4,010
		지원	8,050	3,450	11,500	-	-	-	8,050	3,450	11,500
		설사병(경구용)	2,250	2,250	4,500	-	-	-	2,250	2,250	4,500
		부제병	484	484	968	-	-	-	484	484	968
		소바이러스성설사병	18,920	18,920	37,840	-	-	-			37,840
	돼지	단독 혼합 마커백신	128	128	256	-	-	-	128	128	256
		일본뇌염	1,512.5	1,512.5	3,025	-	-	-	1,512.5	1,512.5	3,025
		돼지유행성설사병	139	60	199	-	50	50	139	110	249
		돼지췌코바이러스	3,360	1,440	4,800	-	50	50	3,360	1,490	4,850
			600	600	1,200	-	-	-	600	600	1,200
	개	광견병	1,120	480	1,600	-	50	50	1,120	530	1,650
		진돗개 디스템퍼·심장사상충	9,940	4,260	14,200	-	50	50	9,940	4,310	14,250
	닭	뉴캐슬병(부화장)	2(4)	2(4)	4(8)	-	-	-	2(4)	2(4)	4(8)
		뉴캐슬병(농가)	2	2	4	-	-	-	2	2	4
	오리	바이러스간염	33	33	66	-	-	-	33	33	66
	야생	광견병(미끼예방약)	2,171.4	930.6	3,102	420	180	600	2,591.4	1,110.6	3,702
	동물	돼지열병(미끼예방약)	2,464	1,056	3,520	420	180	600	2,884	1,236	4,120
검진	소	젖소결핵(PPD)	1,194	-	1,194	150	150	300	1,344	150	1,494
		한·육우결핵(감마인터페론)	3,350	3,350	6,700	450	450	900	3,800	3,800	7,600
		브루셀라(MRT)	306	-	306	50	50	100	356	50	406
		브루셀라(RB)	253	-	253	100	100	200	353	100	453
		브루셀라(RB-제주)	230	-	230	1,600	6,400	8,000	1,830	6,400	8,230
		BSE 진단키트				25,000	25,000	50,000	25,000	25,000	50,000
	사슴	사슴 결핵(PPD)	19,300	19,300	38,600	18,500	18,500	37,000	37,800	37,800	75,600
	돼지	오제스키병	1,368	-	1,368	200	200	400	1,568	200	1,768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	-	-	9,850	9,850	19,700	9,850	9,850	19,700
	닭	추백리(평판)	24	-	24	50	50	100	74	50	124
		추백리(ELISA)	1,653	-	1,653	50	50	100	1,703	50	1,753
		조류인플루엔자	12	12	24	3	3	6	15	15	30
방제	소	진드기	37	16	53	-	-	-	37	16	53
	꿀벌	응애류	875	375	1,250	-	-	-	875	375	1,250
		노제마증	756	324	1,080	-	-	-	756	324	1,080
		낭충봉아부패병	936.6	401.4	1,338	-	-	-	936.6	401.4	1,338

구 분	국 비	지 방 비	계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검사	200,000	200,000	400,000
가축질병(돼지) 모니터링 검사	2,500,000	2,500,000	5,000,000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보정비	4,500	10,500	15,000
동물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21,728	32,592	54,320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	10,000,000	10,000,000	20,000,000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2,079,000,000	2,079,000,000	4,158,000,000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765,000,000	765,000,000	1,530,000,000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13,700,000,000	13,700,000,000	27,400,000,000
가축질병 검사실 운영	15,000,000	15,000,000	30,000,000
가축질병(가금) 모니터링 검사	2,000,000	2,000,000	4,000,000
가축질병(양봉) 모니터링 검사	2,000,000	2,000,000	4,000,000
방역차량	20,000,000	20,000,000	40,000,000
소독차량	20,000,000	20,000,000	40,000,000
소독장비	50,000,000	50,000,000	100,000,000
거점소독·세척시설(신축)(2개년 사업으로 매년 50%)	400,000,000	400,000,000	800,000,000
거점소독·세척시설(개보수)	300,000,000	300,000,000	600,000,000
검사시설(신축)(2개년 사업으로 1년차 40, 2년차 60%)	3,000,000,000	3,000,000,000	6,000,000,000
검사시설(개보수)	70,000,000	70,000,000	140,000,000

2 예방약 공급

● 소 질병 백신 지원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지원 대상 ○ 과거 발생지역·소규모농가(탄저·기종저), 소규모 농가·밀집 사육지역(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소규모농가(아카바네병, 부제병)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규모 양축농가의 소는 농가 자율 구매 후 접종지도
부산	1.42	2,921	1,375	4,296	
대구	35.05	44,939	23,216	68,155	○ 번식·소규모농가(설사병 주사제, 바이러스성 설사병), 번식농가(설사병 예방 경구 투여용; 설사병 주사제를 지원한 농가는 공급 제외) ※ 브루셀라병 발생 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인천	10.35	22,038	10,757	32,795	
광주	3.56	4,989	2,410	7,399	□ 접종 대상 및 기간: 탄저·기종저(6개월 이상 소, 임신말기 어미 암소 제외/연중), 전염성비기관염 (바육소 중심/연중), 유행열(6개월 이상 소, 3~4월 모기 출현 전), 아카바네병(가임 암소 한우, 젖소/ 3~4월 모기 출현 전), 설사병 주사제(한·육우, 젖소의 가임 암소/분만 2주~4주 전 각 1회), 송아지 설사병 예방·면역증강제(경구투여용, 한·육우, 젖소의 송아지/초유 급여 전후, 동물용 의약품 제조 품목 신고한 제품에 한하며 용법 및 용량 준수), 부제병(젖소*), 바이러스성 설사병(3개월 이상 소, 2회 접종), 젖소 유방염(6개월령 이상 젖소, 분만 전후 2회 접종)
대전	3.55	6,978	3,247	10,225	
울산	13.26	24,171	11,313	35,484	* 방목하는 경우 가능한 방목 전에 접종: 필요한 접종 시기별로 농가에 약품을 공급하거나 시·군(또는 시험소)에 약품 보관 후 접종 필요시 농가에 공급
세종	18.91	39,836	18,759	58,595	
경기	326.28	836,841	378,206	1,215,047	** 사육두수 당 2회 백신접종이 가능한 물량을 배부 ※ 부족분(추가소요액)은 지방비 확보하여 추진하되, 국비 보조율이 동일한 백신 간에는 자체계획을 수립 하여 교차지원 가능(농식품부 보고)
강원	76.18	195,455	91,590	287,045	
충북	109.94	181,735	88,460	270,195	□ 소요경비 ○ 탄저·기종저 혼합: 두당 198원 (국비 104, 지방비 94) - 약품비: 두당 148원(국비 70%, 지방비 30%) - 재료비: 두당 50원(지방비 100%)
충남	245.66	518,758	242,927	761,685	
전북	239.36	487,305	225,753	713,058	
전남	347.28	518,542	246,541	765,083	
경북	760.24	820,398	467,066	1,287,464	
경남	225.57	446,318	207,219	653,537	
제주	9.38	23,917	10,981	34,898	
계	2,425.99	4,175,141	2,029,820	6,204,961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 소 전염성비기관염: 두당 1,018원 (국비 678, 지방비 340) - 약품비: 두당 968원(국비 70%, 지방비 30%) - 재료비: 두당 50원(지방비 100%) ○ 소 유행열: 두당 1,678원 (국비 1,140, 지방비 538) - 약품비: 두당 1,628원(국비 70%, 지방비 30%) - 재료비: 두당 50원(지방비 100%) ○ 소 아카바네병: 두당 2,670원 (국비 1,834, 지방비 836) - 약품비 : 두당 2,620원(국비 70%, 지방비 30%) - 재료비: 두당 50원(지방비 100%) ○ 소 설사병(주사제): 두당 4,010원 (국비 2,772, 지방비 1,238) - 약품비 : 두당 3,960원(국비 70%, 지방비 30%) - 재료비 : 두당 50원(지방비 100%) ※ 두당 소요경비는 지자체별 예산확보 현황을 고려, 2종 또는 3종 혼합백신 중에서 선택 가능 ○ 소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경구용) : 두당 11,500원(국비 8,050, 지방비 3,450) - 국비 70%, 지방비 30% ○ 소 부제병 : 4,500원(국비 2,250, 지방비 2,250) - 국비 50%, 지방비 50% ○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혼합) : 968원 (국비 484, 지방비 484) - 국비 50%, 지방비 50% ○ 젖소 유방염: 37,840원(국비 18,920, 지방비 18,920) - 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시도 또는 시군에서 관련기관 협의회를 통해 품목 관련 제품을 선정하되, 지원 품목이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사업비 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 시·군별 물량 배정 시 과거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에 집중 배정(탄저·기종저, 전염성 비기관염, 유행열, 아카바네병) ○ 기 발생지역과 전년도 예방접종에서 누락된 소 우선 공급(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 모기 출현 전에 예방접종 완료 지도(유행열*, 아카바네병**) * 6개월 이상 소에 4주 간격, 2회 접종(전년도 예방접종한 소 1회 보강접종) ** 1회 접종하되 전년도 감염우 접종 대상에서 제외 ○ 시군별 물량 배정 시 번식농가 수, 번식우 사육두수 및 브루셀라병·설사병·바이러스성 설사병 발생 상황 고려하여 조정, 대상축에 대하여는 1, 2차 접종을 시행하여 예방접종 효과 증대(설사병 주사제,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 지원 대상 농가에서 연간 생산되는 송아지 전 두수분 추정하여 공급(설사병 예방 경구투여용)

● 돼지열병·단독 혼합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지원대상 : 양돈농가 □ 접종대상 : 모돈, 자돈 종돈·번식돈 등 □ 접종기간 : 연중 □ 접종시기 ○ 자돈 : 55~70일령 ○ 모돈 : 종부 2~4주전 ○ 종돈·번식돈 : 연 1회 □ 소요경비 : 두당 256원(약품비) ○ 국비 : 128원, 지방비 : 128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예방약품을 변경하여 단가 상승 시 추가되는 금액은 지방비 편성 □ 실시요령 ○ 예방약은 지원하되, 예방접종시술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예방접종명령 조치) ○ 제주도는 예방접종 금지 ○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의무 철저 이행 ※ 예방약 공급 시 모돈 사육규모에 따라 회전율 등을 기준으로 공급
부산	14	1,792	1,792	3,584	
대구	100	12,800	12,800	25,600	
인천	79.7	10,202	10,202	20,404	
광주	40	5,120	5,120	10,240	
대전	1.5	192	192	384	
울산	59	7,552	7,552	15,104	
세종	218	27,904	27,904	55,808	
경기	4,690.5	600,384	600,384	1,200,768	
강원	1,377.95	176,377	176,377	352,754	
충북	1,800	230,400	230,400	460,800	
충남	5,100	652,800	652,800	1,305,600	
전북	2,978	381,184	381,184	762,368	
전남	2,596	332,288	332,288	664,576	
경북	3,615	462,720	462,720	925,440	
경남	2,557	327,296	327,296	654,592	
제주	-	-	-	-	
계	25,226.65	3,229,011	3,229,011	6,458,022	

● 돼지열병 마커백신(제주)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지원대상 : 제주도 ☐ 접종대상 : 제주도 양돈농가 ☐ 접종 기간 : 연중 ☐ 소요경비 : 3,025원 (국비 1,512.5, 지방비 1,512.5) ☐ 약품비 : 두당 3,025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림주백신 접종방법에 따라 접종 - (1년차) 모돈·자돈 일괄 접종 후 모돈 1회(분만 3~5주전) 추가접종 - (2년차 이후) 모돈 1회(분만 3~5주전), 자돈 1회(6~9주)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	-	-	-	
강원	-	-	-	-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	-	-	-	
전남	-	-	-	-	
경북	-	-	-	-	
경남	-	-	-	-	
제주	1,309	1,980,000	1,980,000	3,960,000	
계	1,309	1,980,000	1,980,000	3,960,000	

● 돼지 질병 백신 지원(일본뇌염, 돼지 유행성설사병)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지원대상 선정 및 물량배정 요령 ○ (일본뇌염) 인구 조밀 지역 및 도시 인근 양돈장의 모든 우선 접종 실시 ○ (PED) PED 검사농가 우선 선정, 과거 발생 및 인접 시군, 1,000두 미만 사육 소규모농가 차우선 선정 ※ 단, 한 농가 최대 500개 지급하되, 모든 임신 기간 동안 두당 최소 2회 이상 접종하도록 지도
부산	2.89	1,337	718	2,055	
대구	16.91	11,788	5,903	17,691	☐ 접종대상 : (일본뇌염) 모든, (PED) 임신 모든 ☐ 접종기간 ○ (일본뇌염) 3~4월(모기 출현전), ○ (PED) 연중 ☐ 접종방법 ○ (일본뇌염) '23년 여름을 경과한 돼지는 1회 접종 - 기타 돼지는 1차 접종 후, 4주째 2차 보강 접종 ※ 모기 출현 전에 예방접종 완료 ○ (PED) 지원하는 백신 제조사의 용법, 용량을 준수하도록 지도 ※ 모든 분만전 최소 2회 이상 접종 등
인천	5.80	3,534	1,807	5,341	
광주	3.02	2,238	1,111	3,349	☐ 소요경비 : ○ (일본뇌염) 두당 249원(국비139, 지방비 110) ○ (PED) 1회당 4,850원 (국비 3,360, 지방비, 1,490) - 약품비(두당) : 일본뇌염 199원, PED 4,800원 (국비 70%, 지방비 30%) - 재료비(두당) : 50원 (지방비 100%) ※ 지역별 질병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 물량조절 가능
대전	0.09	41	22	63	
울산	11.30	6,307	3,272	9,579	
세종	21.58	11,832	6,158	17,990	
경기	398.85	245,009	125,092	370,101	
강원	99.60	63,773	32,347	96,120	
충북	143.92	77,725	40,562	118,287	
충남	527.61	381,136	189,910	571,046	
전북	312.97	214,133	107,531	321,664	
전남	245.34	171,687	85,935	257,622	
경북	279.36	167,276	85,760	253,036	
경남	286.49	191,232	96,384	287,616	
제주	149.38	138,708	66,964	205,672	
계	2,505.11	1,687,756	849,476	2,537,232	

● 돼지 쉼코바이러스(PCV-2)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서울	-	-	-	-	-	□ 지원대상 : 양돈농가 ※ 소규모 농가 우선지원 □ 접종대상 : 모돈 또는 자돈 □ 접종기간 : 연중 □ 접종방법 ○ 모돈 : 종부 3~4주전 ○ 자돈 : 3주령(21일령) □ 소요경비 : 두당 2,000원 ○ 국비 600, 지방비 600, 자부담 800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보조금액(두당 1,2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 □ 실시요령 ○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가 및 동물약품판매 업소 등에 통보 ○ 농가에서 연중 백신을 구입하고,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지급 ※ 방역본부에서 시료채취 시 비협조 농가는 다음 분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부산	7.8	4,680	4,680	6,240	15,600	
대구	100.4	60,240	60,240	80,320	200,800	
인천	58.2	34,920	34,920	46,560	116,400	
광주	14.4	8,640	8,640	11,520	28,800	
대전	-	-	-	-	-	
울산	58.2	34,920	34,920	46,560	116,400	
세종	131.9	79,140	79,140	105,520	263,800	
경기	2,782.7	1,669,620	1,669,620	2,226,160	5,565,400	
강원	589.7	353,820	353,820	471,760	1,179,400	
충북	800.2	480,120	480,120	640,160	1,600,400	
충남	2,771.2	1,662,720	1,662,720	2,216,960	5,542,400	
전북	1,687.8	1,012,680	1,012,680	1,350,240	3,375,600	
전남	1,471.5	882,900	882,900	1,177,200	2,943,000	
경북	1,784.2	1,070,520	1,070,520	1,427,360	3,568,400	
경남	1,500.0	900,000	900,000	1,200,000	3,000,000	
제주	795.0	477,000	477,000	636,000	1,590,000	
계	14,553.2	8,731,796	8,731,796	11,642,395	29,105,987	

● 광견병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65.3	73,206	34,642	107,848	□ 지원대상 : 개 소유자 및 소 사육농가 ※ 개와 소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부산	13	14,560	6,890	21,450	
대구	7.2	8,071	3,819	11,890	□ 접종대상 ○ 발생상재지 : 개 및 소 ○ 비발생지역 : 개 우선
인천	17.7	19,824	9,381	29,205	
광주	3	3,360	1,590	4,950	□ 접종기간 및 물량 ○ 1차(춘계 3~4월) : 70% ○ 2차(추계 9~10월) : 30%
대전	2	2,240	1,060	3,300	
울산	4	4,480	2,120	6,600	□ 소요경비 : 두당 1,650원 (국비 1,120, 지방비 530) ○ 약품비 : 두당 1600원(국비 70%, 지방비 30%) ○ 재료비 : 두당 50원(지방비 100%)
세종	2	2,240	1,060	3,300	
경기	165	184,800	87,450	272,250	□ 실시요령 ○ 경기, 강원,의 휴전선 인접 시군 및 과거 발생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와 소는 전 두수 접종(예방약 100% 공급) ※ 그 외 지역은 1차 접종기간동안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 개체(개)에 한해 접종하고, 2차 기간동안은 동물등록 개체(개)를 우선 접종
강원	79	88,480	41,870	130,350	
충북	28	31,360	14,840	46,200	○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산간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는 전 두수 실시
충남	19	21,280	10,070	31,350	
전북	23	25,760	12,190	37,950	○ 기타 인구 조밀지역 우선 실시 ○ 예방주사 일제접종기간을 설정, 공고하고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
전남	15	16,800	7,950	24,750	
경북	23.9	26,767	12,667	39,434	○ 예방접종 후, 소유주에게 증명서 발급 ○ 동물병원에 공급 된 백신이 남는 경우, 물량이 부족한 병원·농가 등으로 재배포
경남	29	32,480	15,370	47,850	
제주	5	5,600	2,650	8,250	
계	501.1	561,308	265,619	826,927	

● 진돗개 디스토펙(DHPPL)·심장사상충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지원대상 : 진도군에서 진돗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 접종시기 ○ 디스토펙(DHPPL) 접종 - 1차(5~6주령), 2차(8~9주령), 3차(12~13주령) - 매년 추가접종 1회 ○ 심장사상충 구제 : 연 6회(2차) ☐ 실시기간 : 연중 ☐ 소요경비 : 1회 두당 14,250원 (국비 9,940, 지방비 4,310) ○약품비 : 14,200원(디스토펙 2,050, 심장사상충 구충제 4,050원×3회) - 국비 70%, 지방비 30% ○재료비 : 두당 50원(지방비 100%) ☐ 실시요령 ○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예방주사 시 개체별 건강진단을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농가 서비스 제공 ○ 영세농가 사육 개 우선 접종 ※ 부족 물량은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접종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	-	-	-	
강원	-	-	-	-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	-	-	-	
전남	20.2	201,005	87,157	288,162	
경북	-	-	-	-	
경남	-	-	-	-	
제주	-	-	-	-	
계	20.2	201,005	87,157	288,162	

● 뉴캐슬병

- 부화장(뉴캐슬병(단일) 또는 뉴캐슬병+전염성기관지염(합제))

(단위 : 천수,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지원대상 : 전국 시군에 신고된 부화장 ☐ 자동·반자동 분무기 설치 부화장에 한함 ☐ 접종대상 : 부화 1일령 초생추 ☐ 접종방법 : 분무용(50~100 μ m) 예방접종 ☐ 접종기간 : 연중 ☐ 소요경비: 두당 4/8원(단일/합제) 이하(약품비) ☐ 국비 : 2.0(4.0)원, 지방비 : 2.0(4.0)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시·도 또는 시군에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후 제품 선정 및 공급 ※ 제품은 뉴캐슬병(단일) 또는 뉴캐슬병+전염성기관지염(합제) 중 택일 가능 ☐ 부화장 지원물량이 남을 경우, 농가 공급용 예방약 구입 지원 가능 ☐ 부화장 경영자 준수사항 - 부화실적·예방약 수불·예방접종증명서 발급대장 작성 비치 - 사용한 예방약 공병 보관 - 병아리 수송상자 등에 사용한 예방약 및 접종일시 등을 기록하여 양계농가가 추가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 부화병아리 분양시 예방접종서 발급 ☐ 부화장 지도 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부산	1,067	4,268	4,268	8,536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4,000	16,000	16,000	32,000	
경기	203,789	815,156	815,156	1,630,312	
강원	15	60	60	120	
충북	53,449	213,796	213,796	427,592	
충남	162,500	650,000	650,000	1,300,000	
전북	333,000	1,332,000	1,332,000	2,664,000	
전남	19,165	76,660	76,660	153,320	
경북	79,568	318,272	318,272	636,544	
경남	5,822	23,288	23,288	46,576	
제주	9,759	39,036	39,036	78,072	
계	872,134	3,488,536	3,488,536	6,977,072	

- 양계농가

(단위 : 천수,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지원대상 : 전국 양계농가 ○ 부화장 1차 예방접종 실시분에 한함 □ 접종가축 : 육계·산란계·종계 등 □ 접종방법 : 용도별(음수·점안·분무)로 농가가 선택 ○ 검역본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 이행 □ 접종기간 : 연중 □ 소요경비 : 두당 4원 이하(약품비) ○ 국비 : 2.0원, 지방비 : 2.0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시군에서 양계관련단체, 방역본부, 계열업체, 농가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 후 제품 선정 ○ 예방약 공급방법 i) 공급계약시 1~3개월분 물량을 나누어 공급 보관 ii)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사를 위촉·활용 iii) 농가 공급시 부화장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확인서 징구 의무 조치 ○ 기타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 등 세부사항은 “뉴캐슬병방역 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참조
부산	180	360	360	720	
대구	3,521	7,042	7,042	14,084	
인천	5,318	10,636	10,636	21,272	
광주	500	1,000	1,000	2,000	
대전	400	800	800	1,600	
울산	2,098	4,196	4,196	8,392	
세종	7,996	15,992	15,992	31,984	
경기	149,986	299,972	299,972	599,944	
강원	30,000	60,000	60,000	120,000	
충북	50,144	100,288	100,288	200,576	
충남	125,080	250,160	250,160	500,320	
전북	159,932	319,864	319,864	639,728	
전남	154,934	309,868	309,868	619,736	
경북	107,365	214,729	214,729	429,458	
경남	52,111	104,222	104,222	208,444	
제주	7,387	14,774	14,774	29,548	
계	856,952	1,713,903	1,713,903	3,427,806	

● 오리 바이러스간염

(단위 : 천수,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지원대상 : 오리농가 ※ 발생농장 또는 소규모 농가 우선지원 ☐ 접종대상 : 종오리 및 육용오리 ☐ 접종기간 : 연중 ☐ 소요경비 : 두당 66원 ○ 국비 33원, 지방비 33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질병 발생 및 지역별 사육현황 등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부산		-	-	-	
대구		-	-	-	
인천		-	-	-	
광주		-	-	-	
대전		-	-	-	
울산		-	-	-	
세종		-	-	-	
경기	45	1,485	1,485	2,970	
강원	-	-	-	-	
충북	187	6,171	6,171	12,342	
충남	-	-	-	0	
전북	947	31,251	31,251	62,502	
전남	1,952	64,416	64,416	128,832	
경북	-	-	-	-	
경남	262	8,646	8,646	17,292	
제주	-	-	-	-	
계	3,393	111,969	111,969	223,938	

● 야생동물 광견병(미끼예방약)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약품비		살포비		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서울	74.2	161,118	69,051	31,164	13,356	274,689	□ 지원대상: 서울·경기·강원지역 광견병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 살포시기: 봄(3월 전후), 가을(11월 전후) 2회 살포 □ 소요경비 ○ 예방약 구입비: 3,102원/두 - 국비 : 2,171.4원, 지방비 : 930.6원 - 국비 70%, 지방비 30% ○ 예방약 살포비: 600원/두 - 국비 420원, 지방비 : 180원 - 국비 70%, 지방비 30% ※ 부족시 지방비에서 추가 확보 □ 실시요령 ○ 살포지역(지점): 국립환경연구원 등 야생동물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받아 결정 ○ 살포방법 : 인력을 동원, 살포지점에 직접 살포 ※ 살포한 미끼예방약 섭취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후 수거 등 사후관리방안은 농림축산 검역본부와 협의 추진
부산	-	-	-	-	-	-	
대구	-	-	-	-	-	-	
인천	2.5	5,472	2,346	1,059	454	9,331	
광주	-	-	-	-	-	-	
대전	-	-	-	-	-	-	
울산	-	-	-	-	-	-	
세종	-	-	-	-	-	-	
경기	207	449,480	192,634	86,940	37,260	766,314	
강원	610.2	1,325,000	567,857	256,200	109,800	2,258,857	
충북	-	-	-	-	-	-	
충남	-	-	-	-	-	-	
전북	-	-	-	-	-	-	
전남	-	-	-	-	-	-	
경북	-	-	-	-	-	-	
경남	-	-	-	-	-	-	
제주	-	-	-	-	-	-	
계	893.9	1,941,070	831,888	375,363	160,870	3,309,191	

● 야생동물 돼지열병(미끼예방약)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계	세 부 내 역
		약품비		살포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서울	-	-	-	-	-	-	□ 지원대상 : 경기, 강원, 인천 ※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CSF) 항원 및 항체 발생 지역 □ 살포 기간 : '24.1~12월 □ 소요경비 : 4,120원 (국비 2,884, 지방비 1,236) (국비 70%, 지방비 30%) ○ 약품비: 개당 3,520원 - 국비 2,464, 지방비 1,056 ○ 살포비: 개당 600원 - 국비 420, 지방비 180 ※ 미끼백신 단가가 변동된 경우 단가에 맞춰 약품 구입 후 살포 (부족시 지방비에서 추가 확보) □ 실시요령 ○ 살포지역(지점): 야생멧돼지 분포가 많은 지역과 서식지를 중심으로 살포 ○ 살포방법: 인력을 동원, 살포지점에 직접 살포 ※ 미끼예방약 살포는 야생동물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실시하고, 살포한 미끼예방약 사후관리방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 추진
부산	-	-	-	-	-	-	
대구	-	-	-	-	-	-	
인천	10	24,640	10,560	4,200	1,800	41,200	
광주	-	-	-	-	-	-	
대전	-	-	-	-	-	-	
울산	-	-	-	-	-	-	
세종	-	-	-	-	-	-	
경기	300	455,347	195,148	77,616	33,264	761,375	
강원	143.76	354,225	151,810	60,379	25,877	592,291	
충북	-	-	-	-	-	-	
충남	-	-	-	-	-	-	
전북	-	-	-	-	-	-	
전남	-	-	-	-	-	-	
경북	-	-	-	-	-	-	
경남	-	-	-	-	-	-	
제주	-	-	-	-	-	-	
계	453.76	834,212	357,518	142,195	60,941	1,394,866	

③ 검진약품 공급

● 젖소 결핵(PPD)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 대상: 1세 이상 젖소 전 두수 ☐ 제주도는 한·육우 포함 ☐ 종축기관 등에서 검사 의뢰한 종축 등
부산	0.13	175	20	195	
대구	0.38	511	57	568	☐ 실시기간: 연중 ☐ 소요경비 : 두당 1,494원 (국비 1,344, 지방비 150)
인천	0.98	1,318	147	1,465	
광주	0.21	283	32	315	☐ 진단액 구매비: 두당 1,194원(국비 100%) ☐ 재료비: 두당 300원(국비 50%, 지방비 50) ※ 부족분(추가소요액)은 지방비 확보하여 추진
대전	-	-	-	-	
울산	0.31	417	47	464	☐ 실시요령 ☐ 과거 소 결핵 발생농장과 발생한 지역에서 사육되어 결핵병이 의심되는 소, 종축기관 등에서 검사 의뢰한 소 및 전년도 누락된 목장의 소를 우선 실시
세종	2.45	3,293	368	3,661	
경기	83.65	112,426	12,548	124,974	☐ 기타 발생농장의 동거 가축 재검사 등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실시
강원	9.75	13,104	1,463	14,567	
충북	8.12	10,914	1,218	12,132	☐ 신속한 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혈을 이용한 감마인터페론 검사로 대체 가능
충남	39.23	48,801	9,799	58,600	
전북	7.34	9,865	1,101	10,966	
전남	9.75	13,104	1,463	14,567	
경북	16.02	21,531	2,403	23,934	
경남	9.26	12,446	1,389	13,835	
제주	0.96	1,291	144	1,435	
계	188.54	249,479	32,199	281,678	

● 한·육우 결핵(거래가축)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0.10	380	380	760	☐ 실시 대상: 거래 대상 1세 이상 한·육우 ☐ 실시기간 : 연중 ☐ 소요경비 : 두당 7,600원 (국비 3,800, 지방비 3,800) ○ 진단액 구매비: 두당 6,700원 (국비 50%, 지방비 50%) ○ 재료비: 두당 900원 - 국비 50%, 지방비 50% ※ 부족분(추가소요액)은 지방비 확보하여 추진 ☐ 실시요령 ○ 전혈을 이용한 감마인터페론 또는 PPD 검사 실시 ○ 양성 판정 시 이동 제한, 동거 소 검사 등 방역 조치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라 실시
부산	0.30	1,140	1,140	2,280	
대구	4.00	15,200	15,200	30,400	
인천	3.70	14,060	14,060	28,120	
광주	1.70	6,460	6,460	12,920	
대전	1.80	6,840	6,840	13,680	
울산	5.00	19,000	19,000	38,000	
세종	4.30	16,340	16,340	32,680	
경기	53.00	201,400	201,400	402,800	
강원	33.10	125,780	125,780	251,560	
충북	39.20	148,960	148,960	297,920	
충남	120.00	456,000	456,000	912,000	
전북	105.66	401,508	401,508	803,016	
전남	170.00	646,000	646,000	1,292,000	
경북	160.00	608,000	608,000	1,216,000	
경남	52.90	201,020	201,020	402,040	
제주	3.10	11,780	11,780	23,560	
계	757.86	2,879,868	2,879,868	5,759,736	

● 브루셀라병(M.R.T)

(단위 : 천건,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 대상: 집유장에 납유되는 목장별 원유 □ 실시기간: 농장별 연 12회 ○ 매월 1회 이상 농장 단위로 실시
부산	0.10	37	5	42	
대구	1.03	365	52	417	□ 소요경비 : 두당 406원(국비 356, 지방비 50) ○ 진단액 구매비: 일회용 306원(국비 100%) ○ 재료비: 건당 100원(국비 50%, 지방비 50) ※ 부족분(추가소요액)은 지방비 확보하여 추진
인천	0.74	263	37	300	
광주	0.10	37	5	42	□ 실시요령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농식품부 고시)에 의함
대전	-	-	-	-	
울산	0.19	66	10	76	○ 검사시료는 건당 1~50두 정도의 우군 원유를 기준으로 채취 ○ 양성 및 의양성에 대한 개체별 추적검사는 Rose-Bengal 방법으로 실시
세종	2.05	731	103	834	
경기	21.97	7,820	1,099	8,919	○ 타 시·도 소재 목장의 소에서 양성 및 의양성우가 발견되었을 때는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도에서는 개체별 추적검사 시행
강원	3.04	1,082	152	1,234	
충북	3.79	1,348	189	1,537	□ 기타 ○ 원유업체에서 검사를 의뢰한 가검물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통보
충남	12.32	4,385	616	5,001	
전북	2.61	928	131	1,059	○ MRT 검사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 확인 목장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 두수 이동제한 조치 및 개체별 검사 실시
전남	4.26	1,516	213	1,729	
경북	6.16	2,192	308	2,500	
경남	4.36	1,552	218	1,770	
제주	0.51	183	26	209	
계	63.23	22,505	3,164	25,669	

● 브루셀라병(Rose-Bengal)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시·도	방역본부	계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0.09	-	0.09	33	9	42	□ 실시 대상 ○ 젖소: MRT 양성 또는 의양성 목장의 전 두수 및 타 시·도에서 MRT 검사 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 통보된 목장의 전 두수 ○ 한·육우: 전년도 다발 지역 및 감염 의심 우군의 1세 이상 암소, 소 수집상·증개상 사육 소, 자연교배 수소 등 □ 실시기간: 연중 ○ 시료 채취 - 시·도: 가축방역 기관 정기검진 물량 - 방역본부 :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관련, 시·군에서 채혈을 요청한 소 ※ 브루셀라병 거래증명서 검진 물량에 따라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량 조정 가능(방역본부 물량은 림피스킨 예찰 등 실시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차 검사: Rose-Bengal ○ 2차 검사: Tube Test, CF 또는 ELISA □ 소요경비 ○ 전국(제주 제외): 두당 453원 (국비 353, 지방비 100) - 진단액 구매비: 253원(국비 100%) - 재료비: 200원(국비 100, 지방비 100) ○ 제주: 두당 8,230원(국비 1,830, 지방비 6,400) - 진단액 구매비: 두당 230원(국비 100%) - 재료비: 8,000원(국비 1,600, 지방비 6,400) ※ 2차 검사 진단액은 검역본부에서 생산·공급 ※ 부족분(추가소요액)은 지방비 확보하여 추진 □ 실시요령 ○ 브루셀라병 의심 우군은 개체별 검사 ○ 발생축과 동거 또는 감염 의심 지역에 대하여는 개체별(한육우 포함) 검사 실시 ○ 유산우, 유산태아, 유산 물질 확인 시 병성감정 기관에 브루셀라병 검사 의뢰(세균 분리 등), 병성감정기관은 검사 결과를 검역본부에 통보
부산	1.04	0.5	1.54	544	154	698	
대구	12.07	2.30	14.37	5,074	1,437	6,511	
인천	4.84	2.30	7.14	2,519	714	3,233	
광주	2.80	1.00	3.80	1,341	380	1,721	
대전	2.90	1.00	3.90	1,377	390	1,767	
울산	15.70	4.40	20.10	7,096	2,010	9,106	
세종	13.02	3.30	16.32	5,762	1,632	7,394	
경기	130.14	49.70	179.84	63,484	17,984	81,468	
강원	107.68	34.70	142.38	50,261	14,238	64,499	
충북	121.39	32.60	153.99	54,360	15,399	69,759	
충남	168.46	57.40	225.86	79,728	22,586	102,314	
전북	41.39	54.60	95.99	33,884	9,599	43,483	
전남	214.17	70.40	284.57	100,454	28,457	128,911	
경북	294.57	82.20	376.77	133,001	37,677	170,678	
경남	169.06	49.10	218.16	77,010	21,816	98,826	
제주	12.50	-	12.50	22,875	80,000	102,875	
계	1,311.82	445.5	1,757.32	638,803	254,482	893,285	

● BSE 진단키트 구입비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소요단가 : 50,000원/두 (국비 25,000, 지방비 25,000)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TSE 예찰 및 정밀검사 계획에 따라 실시
부산	-	-	-	-	
대구	1.10	27,500	27,500	55,000	
인천	0.48	12,000	12,000	24,000	
광주	0.48	12,000	12,000	24,000	
대전	0.80	20,000	20,000	40,000	
울산	0.58	14,500	14,500	29,000	
세종	-	-	-	-	
경기	0.85	21,250	21,250	42,500	
강원	0.65	16,250	16,250	32,500	
충북	0.96	24,000	24,000	48,000	
충남	1.44	36,000	36,000	72,000	
전북	0.61	15,250	15,250	30,500	
전남	0.63	15,750	15,750	31,500	
경북	1.00	25,000	25,000	50,000	
경남	1.94	48,500	48,500	97,000	
제주	0.48	12,000	12,000	24,000	
계	12	300,000	300,000	600,000	

● 사슴 결핵병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대상 : 1세 이상 사슴 ☐ 실시기간 : 연중 ☐ 소요경비 : 두당 75,600원 ○ 국비 37,800원, 지방비 37,800원 - 국비 50%, 지방비 50% ○ 두당 소요경비는 결핵병 검진에 필요한 진단액, 마취제, 해독제 및 Blow gun 등 관련물품 구입비 포함 ☐ 실시요령 ○ 농가에서 의뢰받은 사슴에 대한 검사를 우선 실시 ○ 검사방법 : PPD(피내주사 반응법) ○ PPD 확인검사 결과, 양성 판정 시 이동제한, 동거 사슴 PPD검사 등 방역조치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 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라 실시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18	699	699	1,398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53	2,003	2,003	4,006	
세종	24	907	907	1,814	
경기	453	17,105	17,105	34,210	
강원	443	16,745	16,745	33,490	
충북	447	16,897	16,897	33,794	
충남	897	33,907	33,907	67,814	
전북	341	12,890	12,890	25,780	
전남	447	16,897	16,897	33,794	
경북	296	11,170	11,170	22,340	
경남	521	19,694	19,694	39,388	
제주	33	1,266	1,266	2,532	
계	4257	160,909	160,909	321,818	

● 돼지오제스키병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 업 량			사 업 비			세 부 내 역
	양돈장	종돈장	계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	☐ 실시대상 : 50두 규모 이상 전 양돈농가 ☐ 농가당 연 2회, 1회 10두 이상 - 위축돈 등 이상증상을 보이는 돼지 우선 검사 ☐ 종돈장·정액처리업체는 “종돈장방역관리요령 (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검사 실시 - 종돈장 후보모돈 연간 분양물량의 5%이상
부산	0.09	-	0.09	141	18	159	
대구	0.21	0.52	0.73	1,152	147	1,299	☐ 시료채취 및 검사실시기관 ☐ 시료채취 - 양돈장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종돈장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검사기관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검사방법 : 감별진단 또는 간이진단법
인천	0.04	-	0.04	63	8	71	
광주	0.08	-	0.08	125	16	141	☐ 소요경비 : 두당 1,768원 (국비 1,568, 지방비 200) ☐ 진단키트 구입비: 두당 1,368원(국비 100) ☐ 재료비: 두당 400원(국비 200, 지방비 200)
대전	0.02	-	0.02	31	4	35	
울산	0.16	-	0.16	251	32	283	☐ 검사실적 보고 ☐ 시·도는 월별 검사실적을 시험소 본소에서 취합하여 검역본부(역학조사과)에 제출 ☐ 검역본부는 검사실적을 취합·분석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세종	0.59	0.3	0.89	1,396	178	1,574	
경기	12.05	4	16.05	25,166	3,210	28,376	
강원	2.19	3	5.19	8,138	1,038	9,176	
충북	3.52	5.60	9.12	14,306	1,825	16,131	
충남	12.09	3.7	15.79	24,759	3,160	27,919	
전북	7.27	3	10.27	16,103	2,054	18,157	
전남	5.38	4	9.38	14,708	1,876	16,584	
경북	6.77	3.76	10.53	16,512	2,106	18,618	
경남	6.39	4	10.39	16,295	2,078	18,373	
제주	2.79	1	3.79	5,943	758	6,701	
계	59.64	32.88	92.52	144,401	18,418	162,819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모니터링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실시기간 : 연중 □ 검사대상 : 「아프리카돼지열병 상시 예찰 검사 계획」에 따름 ○ 양돈농가 사육돼지, 축산시설(도축장, 배합사료 공장, 분뇨처리업체), 야생멧돼지, 환경 등 □ 검사종류 : ASF 항원·항체 검사 □ 소요경비: 두당 19,700원(재료비) ○ 국비 9,850원, 지방비 9,850원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양돈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ASF 발생 위험성이 높은 대상은 검사 확대 - 전국 양돈농장(연 1회, 농가별 10두), 취약농가(연 1회, 농가별 10두), 밀집사육단지(연 1회, 농가별 10두), 축산시설(도축장-매월, 사료공장·분뇨처리업체-분기별),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권역화 지역 출하 돼지 환경시료 검사 등
부산	140	4,400	4,400	8,800	
대구	710	15,000	15,000	30,000	
인천	790	8,000	8,000	16,000	
광주	310	5,800	5,800	11,600	
대전	180	4,000	4,000	8,000	
울산	370	9,000	9,000	18,000	
세종	640	10,400	10,400	20,800	
경기	93,030	630,000	630,000	1,260,000	
강원	30,300	310,000	310,000	620,000	
충북	47,500	300,000	300,000	600,000	
충남	14,270	320,000	320,000	640,000	
전북	10,300	230,000	230,000	460,000	
전남	8,370	136,000	136,000	272,000	
경북	55,080	530,510	530,510	1,061,020	
경남	8,390	118,000	118,000	236,000	
제주	3,850	70,000	70,000	140,000	
계	274,230	2,701,110	2,701,110	5,402,220	

● 추백리·가금티푸스(평판)

(단위 : 천수,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대상 : 부화목적의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 □ 실시기간 : 연중 □ 소요경비 : 마리당 124원 (국비 74, 지방비 50) ○ 진단액 구입비 : 24원(국비 100%) ○ 재료비 : 100원(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중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름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0.5	37	25	62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0.1	7	5	12	
경기	15.5	1,147	775	1,922	
강원	1.8	133	90	223	
충북	8.2	607	410	1,017	
충남	20	1,480	1,000	2,480	
전북	33	2,442	1,650	4,092	
전남	9	666	450	1,116	
경북	5.4	400	270	670	
경남	2.2	163	110	273	
제주	0.5	37	25	62	
계	96.2	7,119	4,810	11,929	

● 추백리·가금티푸스(ELISA)

(단위 : 천수,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대상 : 부화목적의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 ☐ 실시기간 : 연중 ☐ 소요경비 : 마리당 1,753원 (국비 1,703, 지방비 50) ○ 진단액 구입비: 1,653원(국비 100%) ○ 재료비: 100원(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름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0.1	170	5	175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0.01	17	1	18	
경기	1	1,703	50	1,753	
강원	0.3	511	15	526	
충북	1	1,703	50	1,753	
충남	3.3	5,620	165	5,785	
전북	4.4	7,493	220	7,713	
전남	1.1	1,873	55	1,928	
경북	1.1	1,873	55	1,928	
경남	0.4	750	22	772	
제주	0.1	170	5	175	
계	12.81	21,883	643	22,526	

●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비

(단위 : 건,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1,182	17,730	17,730	35,460	□ 실시기간 : 연중 □ 검사대상 :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찰·검사 계획에 따름 ○ 가금·야생조류 및 가금 사육농장·축산관계시설 및 축산관련차량 환경시료 등
부산	761	11,410	11,410	22,820	
대구	2,482	37,230	37,230	74,460	□ 검사종류 : 조류인플루엔자 항원·항체 검사 □ 지원대상 : 시·도(가축방역기관 및 시·군)
인천	343	5,140	5,140	10,280	
광주	1,844	27,650	27,650	55,300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대전	307	4,600	4,600	9,200	
울산	1,229	18,430	18,430	36,860	□ 소요경비 : 건당 30천원 (국비 15, 지방비 15) ○ 약품부: 24천원(국비 12, 지방비 12) ○ 재료비: 6천원(국비 3, 지방비 3)
세종	2,197	32,950	32,950	65,900	
경기	31,703	475,550	475,550	951,100	□ 실시요령 ○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관련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정상적 비용*을 지원 ※ 시료 채취, 검사(항원·항체·부검 등) 및 포장·운송 등 재료비, 검사시료 운송 지원비 등 포함
강원	6,807	102,110	102,110	204,220	
충북	38,007	570,110	570,110	1,140,220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시료 채취〉 ※ (농장·시설·차량)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주관으로 시료채취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및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서 지원 ※ (야생조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야생조류 서식 현황 등을 감안하여 철새도래지,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 등에서 야생조류 시료(분변·포획) 채취 계획 수립·시행
충남	28,307	424,600	424,600	849,200	
전북	32,624	489,360	489,360	978,720	
전남	41,795	626,930	626,930	1,253,860	
경북	22,407	336,110	336,110	672,220	
경남	7,726	115,890	115,890	231,780	
제주	2,127	31,910	31,910	63,820	
계	221,848	3,327,710	3,327,710	6,655,420	

4 방제약품

● 소 진드기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 대상 : 진드기 서식지의 사육 소 ※ 대규모 양축농가 제외 □ 실시기간 및 방법 : 4~10월 ○ 10~20일 간격으로 실시 □ 소요경비 ○ 약품 구매비 : 두당 53원 (국비 37, 지방비 16) - 국비 70%, 지방비 30% ※ 부족분(추가소요액)은 지방비 확보하여 추진 □ 실시요령 ○ 진드기 서식지 및 바베시아병, 타일레리아병 다발 지역 우선실시 ○ 진드기 출현 시기에 맞춰 구제 일정을 정하여 동시 구제 시행 ○ 가축의 몸체에 분무 또는 약물목욕 실시 ○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대규모 농장에 대하여 농가 자율적으로 진드기 구제를 하도록 지도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	-	-	-	
강원	19.05	705	305	1,010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	-	-	-	
전남	4.86	180	78	258	
경북	-	-	-	-	
경남	-	-	-	-	
제주	1069.89	39,586	17,118	56,704	
계	1,093.8	40,471	17,501	57,972	

● 꿀벌 응애류

(단위 : 천군,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6	5,250	2,250	7,500	☐ 지원대상 ☐ 양봉산업육성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양봉농가(양봉농가에서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 기준) ※ 다만, 양봉농가 등록 기준 이하인 농가에 대해서는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별도 등록·관리하여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부산	35	30,625	13,125	43,750	
대구	89	78,077	33,462	111,539	
인천	28.5	24,938	10,688	35,626	
광주	45	39,375	16,875	56,250	☐ 구제 실시기간 및 방법 ☐ 연중 방제시기*에 맞춰 실시하되, 지역별 방제 시기 조정 가능 * (예) 첫 봄벌 관리(1~2월), 분봉 관리(6~7월), 월동직전 관리(10~11월) ☐ 유밀기 직전 및 유밀기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대전	35	30,625	13,125	43,750	
울산	76	66,500	28,500	95,000	
세종	22	19,250	8,250	27,500	
경기	203	177,625	76,125	253,750	☐ 소요경비 ☐ 약품비: 1군당 1,250원(250원×5회) ☐ 국비: 875원, 지방비 : 375원 - 국비 70%, 지방비 30%
강원	295	258,125	110,625	368,750	
충북	420	367,500	157,500	525,000	
충남	334	292,250	125,250	417,500	
전북	334	292,250	125,250	417,500	☐ 실시요령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꿀벌응애 방제제 선정시 2년 연속 동일한 성분의 합성화학제가 선정되지 않도록 할 것[23년도에는 꿀벌 응애에 저항성이 있다고 보고된 성분(예 : 플루발리네이트) 지원 제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꿀벌응애류 감염 특성상 전국에서 동시에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 이므로 시·도별로 적기에 구제약품을 농가에 지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방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계획량을 100%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전남	360	315,000	135,008	450,008	
경북	585	511,673	219,288	730,961	
경남	460	402,500	172,500	575,000	
제주	105	91,875	39,375	131,250	
계	3,432.5	3,003,438	1,287,196	4,290,634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 양봉농가로 하여금 약품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숙지토록 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 ○ 구제약품 지원 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선정할 것 *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시·도지사는 시·도별로 배정된 꿀벌 구제약품 3종 예산의 총액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 약품간 상호 교차 지원 가능 □ 기타사항 ○ 시·도지사는 시·군별 꿀벌 구제약품 선정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연 2회: 3월 ·6월 말까지)

● 꿀벌 노제마증

(단위 : 천군,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6	4,536	1,944	6,480	☐ 지원대상 ☐ 양봉산업육성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양봉농가(양봉농가에서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 기준) ※ 다만, 양봉농가 등록 기준 이하인 농가에 대해서는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별도 등록·관리하여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부산	25	18,900	8,100	27,000	
대구	63	47,750	20,464	68,214	
인천	15	11,340	4,860	16,200	
광주	43	32,508	13,932	46,440	☐ 방제 실시기간 및 방법 ☐ 연중 방제시기에 맞춰 실시하되, 지역별 방제시기 조정 가능 ☐ 유밀기 직전 및 유밀기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대전	17	12,852	5,508	18,360	
울산	54	40,824	17,496	58,320	
세종	13	9,828	4,212	14,040	
경기	100	75,600	32,400	108,000	☐ 소요경비 ☐ 약품비 : 1군당 1,080원(270원×4회) ☐ 국비 : 756원, 지방비 : 324원 - 국비 70%, 지방비 30%
강원	150	113,400	48,600	162,000	
충북	250	189,000	81,000	270,000	
충남	187	141,372	60,588	201,960	
전북	188	142,128	60,912	203,040	☐ 실시요령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꿀벌노제마증 감염특성상 전국에서 동시에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시·도별로 적기에 구제약품을 농가에 지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방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계획량을 100%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 양봉농가로 하여금 약품 사용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토록 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
전남	207	156,492	67,068	223,560	
경북	409	309,082	132,464	441,546	
경남	250	189,000	81,000	270,000	
제주	67	50,652	21,708	72,360	
계	2,044	1,545,264	662,256	2,207,520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 방제약품 지원 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선정할 것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시·도지사는 시·도별로 배정된 꿀벌 구제약품 3종 예산의 총액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 약품간 상호 교차 지원 가능 □ 기타사항 ○ 시·도지사는 시·군별 꿀벌 구제약품 선정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연 2회: 3월·6월 말까지)

●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단위 : 천군,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6	5,620	2,408	8,028	☐ 지원대상 ☐ 양봉산업육성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양봉농가(양봉농가에서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 기준) ※ 다만, 양봉농가 등록 기준 이하인 농가에 대해서는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별도 등록·관리하여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부산	10	9,366	4,014	13,380	
대구	51	47,889	20,524	68,413	
인천	12	11,239	4,817	16,056	
광주	38	35,591	15,253	50,844	☐ 구제 실시기간 및 방법 ☐ 연중 방제시기에 맞춰 실시하되, 지역별 방제시기 조정 가능 ☐ 유밀기 직전 및 유밀기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대전	14	13,112	5,620	18,732	
울산	43	40,274	17,260	57,534	
세종	7	6,556	2,810	9,366	
경기	85	79,611	34,119	113,730	☐ 소요경비 ☐ 약품비: 1군당 1,338원(446원×3회) ☐ 국비: 936.6원, 지방비 : 401.4원 - 국비 70%, 지방비 30%
강원	120	112,392	48,168	160,560	
충북	200	187,320	80,280	267,600	
충남	161	150,793	64,625	215,418	
전북	147	137,680	59,006	196,686	☐ 실시요령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낭충봉아부패병 감염 특성상 전국에서 동시에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시·도별로 적기에 구제약품을 농가에 지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방비 확보에 최선을 기하여 사업계획량을 100%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 양봉농가로 하여금 약품 사용전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숙지토록 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 ☐ 방제약품 지원 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선정할 것 ※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는 지원 대상이 아님
전남	161	150,793	64,624	215,417	
경북	325	304,272	130,402	434,674	
경남	187	175,144	75,062	250,206	
제주	54	50,576	21,676	72,252	☐ 시·도지사는 시·도별로 배정된 꿀벌 방제약품 3종 예산의 총액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 약품간 상호 교차 지원 가능
계	1,621	1,518,228	650,668	2,168,896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 기타사항 ○ 시·도지사는 시·군별 꿀벌 방제약품 선정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연 2회: 3월·6월 말까지)

㉔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검사계획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387	50,000	50,000	100,000	□ 사업량 : 1,550 균주 (반려동물(개·고양이)항생제 내성모니터링 검사) □ 검사대상 질병 : 총 10종(분변·병변별) ※ 대장균, 장알균, 클로스트리듐속, 포도알균속, 슈도모나스속, 사슬알균속, 프로테우스속, 보르데텔라속, 파스튜넬라속, 캄필로박터속 □ 사업비 : 400,000천원 ○ 지원단가 : 균주 건당 258천원 ※ 시료채취비*, 시료송부 및 검사재료비 등 검사비용 포함 * 시료채취비: 두당 분변시료 5천원, 임상시료 10천원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추가 소요비용은 지방비에서 부담 □ 실시요령 ○ 모니터링 지정 동물병원(공수의 동물병원 등)은 개·고양이에서 분변 또는 병변별 시료채취 후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 의뢰 ※ 시·도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동물병원 지정운영 ○ 모니터링 지정 동물병원을 활용한 시료채취 시 사업비 지원단가에 따른 시료채취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임상시료(설사, 피부, 뇨, 호흡기 등) 채취는 환측 진료 과정에서 시료채취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시행토록 지도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병원으로부터 검사의뢰된 시료에서 부위별·병변별로 검사대상 균종 분리·동정, 항생제감수성검사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세균질병과)에 검사실적 제출 및 해당균주 송부(검사실적 및 분리 균주는 반기별 제출)
부산	209	36,000	36,000	72,000	
대구	159	19,000	19,000	38,000	
인천	159	19,000	19,000	38,000	
광주	159	19,000	19,000	38,000	
대전	159	19,000	19,000	38,000	
울산	159	19,000	19,000	38,000	
세종	-	-	-	-	
경기	159	19,000	19,000	38,000	
강원	-	-	-	-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	-	-	-	
전남	-	-	-	-	
경북	-	-	-	-	
경남	-	-	-	-	
제주	-	-	-	-	
계	1,550	200,000	200,000	400,000	

6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기간 : 연중 □ 시료채취 대상 :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찰·검사 계획」에 따름 ○ 가금·야생조류 및 가금 사육농장·축산관계시설 및 축산관련차량 환경시료 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항체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 지원대상 : 시·도(가축방역기관 및 시·군)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관련 민간 수의사(공수의 포함)를 통한 시료채취 시 인건비* 등을 지급 * 민간 수의사(공수의 포함) 시료채취비는 '수의사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거, 203천원(1일 8시간 근로 기준 일당)을 지급하되, 근무지 내 출장여비 20천원 추가 지급 가능 - 일액 : 203,120원 = 25,390원 × 8시간 / 지급 지원 가능
부산	-	-	-	-	
대구	14	1,430	1,430	2,860	
인천	13	1,320	1,320	2,640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410	41,570	41,570	83,140	
강원	335	34,030	34,030	68,060	
충북	264	26,830	26,830	53,660	
충남	256	25,980	25,980	51,960	
전북	738	74,900	74,900	149,800	
전남	544	55,180	55,180	110,360	
경북	200	20,310	20,310	40,620	
경남	188	19,070	19,070	38,140	
제주	43	4,380	4,380	8,760	
계	3,005	305,000	305,000	610,000	

㉓ AI 검사 체계 개편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0	□ 실시기간 : 연중 □ 사업개요 : 「'24년도 민간 검사기관 AI 정밀검사 사업지침」에 따름 ○ 민간 가축병성감정기관이 가금농장에 대해 AI 예찰을 위한 정밀검사 시료 채취와 정밀검사 용역 수행 □ 지원대상 : 4개 시·도 - 경기, 충북, 충남, 전북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부산	-	-	-	0	
대구	-	-	-	0	
인천	-	-	-	0	
광주	-	-	-	0	
대전	-	-	-	0	
울산	-	-	-	0	
세종	-	-	-	0	
경기	1,000	151,500	151,500	303,000	
강원	-	-	-	0	
충북	1,000	151,500	151,500	303,000	
충남	1,000	151,500	151,500	303,000	
전북	1,000	151,500	151,500	303,000	
전남	-	-	-	0	
경북	-	-	-	0	
경남	-	-	-	0	
제주	-	-	-	0	
계	4,000	606,000	606,000	1,212,000	

8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서울	-	-	-	-	-	□ 지원대상 : 양돈농가 및 종돈장·정액 등 처리업체 □ 지원기준 : 개소당 10백만원 * 연차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지원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내역 : 전염병 방역 자문비용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세부사항은 2024년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시행
부산	-	-	-	-	-	
대구	1	3,000	3,000	4,000	10,000	
인천	6	18,000	18,000	24,000	60,000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1	3,000	3,000	4,000	10,000	
세종	-	-	-	-	-	
경기	40	120,000	120,000	160,000	400,000	
강원	10	30,000	30,000	40,000	100,000	
충북	8	24,000	24,000	32,000	80,000	
충남	43	129,000	129,000	172,000	430,000	
전북	54	162,000	162,000	216,000	540,000	
전남	26	78,000	78,000	104,000	260,000	
경북	27	81,000	81,000	108,000	270,000	
경남	50	150,000	150,000	200,000	500,000	
제주	20	60,000	60,000	80,000	200,000	
계	286	858,000	858,000	1,144,000	2,860,000	

9 가축질병(돼지) 모니터링 검사계획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사업량 : 286호(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대상농가) □ 검사대상 질병 : 10종 ※ 돼지열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싸코 바이러스 (PCV-2), 유행성페렴, 홍막페렴, 위축성비염, 파스튜렐라, 살모넬라, 글래서병, 돼지유행성설사병(PED) □ 검사주기 : 연 2회 □ 사업비 : 1,430,000천원 ○ 지원단가 : 농가별 5,000천원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추가 소요비용은 지방비에서 부담 □ 실시요령 ○ 컨설팅자문단(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은 시료채취 후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 의뢰 ※ 위축돈(환돈) 시료는 채취 및 송부요령에 따라 농림 축산검역본부(질병진단과)에 의뢰 ○ 사도(동물위생시험소)는 10종에 대한 질병 검사 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결과 입력 (검사실적은 월별로 확정) ※ 컨설팅자문단에 검사결과 별도 송부 ○ 컨설팅자문단은 농가별 현지조사서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질병감염 상황 등을 참고하여 농가 지도 ※ 검역본부 주관 하에 검사시료 채취방법 및 질병감염상황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후, 착수
부산	-	-	-	-	
대구	1	2,500	2,500	5,000	
인천	6	15,000	15,000	30,000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1	2,500	2,500	5,000	
세종	-	-	-	-	
경기	40	100,000	100,000	200,000	
강원	10	25,000	25,000	50,000	
충북	8	20,000	20,000	40,000	
충남	43	107,500	107,500	215,000	
전북	54	135,000	135,000	270,000	
전남	26	65,000	65,000	130,000	
경북	27	67,500	67,500	135,000	
경남	50	125,000	125,000	250,000	
제주	20	50,000	50,000	100,000	
계	286	715,000	715,000	1,430,000	

소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지원대상 ○ 농장 사육 소, 다발 지역 일제 검사, 발생농장 재검사, 농가 의뢰검사 등에 동원된 채혈 요원(공수의 등)에게 채혈비 지급 ※ 소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와 관련된 채혈은 방역본부에서 담당하되 필요시 방역본부와 시도가 협의하여 검사량을 조정하고, 검사가 지연되는 시·군은 지자체 여건을 감안하여 채혈요원을 동원, 채혈 후 채혈비 지급 가능 ○ 시·군은 방역본부 배정 검사량을 우선 활용 ※ 시도별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예정
부산	0.67	2,997	6,993	9,990	
대구	12.46	56,070	130,830	186,900	□ 채혈비 : 두당 15천원 (국비 4.5, 지방비 10.5) ※ 한가지 질병에 대한 시료를 채취할 시 두당 10천원 (국비 3, 지방비 7) ※ 부족분(추가소요액)은 지방비 확보하여 추진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70% ○ 지리적 여건, 채혈 물량 등을 고려, 채혈비 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시·군은 자체적으로 단가 조정 가능 ※ 단가 조정 시 지방비만 조정하고 국비 조정은 불가
인천	5.90	26,550	61,950	88,500	
광주	2.00	9,000	21,000	30,000	□ 실시요령 ○ 시·군별 물량 배정 시 사육두수, 농장 감염률, 일제 검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시·군은 공수의 등 채혈 요원을 동원하여 채혈을 시행하고, 채혈비 지급 ※ 필요시 타 시·군 채혈 요원 동원 가능 ○ 검사의뢰서의 개체번호와 다른 가축의 시료를 의뢰한 채혈 요원은 인력 동원에서 제외
대전	0.95	4,275	9,975	14,250	
울산	11.66	52,470	122,430	174,900	□ 실시요령 ○ 시·군별 물량 배정 시 사육두수, 농장 감염률, 일제 검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시·군은 공수의 등 채혈 요원을 동원하여 채혈을 시행하고, 채혈비 지급 ※ 필요시 타 시·군 채혈 요원 동원 가능 ○ 검사의뢰서의 개체번호와 다른 가축의 시료를 의뢰한 채혈 요원은 인력 동원에서 제외
세종	10.00	45,000	105,000	150,000	
경기	70.92	319,140	744,660	1,063,800	□ 실시요령 ○ 시·군별 물량 배정 시 사육두수, 농장 감염률, 일제 검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시·군은 공수의 등 채혈 요원을 동원하여 채혈을 시행하고, 채혈비 지급 ※ 필요시 타 시·군 채혈 요원 동원 가능 ○ 검사의뢰서의 개체번호와 다른 가축의 시료를 의뢰한 채혈 요원은 인력 동원에서 제외
강원	70.00	315,000	735,000	1,050,000	
충북	67.58	304,125	709,625	1,013,750	□ 실시요령 ○ 시·군별 물량 배정 시 사육두수, 농장 감염률, 일제 검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시·군은 공수의 등 채혈 요원을 동원하여 채혈을 시행하고, 채혈비 지급 ※ 필요시 타 시·군 채혈 요원 동원 가능 ○ 검사의뢰서의 개체번호와 다른 가축의 시료를 의뢰한 채혈 요원은 인력 동원에서 제외
충남	90.00	405,000	945,000	1,350,000	
전북	104.38	469,710	1,095,990	1,565,700	□ 실시요령 ○ 시·군별 물량 배정 시 사육두수, 농장 감염률, 일제 검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시·군은 공수의 등 채혈 요원을 동원하여 채혈을 시행하고, 채혈비 지급 ※ 필요시 타 시·군 채혈 요원 동원 가능 ○ 검사의뢰서의 개체번호와 다른 가축의 시료를 의뢰한 채혈 요원은 인력 동원에서 제외
전남	227.51	1,023,810	2,388,900	3,412,710	
경북	200.86	903,855	2,108,995	3,012,850	□ 실시요령 ○ 시·군별 물량 배정 시 사육두수, 농장 감염률, 일제 검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시·군은 공수의 등 채혈 요원을 동원하여 채혈을 시행하고, 채혈비 지급 ※ 필요시 타 시·군 채혈 요원 동원 가능 ○ 검사의뢰서의 개체번호와 다른 가축의 시료를 의뢰한 채혈 요원은 인력 동원에서 제외
경남	140.00	630,000	1,470,000	2,100,000	
제주	10.00	45,000	105,000	150,000	□ 실시요령 ○ 시·군별 물량 배정 시 사육두수, 농장 감염률, 일제 검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시·군은 공수의 등 채혈 요원을 동원하여 채혈을 시행하고, 채혈비 지급 ※ 필요시 타 시·군 채혈 요원 동원 가능 ○ 검사의뢰서의 개체번호와 다른 가축의 시료를 의뢰한 채혈 요원은 인력 동원에서 제외
계	1,024.89	4,612,002	10,761,348	15,373,350	

II-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채혈비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지원대상 ○ 긴급상황 발생 시 모든 출하 전 검사, 권역간 돼지 이동, 방역대 농장 일제 검사 등에 동원된 채혈요원(공수의 등)에게 지급 ※ 권역화 관리지역 확대 등 수요 변동 시, 사업지역 확대, 사업량 증감 및 시도간 사업량 조정 가능 □ 채혈비 : 두당 15천원(모돈) (국비 4.5, 지방비 10.5) 두당 10천원(비육돈) (국비 3, 지방비 7)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70% □ 실시요령 ○ 시·군 별 물량 배정시 '23년 방역본부 시료채취 실적, 공수의 등 채혈인력, 검사 수요 등을 감안 하여 배정 ○ 시·군은 공수의 등 채혈요원을 동원하여 채혈토록 하고 비용 지급 ※ 소요경비 총액은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소요경비 총액에 포함 ※ 긴급상황 발생 시 기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만 사용 - 중액이 필요한 경우 별도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2,700	12,000	28,000	40,000	
강원	4,700	21,000	49,000	70,000	
충북	1,600	7,125	16,625	23,750	
충남	-	-	-	-	
전북	-	-	-	-	
전남	-	-	-	-	
경북	900	4,125	9,625	13,750	
경남	-	-	-	-	
제주	-	-	-	-	
계	9,900	44,250	103,250	147,500	

11 동물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분	보조원 지 원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방역보조원 운영비 ○ 소요경비 : 국비 40%, 지방비 60% - 산출근거: 277명×13.58백만원×40% ○ 산출기준 - 1인×54,320원/1일×250일(1년) - 1인당 연 13,580,000원 (국비 5,432,000, 지방비 8,148,000) ○ 지원기준 : 국비 40%, 지방비 60% ※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지급기준(최저 인건비 인상 등)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비를 별도로 확보하여 추진 □ 방역보조원 배치기준 ○ 시·도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시험소 관할지역 가축사육두수 및 검사물량 등을 감안하여 배치 ※ 보조원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과 월차·주차수당 등 제비용은 지방비에서 지원 (운영비 내에서 사용 불가)
부산	4	21,728	32,592	54,320	
대구	5	21,728	32,592	54,320	
인천	4	21,728	32,592	54,320	
광주	4	21,728	32,592	54,320	
대전	4	21,728	32,592	54,320	
울산	2	10,864	16,296	27,160	
세종	5	27,160	40,740	67,900	
경기	29	157,528	236,292	393,820	
강원	29	157,528	236,292	393,820	
충북	21	114,072	171,108	285,180	
충남	44	239,008	363,148	602,156	
전북	31	168,392	252,588	420,980	
전남	23	124,936	187,404	312,340	
경북	25	135,800	203,700	339,500	
경남	30	162,960	244,440	407,400	
제주	18	97,776	146,664	244,440	
계	278	1,504,664	2,256,996	3,761,660	

12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 지원

(단위 : 대, 천원)

구분	차량수	소요경비				세 부 내 역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서울	410	12,177	12,177	24,354	48,708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 지원 ○ 1대당 : 9,900원/월 (국비 2,475원, 지방비 2,475, 자부담 4,950) ○ 지원기준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실시요령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운행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지급(50%) ○ 이동통신사는 매월 시·도 또는 시·군·구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가입 내역에 따라 통신비의 50%는 지자체, 50%는 가입자에게 청구 ※ 이동통신사 청구 서류 : GPS 가입내역, 청구서
부산	390	11,583	11,583	23,166	46,332	
대구	1,200	35,640	35,640	71,280	142,560	
인천	870	25,839	25,839	51,678	103,356	
광주	660	19,602	19,602	39,204	78,408	
대전	465	13,811	13,811	27,622	55,244	
울산	910	27,027	27,027	54,054	108,108	
세종	640	19,008	19,008	38,016	76,032	
경기	10,000	297,000	297,000	594,000	1,188,000	
강원	4,555	135,284	135,284	270,568	541,136	
충북	5,316	157,884	157,884	315,768	631,536	
충남	9,350	277,695	277,695	555,390	1,110,780	
전북	7,600	225,720	225,720	451,440	902,880	
전남	7,424	220,493	220,493	440,986	881,972	
경북	10,920	324,324	324,324	648,648	1,297,296	
경남	7,860	233,442	233,442	466,884	933,768	
제주	1,430	42,471	42,471	84,942	169,884	
유보	-	-	-	-	-	
계	70,000	2,079,000	2,079,000	4,158,000	8,316,000	

13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

(단위 : 대, 천원)

구분	대상 차량수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160	4,800	4,800	9,600	☐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 1대당 : 60,000원/1회 - 국비 30,000원, 지방비 30,000원 ※ 지원비용은 설치업체와의 계약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방문 기록 상시 수집 체계 구축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신규 장착 및 이전설치 비용 지원(A/S, 말소시 탈거 포함) - 대상 : 축산차량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자 ※ GPS 전원공급방식 : 시가책 연결 방식 → 상시전원방식 ☐ 실시요령 ○ 축산차량 GPS 단말기를 상시전원 방식으로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단말기 설치업체(이통사 또는 단말기 제조업체 지정)에 지급 ○ 단말기 설치업체는 매월말 시·도 또는 시·군·구별 GPS 단말기 설치내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지자체는 익월 10일까지 업체에 설치비용 지급 ※ 설치업체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설치증빙사진 등
부산	100	3,000	3,000	6,000	
대구	403	12,090	12,090	24,180	
인천	272	8,160	8,160	16,320	
광주	270	8,100	8,100	16,200	
대전	180	5,400	5,400	10,800	
울산	450	13,500	13,500	27,000	
세종	220	6,600	6,600	13,200	
경기	2,500	75,000	75,000	150,000	
강원	1,525	45,750	45,750	91,500	
충북	1,200	36,000	36,000	72,000	
충남	2,375	71,250	71,250	142,500	
전북	3,100	93,000	93,000	186,000	
전남	2,610	78,300	78,300	156,600	
경북	3,860	115,800	115,800	231,600	
경남	3,000	90,000	90,000	180,000	
제주	349	10,470	10,470	20,940	
유보	2,926	87,780	87,780	175,560	
계	25,500	765,000	765,000	1,530,000	

14 가축질병 검사실 운영지원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개소수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가축질병 검사실 유지(운영)비 ○ 1개소당 : 30,000천원 (국비 15,000, 지방비 15,000) ○ 산출기준 - 1개소 × 30,000,000원/연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실시요령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질병 검사실 유지·운영 관련 전문용역기관과 계약 체결 ※ 동 운영비는 가축질병 실험실 유지·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계약체결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가수도 등 기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비 부담 ○ 실험실 유지·운영비용 지급은 일시불 집행을 자제하고 가능한 분기별로 집행 ※ 실험실 유지(운영)비용이 부족한 경우, 지방비를 별도 확보하여 지급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1	15,000	15,000	30,000	
세종	1	15,000	15,000	30,000	
경기	3	45,000	45,000	90,000	
강원	2	30,000	30,000	60,000	
충북	2	30,000	30,000	60,000	
충남	2	30,000	30,000	60,000	
전북	2	30,000	30,000	60,000	
전남	1	15,000	15,000	30,000	
경북	2	30,000	30,000	60,000	
경남	4	60,000	60,000	120,000	
제주	1	15,000	15,000	30,000	
계	21	315,000	315,000	630,000	

15 가축질병 가상방역훈련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대상 : 과거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철새 도래지 등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도 (시·군·구), 가축질병 발생 우려가 있는 시·도 (시·군·구) 등
부산	-	-	-	-	
대구	1	7,500	7,500	15,000	□ 실시기간 및 방법 : 연중
인천	-	-	-	-	
광주	-	-	-	-	□ 소요경비 : 1회당 15,000천원 (국비 7,500천원, 지방비 7,500천원)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대전	-	-	-	-	
울산	1	7,500	7,500	15,000	□ 실시요령 ○ 시·도지사는 5월까지 대상 시·군·구를 선정하여 보고하고(시·도 직접 실시 가능),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한 뒤 결과 보고
세종	1	7,500	7,500	15,000	
경기	2	15,000	15,000	30,000	
강원	2	15,000	15,000	30,000	
충북	1	7,500	7,500	15,000	
충남	2	15,000	15,000	30,000	
전북	2	15,000	15,000	30,000	
전남	1	7,500	7,500	15,000	
경북	1	7,500	7,500	15,000	
경남	2	15,000	15,000	30,000	
제주	1	7,500	7,500	15,000	
계	17	127,500	127,500	255,000	

16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서울	-	-	-	-	-	□ 사업량: 500호(오리 및 닭 사육농가) □ 기간 : 연중 □ 사업비 : 5,000,000천원 ○ 지원단가 : 농가별 10,000천원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불가 □ 실시요령 ○ 컨설팅자문단(질병담당)은 계약기간 중 농가 방문·맞춤형 컨설팅을 18회 이상 실시 ○ 농가별 컨설팅시 질병에 대한 검사 의무화(최소 연 5회) ※ 검사비용은 가축질병모니터링 검사사업 예산 ○ 컨설팅자문단은 농가별 질병검사 결과를 컨설팅시 활용하고, 농가별 질병 감염 상황 등을 참고하여 농가 지도 ※ 자문단별 계약농장이 10농장이 넘지 않아야 함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6	18,000	18,000	24,000	60,000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1	3,000	3,000	4,000	10,000	
세종	-	-	-	-	-	
경기	79	237,000	237,000	316,000	790,000	
강원	13	39,000	39,000	52,000	130,000	
충북	6	18,000	18,000	24,000	60,000	
충남	46	138,000	138,000	184,000	460,000	
전북	137	411,000	411,000	548,000	1,370,000	
전남	74	222,000	222,000	296,000	740,000	
경북	71	213,000	213,000	284,000	710,000	
경남	55	165,000	165,000	220,000	550,000	
제주	12	36,000	36,000	48,000	120,000	
유보						
계	500	1,500,000	1,500,000	2,000,000	5,000,000	

17 가축질병(가금) 모니터링 검사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사 업 량 : 500호 ○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대상농가 ☐ 검사대상 질병 : 15종(닭 11, 오리 4) ☐ 검사주기 : 농가별 연 5회 ☐ 사업비 : 2,000,000천원 ○ 지원단가 : 농가별 4,000천원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추가 소요비용은 지방비에서 부담 ☐ 실시요령 ○ 컨설팅자문단(질병담당)은 직접 시료 채취 후 검사기관에 직접 전달 ○ 시·도(동물위생시험소)는 15종에 대한 질병검사 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결과 입력 (검사실적은 월별로 확정) ※ 컨설팅자문단에 검사결과 별도 송부 ○ 컨설팅자문단은 농가별 질병감염 상황 등을 참고하여 농가 지도 ※ 검역본부는 검사시료 채취방법 및 질병감염상황 분석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후, 착수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6	12,000	12,000	24,000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1	2,000	2,000	4,000	
세종	-	-	-	-	
경기	79	158,000	158,000	316,000	
강원	13	26,000	26,000	52,000	
충북	6	12,000	12,000	24,000	
충남	46	92,000	92,000	184,000	
전북	137	274,000	274,000	548,000	
전남	74	148,000	148,000	296,000	
경북	71	142,000	142,000	284,000	
경남	55	110,000	110,000	220,000	
제주	12	24,000	24,000	48,000	
유보					
계	500	1,000,000	1,000,000	2,000,000	

☐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서울	-	-	-	-	-	□ 사업량: 250호* ※ 「양봉산업 육성법」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 중 사육규모 100봉군 이상의 농가로 양봉장 기준의 주소지에 등록된 농가에 한함) □ 기간 : 연중 □ 사업비 : 1,000,000천원 ○ 지원단가 : 농가별 4,000천원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불가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	-	-	-	-	
광주	-	-	-	-	-	
대전	1	1,200	1,200	1,600	4,000	□ 실시요령 ○ 컨설팅자문단(질병담당)은 계약기간 중 농가 방문·맞춤형 컨설팅을 10회 이상 실시 ○ 농가별 컨설팅시 꿀벌 응애 감염도 및 응애내성 검사 외 질병에 대한 검사 의무화(최소 연 2회) ※ 검사비용은 가축질병모니터링 검사사업 예산 ○ 컨설팅자문단은 농가별 질병검사 결과를 컨설팅시 활용하고, 농가별 질병 감염 상황 등을 참고하여 농가 지도 ※ 자문단별 계약농장이 25농장이 넘지 않아야 함
울산	-	-	-	-	-	
세종	-	-	-	-	-	
경기	21	25,200	25,200	33,600	84,000	
강원	10	12,000	12,000	16,000	40,000	
충북	20	24,000	24,000	32,000	80,000	
충남	23	27,600	27,600	36,800	92,000	
전북	29	34,800	34,800	46,400	116,000	
전남	40	48,000	48,000	64,000	160,000	
경북	29	34,800	34,800	46,400	116,000	
경남	46	55,200	55,200	73,600	184,000	
제주	2	2,400	2,400	3,200	8,000	
유보	29	34,800	34,800	46,400	116,000	
계	250	300,000	300,000	400,000	1,000,000	

19 가축질병(양봉) 모니터링 검사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사 업 량 : 250호 ☐ 양봉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대상농가 ☐ 검사대상 질병 및 항목 : 꿀벌 응애 감염조사 및 응애내성 검사와 꿀벌 질병 17종* ※ 세균 2종, 바이러스 7종, 진균 3종, 기생충 5종, 단, 응애 감염도 검사는 컨설팅 자문단이 농가 방문 시 현장에서 실시(연 2회 이상) ☐ 검사주기 : 농가별 최소 연 2회 이상 ☐ 사업비 : 1,000,000천원 ☐ 지원단가 : 농가별 4,000천원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추가 소요비용은 지방비에서 부담 ☐ 실시요령 ☐ 컨설팅자문단(질병담당)은 직접 시료 채취 후 검사기관에 직접 전달 ☐ 시·도(동물위생시험소)는 응애 감염도 및 응애 내성 검사와 꿀벌질병 14종*에 대한 질병검사 후, 농가·컨설팅자문단 및 검역본부(세균질병과)에 검사 결과 별도 송부 * 꿀벌응애 2종(바로아응애, 가시응애) 및 작은벌집 딱정벌레감염증은 컨설팅자문단이 현장에서 검사 ☐ 컨설팅자문단은 농가별 질병감염 상황 등을 참고하여 농가 지도 ※ 검역본부에서 검사시료 채취방법 및 질병감염상황 분석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후 컨설팅 착수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1	2,000	2,000	4,000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21	42,000	42,000	84,000	
강원	10	20,000	20,000	40,000	
충북	20	40,000	40,000	80,000	
충남	23	46,000	46,000	92,000	
전북	29	58,000	58,000	116,000	
전남	40	80,000	80,000	160,000	
경북	29	58,000	58,000	116,000	
경남	46	92,000	92,000	184,000	
제주	2	4,000	4,000	8,000	
유보	29	58,000	58,000	116,000	
계	250	500,000	500,000	1,000,000	

☐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서울	-	-	-	-	-	□ 사업내용 ○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등 해충 방제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활용한 닭진드기 방제, 충란제거 등의 목적으로 청소·세척·소독 및 사후관리 지원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3	24,000	24,000	12,000	60,000	□ 지원대상 : 산란계 농가 〈대상농가 우선 선정 기준〉 ○ 소규모 산란계 농가(5만 수 이하) * 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거나 참여 횟수가 적은 농가,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2·3종 가축전염병 진단을 받은 실적(23년 기준)이 있는 농가 등 ※ 지원제외 대상 : 20만수 초과 사육규모의 산란계 농가
광주	-	0	0	-	-	
대전	-	0	0	-	-	
울산	2	16,000	16,000	8,000	40,000	□ 기간 : 연중 □ 소요경비 : 마리당 400원 ○ 산출근거 : 150호×20백만원×40% ○ 국비 160원, 지방비 160, 자부담 80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량 1호는 5만 수 기준
세종	10	80,000	80,000	40,000	200,000	
경기	27	216,000	216,000	108,000	540,000	
강원	10	80,000	80,000	40,000	200,000	□ 실시요령 ○ 산란노계 출하 후 축사(케이지포함) 청소·세척, 소독 및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한 닭진드기 구제 ○ 친환경인증농장의 경우 농약성분이 포함된 살충제 사용금지 ○ 입식 후 주기적인 닭 진드기 모니터링 및 방제작업
충북	11	88,000	88,000	44,000	220,000	
충남	16	128,000	128,000	64,000	320,000	
전북	10	80,000	80,000	40,000	200,000	
전남	13	104,000	104,000	52,000	260,000	
경북	22	176,000	176,000	88,000	440,000	
경남	17	136,000	136,000	68,000	340,000	
제주	9	72,000	72,000	36,000	180,000	
계	150	1,200,000	1,200,000	600,000	3,000,000	

㉑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사업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시행된 2024년 사업지침에 따름 □ 사업대상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지원대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또는 위기단계 “심각”단계에 준하는 상황,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특정 시·군에서 검출되어 구제역 전파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상황 시 지자체가 설치하는 통제초소의 운영과 소독비용 지원 ※ “심각” 단계에 준하는 상황은 농식품부 장관의 결정에 따름 □ 지원내역 ○ 통제초소 설치·유지비용 및 소독약품 구입비용, 방역용품, 근무자 인건비 등 □ 사업비 : 27,400백만원 ○ 국비 13,700, 지방비 13,700 - 국비 50%, 지방비 50% ※ 단가 : 1개소×10.5백만원×12개월×50% = 63백만원 ※ 자치단체의 운영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
부산	1	63,000	63,000	126,000	
대구	3	189,000	189,000	378,000	
인천	2	94,500	94,500	189,000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1	63,000	63,000	126,000	
세종	3	189,000	189,000	378,000	
경기	32	2,016,000	2,016,000	4,032,000	
강원	16	1,008,000	1,008,000	2,016,000	
충북	22	1,386,000	1,386,000	2,772,000	
충남	25	1,575,000	1,575,000	3,150,000	
전북	24	1,512,000	1,512,000	3,024,000	
전남	38	2,454,500	2,454,500	4,909,000	
경북	21	1,323,000	1,323,000	2,646,000	
경남	21	1,323,000	1,323,000	2,646,000	
제주	8	504,000	504,000	1,008,000	
계	217	13,700,000	13,700,000	27,400,000	

㉔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사업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시행된 2024년 사업지침에 따름 □ 주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지원대상 -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 가축사체 처리에 참여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등 -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매몰에 참여한 사람 □ 소요경비 : 총 20,000천원 ○ 국비 10,000, 지방비 10,000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20명×100천원×10일 □ 지원내용 :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	-	-	-	
강원	-	-	-	-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	-	-	-	
전남	-	-	-	-	
경북	-	-	-	-	
경남	-	-	-	-	
제주	-	-	-	-	
유보	20	10,000	10,000	20,000	
계	20	10,000	10,000	20,000	

㉓ 거점 소독·세척시설 지원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소 요 경 비			세 부 내 역
	신규	개보수	국비('23)	지방비	계	
서울	-	-	-	-	-	※ 사업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시행된 2024년 사업지침에 따름 □ 지원대상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소요경비 : 개소당 800,000천원(신규총액 기준) ○ 국비 400,000(50%), 지방비 400,000(50%) ※ 거점 소독·세척시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별도 확보하여 집행 ○ 국비 288,000(50%), 지방비 288,000(50%) ※ '23년도 이전 사업(2년차)의 경우, 단가인상 전 금액을 적용 □ 지원대상 ○ 차량소독용 터널식 소독기 및 대인소독기 ○ 차량전용 세척시설(차량 하부 및 외부 등) ○ CCTV,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및 소독필증 자동발급기 ○ 고압분무소독기 ○ 난방시설, 소독시설 온도제어장치 ○ 기타 기반시설 설치 등 ※ 사업자 등의 기존 시설과 별도 공간(교차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 ※ 설치부지는 사업대상자가 제공 □ 실시요령 ○ 사업자 모집 및 대상자 적격성 등 평가 ○ 사업자 확정 후 시설공사 등 추진 ○ 관련 예산 집행 및 사후관리 실시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	-	-	-	-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	-	-	-	-	
세종	-	-	-	-	-	
경기	1	2	260,000	260,000	520,000	
강원	1	4	317,500	317,500	635,000	
충북	2	5	494,000	494,000	988,000	
충남	1	4	320,000	320,000	640,000	
전북	3	2	554,500	554,500	1,109,000	
전남	1	4	264,000	264,000	528,000	
경북	-	1	30,000	30,000	60,000	
경남	-	4	42,500	42,500	85,000	
제주	-	-	-	-	-	
유보	-	4	167,500	167,500	335,000	
계	9	30	2,450,000	2,450,000	4,900,000	

VII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3940-335) 사업비 교부(배정)

- 수시배정: 긴급방역비(210-11)는 소요 발생 시 시·도에 예산(자금) 재배정
※ 2023년 시·도별 긴급방역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2024년도 예산 배정
- 예산교부 :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연간 교부계획에 따라 교부
※ 지난 회계연도 정산 보고 실적, '23년도 집행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

■ 예산 집행

- 교부(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집행하고, 지방비 부담액도 동시 집행
- 시·도별 특성에 맞는 방역으로 추가 소요 발생 시 지방비에서 부담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사업 완료 보고
 - 각 시·도 및 민간 보조사업자는 2025년 1월 24까지 보고서식(별도통보)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별첨 1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지자체 방역시설·장비 지원내역

(단위 : 대, 개소, 천원)

구분	사 업 량							사 업 비		
	방역 차량	소독 차량	검사 장비	소독 장비	거점소독시설		검사 시설	국 비	지방비	계
					신규	개보수				
합계	45	35	107	10	9	30	3	8,555,000	8,555,000	17,110,000
서울	-	-	1	-	-	-	1	100,000	100,000	200,000
부산	-	1	1	-	-	-	-	55,000	55,000	110,000
대구	1	-	3	-	-	-	-	54,500	54,500	109,000
인천	2	-	2	-	-	-	-	68,000	68,000	136,000
광주	-	-	1	-	-	-	-	35,000	35,000	70,000
대전	-	-	2	-	-	-	-	13,500	13,500	27,000
울산	1	-	1	-	-	-	-	27,500	27,500	55,000
세종	1	-	-	-	-	-	-	20,000	20,000	40,000
경기	8	5	19	-	1	2	-	848,500	848,500	1,697,000
강원	3	1	18	-	1	4	-	662,500	662,500	1,325,000
충북	1	-	7	-	2	5	-	794,000	794,000	1,588,000
충남	9	3	9	-	1	4	1	925,000	925,000	1,850,000
전북	3	2	5	-	3	2	-	969,500	969,500	1,939,000
전남	3	1	12	-	1	4	-	661,000	661,000	1,322,000
경북	7	3	7	-	-	1	-	397,000	397,000	794,000
경남	5	1	11	1	-	4	-	432,500	432,500	865,000
제주	-	3	8	-	-	-	1	1,964,000	1,964,000	3,928,000
유보	1	15	-	9	-	4	-	527,500	527,500	1,055,000

※ 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50%(필요 시 지방비 추가 확보)

〈 별첨 2 〉

2024년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장비 세부 지원내역

구분	구입 장비명 및 물량
합 계	107대
서 울 (1)	조직처리기 1
부 산 (1)	Real-time PCR 1
대 구 (3)	ELISA 리더기 1, 96웰 마이크로플레이트 세척기 1, 냉장냉동시스템 1
인 천 (2)	자동핵산추출기 1, 현미경카메라 1
광 주 (1)	중합효소연쇄반응최적화제품(Real-time PCR) 1
대 전 (2)	실험용 일반냉장고 1, 마이크로플레이트 세척기 1
울 산 (1)	실험용 배양기 1

구분	구입 장비명 및 물량
경 기 (19)	핵산추출기(BL3) 1, 실시간유전자증폭기 1, 유전자증폭기(BL3) 1, 탁상형냉장원심분리기(대형) 1, 탁상형냉장원심분리기(소형) 1, 디지털 엑스레이 1, 고압증기멸균기 1, 실시간유전자증폭기 1, 조직파쇄기(ASF) 1, 음압부검대 1,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ASF) 1, 생물안전작업대 3, 원심분리기(ASF) 1, SUS실험대 1, 초저온냉동고 1, 냉장/냉동고 2
강 원 (18)	세균동정및항생제감수성검사장비 1, 실시간유전자증폭장치 2, 유전자추출장치 2, 흡광도측정기 1, 원심분리기 3, 전자동영동장치 1, 겔이미지분석기 1, 마이크로플레이트세척기 1, 탁상형원심분리기 3, 회전자열교반기 1, 종란부화기 1, 배양기 1
충 북 (7)	고효율시료검색시스템, 자동핵산추출장비 1, 탈이온 장비 2, 조직파쇄기, 생물안전작업대 1, 무영등 1
충 남 (9)	반자동 시료 분주기 1, 양문형고압멸균기(BL-3) 1, 실시간 유전자 분석 장치 1, ELISA 자동화 시스템 1, ELISA 리더기2, ELSIA 세척기 2, 대용량원심분리기 1
전 북 (5)	혈청검사 자동화장비 1, 엘라이자 자동화장비 1, 유전자 증폭기(RT-PCR) 1, 자동 저온 배양기 1, 자동 전기 영동장치 1
전 남 (12)	고압멸균기(BL3) 1, Real-time PCR 1, ELISA 세척기 1, 조직파쇄기 1, 핵산추출장비 (96sample) 2, 핵산추출장비(48sample) 4, ELISA 리더기 2
경 북 (7)	조직균질화기기 1, 냉장대형원심분리기 2, 전자동전기영동장치 1, 실시간유전자증폭장치 2, 자동화핵산추출기 1
경 남 (11)	실시간유전자증폭기(Real-time PCR) 3, 마이크로플레이트 세척기 5, 유전자추출기 1, 초순수제조기 1, 조직파쇄기 1
제 주 (8)	시료보관 냉장고 3, 마이크로플레이트세척기 1, 생화학자동분석장치 1,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 (Real-time PCR) 1, 비드호모게나이저(조직파쇄기) 1, 워터베이스 1

〈 별첨 3 〉

가축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 주요 예찰사업 개요 〉

① 구제역 및 돼지열병 예찰사업

■ 사업목적

- 구제역·돼지열병 질병현황의 지속적인 확인 및 신속한 검색을 위한 예찰체계 유지와 국내 청정화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예찰자료 확보

■ 구제역

- 검사대상 : 전국의 소·염소·돼지를 무작위 선정
- 예찰방법 : 농장예찰(통계예찰·목적예찰)과 도축장·종돈장 예찰로 구분
- 사업물량 : 1,238천건(NSP항체 582천건, SP항체 656천건)

※ 검사방법 등은 세부 사업실시요령 참조

■ 돼지열병

- 검사대상 :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나머지 사업량은 도축장에서 무작위 선정
- 예찰방법 : 항체·항원검사로 구분하고 각각 농장예찰(양돈장, 종돈장) 및 도축장 예찰로 구분
- 사업물량 : 331천건(항체 241천건, 항원 90천건)

※ 검사방법 등은 세부 사업실시요령 참조

② 돼지오제스키병 근절사업

■ 사업목적

- 돼지오제스키병 근절기반 조성을 위한 혈청검사 실시로 감염농장 확인 및 감염·항체양성 돼지의 살처분·도태

■ 사업개요

- 검사대상 : 50두 규모 이상의 양돈장의 번식돈 위주 및 종돈장(AI센타 포함)
후보모돈 연간 분양물량의 5%이상
- 검사물량 : 80천건
 - 종돈장·정액처리업체는 “종돈장방역관리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라 시료채취 및 검사 실시
- 농장시료채취 및 검사 시료채취
 - 방역본부 소속 방역사가 50두 규모 이상 양돈농가를 방문, 연 2회, 1회 10두 이상 시료채취 후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송부
 - 종돈장과 정액처리업체에서 채취한 검사시료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송부 (필요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직접 시료채취)
- 검사방법
 - 검사기관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 포함)
 - 예방접종 지역은 감별 진단키트를 이용하고, 기타 지역은 간이 진단키트 혹은 감별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실시
- 검사결과 후속조치사항
 - 항체 양성돈이 발견된 경우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에 의거 발생 보고와 이동제한, 도축장 지정·도태 등 긴급 방역조치
 - 항체양성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사육 모돈·종돈 전두수를 검사하고 자돈과 육성돈에 대하여도 검사하여 도축장 조기 출하조치
 - 항체양성 모돈 등을 도태 권고기간 내 도축장 출하시 도태장려금 지급조치
- 진단키트 구입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③ 뉴캐슬병 근절사업

■ 추진개요

- 방역 우선 순위 및 예방약 공급

- 예방접종(예방약 공급) : ①부화장 → ②육계농장(검용계)백세미>기타)
 - ③산란계농장(중추>산란계) → ④종계농장
- 예방접종 확인 : ①도축장 → ②부화장 → ③중추농장 → ④육계농장 → ⑤기타농장
 - 주변농장 발생 시 추가접종(육계의 경우 3차 접종 등)에 소요되는 예방약은 농가자율에 따라 자부담으로 실시
- 방역주체별 역할분담 추진
 - 예방약 공급, 도축장 점검 및 혈청검사 등 : 정부 방역기관 중심 실시
 - 농장·도축장 채혈, 소독, 교육홍보 등 : 민간방역단체 중심실시
- 유통단계별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및 도계 시 예방접종확인서 제출
 - 1차 접종확인서는 부화장 영업자가 병아리 분양 시 발급
 - 2차 이후 접종확인서는 농장주가 닭 출하 시 접종관리대장의 기록에 의거 발급
 - 혈청검사는 육계의 경우 닭 도축장 중점, 기타 종계·산란계는 농장 중점 실시
- 예방접종 여부 확인검사 결과에 따른 철저한 과태료 조치
 -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뉴캐슬병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닭도축장 등 혈청검사 추진 및 농장점검

- 농장(산란계) 시료채취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닭도축장(육계) 시료채취는 해당 도축장 검사관이 실시하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 의뢰
 - 시료채취 물량 : 연간 279천수
 - 닭도축장(육계) : 227천수(출하농가당 30수 이상)
 - 농 장(산란계) : 52천수(계군별 20~30수이상, 연 1회 실시)
 - ※ 검사시료 채취기준 : 계군규모 10천수 미만 - 계군당 20수 이상
계군규모 10천수 이상 - 계군당 30수 이상
- 검사방법 : 육계는 ELISA, 산란계는 HI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
 - ※ 뉴캐슬병 예방접종 미실시 사유자에 대한 처벌 등의 적용은 “뉴캐슬병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름

〈 시·도별 진단액 및 실시재료비 지원 〉

① 진단액 구입비(CSF, ND·AI·IB·EDS)

- CSF : 1,500원/두, ND(HI) : 373원/수, ND(ELISA) : 1,763원/수

- IB(HI) : 1,220원/수, IB(ELISA) : 1,763원/수, EDS(HI) : 494원/수

※ i) ND·IB·EDS 진단액을 제외한 진단액은 검역본부에서 생산(구입)하여 시·도별 배정계획에 의거 공급

ii) CSF 항체검사중 도축장 예찰물량 75,942두분의 진단키트는 시·도에서 직접 구입

② 바이러스검사 재료비(ND·AI 바이러스검사용 SPF종란 구입비)

- 4시료 × 5개종란 × 1,800원 = 36천원/건

③ 실시재료비 : 혈청검사·병성감정 : 200원/건

④ 혈청검사·병성감정 사업비 : 1,018,803천원(시·도 검사물량에 한함)

- ND(HI) : 51,600건 × 373원 = 19,247천원

- ND(ELISA) : 226,652건 × 1,763원 = 399,587천원

- IB(HI) : 200건 × 1,220원 = 244천원

- IB(ELISA) : 9,500건 × 1,763원 = 16,749천원

- EDS(HI) : 600건 × 494원 = 296천원

- ND·AI 바이러스 : 1,380건 × 36,000원 = 49,680천원

- 혈청검사·병성감정 실시재료비 : 2,095,435건 × 200원 = 419,087천원

- CSF(항체) : 75,942건 × 1,500원 = 113,913천원(시·도 도축장 예찰물량에 한함)

〈 가축혈청검사·병성감정 실시요령 〉

① 사업시행기관 및 임무

i) 농림축산검역본부

- 진단액 등 생산 및 기술지도
-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로 양축농가 지도
- 가축질병 예찰을 통한 정부 방역정책 수립 반영

ii)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결과를 양축농가에 통보하여 방역 서비스 지원
- 시도 가축질병 예찰업무 활용

iii) 병성감정 지정기관(수의과대학, 민간연구소)

-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결과를 의뢰인(양축농가 등)에게 통보, 방역지도
- 법정가축전염병 진단시 방역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

iv)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농장 시료를 채취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 송부
- 시료채취대상 :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소결핵·브루셀라병, 및 림프스킨병 뉴캐슬병

② 검사결과 조치사항

- 혈청검사 성적을 조사 분석하여 면역수준, 예방접종 실시여부, 접종방법의 개선 등 방역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방역본부 및 해당농가에 즉시 통보하여 농가의 자율방역에 활용토록 할 것

※ 돼지열병 항원검사 결과 양성 및 의양성으로 판정시에는 즉시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에 보고 (통보)하고, 돼지열병 항체검사서에서 음성인 농장(제주도 제외)에 대하여는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추적 조사하여 과태료 처분

- 도축장에서 시료채취한 혈청검사와 관련, 해당 가축의 출하농장이 타 시·도일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당 시도는 방역관리 지도 및 예찰자료로 활용)
- 타 시·도로부터 출하가축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는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③ 기타 사항

- 시·도지사는 우수 종돈·종계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진단액을 미리 검역본부에 요구하여 배정을 받을 것
- 시·도 소속 가축방역기관(시험소)별로 혈청검사 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진단기술 배양 및 전문화 유도
- 검역본부장은 진단액을 이용한 검사 실시·진단·판정방법, 농가지도 요령 및 보고양식을 표준화하고, 시도 및 병성감정기관은 표준화된 진단법에 따라 검사
-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물량 증가로 추가 필요 진단액이 보유분(검역본부) 이상인 경우, 시도에서 직접 구매 사용
- 질병발생 및 진단액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시 진단액별 생산량 조정(검역본부)

④ 보고

- 검사기관(시·도 소속 가축방역기관 및 병성감정지정기관) 및 검역본부 해당과에서는 국가 가축방역용으로 제공된 진단액 사용실적 및 수급사항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 검사실적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수시로 입력하고, 검사실적은 월별로 확정
- 검역본부(역학조사과)은 매분기별 검사성적서를 종합하고 전국적인 질병발생 동향을 분석하여 동 내용을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별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검사물량 및 실시재료비 배정 〉

(단위 : 마리, 천원)

시도	사 업 량								사업비	
	소		돼 지		가금류		기타		사업량 계	실 시 재료비 (국비)
	혈청 검사	병성 감정	혈청 검사	병성 감정	혈청 검사	병성 감정	혈청 검사	병성 감정		
	9품목	10품목	5품목	24품목	9품목	14품목	11품목	23품목		
서울	530	292	-	150	-	1,098	160	1,300	3,530	36,706
부산	580	350	667	1,060	900	796	908	170	5,431	1,258
대구	630	732	3,985	2,304	6,650	2,884	11,573	460	29,218	25,016
인천	880	690	1,826	1,360	6,020	746	5,168	100	16,790	13,668
광주	100	590	1,862	1,180	450	446	1,854	300	6,782	3,425
대전	630	590	1,324	910	300	248	2,364	610	6,976	2,988
울산	480	782	1,120	660	1,880	1,298	6,048	150	12,418	3,408
세종	630	782	2,122	900	2,850	1,218	7,336	150	15,988	4,574
경기	4,800	3,650	57,915	8,076	56,330	12,686	184,314	1,300	329,071	156,609
강원	6,740	7,184	17,989	8,162	11,230	1,810	65,450	2,900	121,465	41,243
충북	2,570	500	29,336	3,880	34,690	960	75,022	-	146,958	97,531
충남	4,060	5,960	59,003	8,964	43,990	5,556	191,346	2,400	321,279	141,828
전북	6,860	7,274	41,912	8,886	85,920	934	129,902	3,250	284,938	192,924
전남	6,900	5,460	37,834	8,324	24,760	4,500	144,506	1,860	234,144	84,687
경북	4,420	2,560	44,806	10,054	30,990	7,030	173,726	2,250	275,836	98,972
경남	7,180	5,342	46,677	19,042	18,702	7,736	107,600	3,450	215,729	88,391
제주	730	650	16,434	4,250	6,090	146	40,282	300	68,882	25,575
계	48,720	43,388	364,812	88,162	331,752	50,092	1,147,559	20,950	2,095,435	1,018,803
검역본부	12,880	24,494	22,812	30,102	171,400	19,668	39,068	58,560	378,984	-
지정기관	-	-	-	17,080	21,900	17,008	100,000	400	156,388	-
총계	61,600	67,882	387,624	135,344	525,052	86,768	1,286,627	79,910	2,630,807	1,018,803

〈 축종별 혈청검사·병성감정 물량 〉

● 소

(단위 : 마리)

구분	혈 청 검 사									
	아카바네	유행열	이바라기	츄잔병	아이노	소류코시스 AGP	소류코시스 ELISA	브루셀라병 Tube	브루셀라병 I-ELISA	소계
시 · 도	서울	-	-	-	-	-	-	50	480	530
	부산	-	-	-	-	-	-	100	480	580
	대구	-	-	-	-	100	-	50	480	630
	인천	-	-	-	-	200	-	200	480	880
	광주	-	-	-	-	100	-	-	-	100
	대전	-	-	-	-	100	-	50	480	630
	울산	-	-	-	-	-	-	-	480	480
	세종	-	-	-	-	100	-	50	480	630
	경기	-	-	-	-	1,000	-	1,400	2,400	4,800
	강원	-	-	-	-	1,300	-	4,000	1,440	6,740
	충북	-	-	-	-	400	-	250	1,920	2,570
	충남	-	-	-	-	400	-	300	3,360	4,060
	전북	-	-	-	-	500	-	3,000	3,360	6,860
	전남	-	-	-	-	1,000	-	3,500	2,400	6,900
	경북	-	-	-	-	1,000	-	1,500	1,920	4,420
	경남	-	-	-	-	1,500	-	2,800	2,880	7,180
	제주	-	-	-	-	200	-	50	480	730
	소계	-	-	-	-	7,900	-	17,300	23,520	48,720
검역본부	1,000	1,000	1,000	1,000	1,000	2,500	2,000	500	2,880	12,880
지정기관	-	-	-	-	-	-	-	-	-	-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400	2,000	17,800	26,400	61,600

※ 아카바네, 유행열, 이바라기, 츄잔병, 아이노 혈청검사 : 검역본부의 봄, 가을 시료채취 계획에 의거 시험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송부 (검역본부에서 검사 실시)

구분		병 성 감 정								계	
		바이러스성 설사병 3종	요네병 ELISA	네오 스포라 ELISA	브루 셀라병 유전자 키트	우결핵 유전자 키트	탄저 유전자 키트	기종저 유전자 키트	크립토 스포리디움 항원 ELISA		소계
시 · 도	서울	-	-	192	-	100	-	-	-	292	822
	부산	150	-	-	-	100	50	50	-	350	930
	대구	150	240	192	-	50	50	50	-	732	1,362
	인천	300	240	-	-	50	50	50	-	690	1,570
	광주	150	240	-	-	100	50	50	-	590	690
	대전	150	240	-	-	100	50	50	-	590	1,220
	울산	150	240	192	-	100	50	50	-	782	1,262
	세종	150	240	192	-	100	50	50	-	782	1,412
	경기	750	2,400	-	-	-	250	250	-	3,650	8,450
	강원	3,600	2,400	384	-	300	250	250	-	7,184	13,924
	충북	300	-	-	-	100	50	50	-	500	3,070
	충남	3,150	2,160	-	-	500	50	100	-	5,960	10,020
	전북	2,400	3,840	384	-	400	50	200	-	7,274	14,134
	전남	3,000	2,160	-	-	100	100	100	-	5,460	12,360
	경북	-	2,160	-	-	100	100	200	-	2,560	6,980
	경남	2,550	1,200	192	-	300	500	600	-	5,342	12,522
	제주	450	-	-	-	100	50	50	-	650	1,380
	소계		17,400	17,760	1,728	-	2,600	1,750	2,150	-	43,388
검역본부		6,750	9,340	3,112	1,500	2,300	600	700	192	24,494	37,374
지정기관		-	-	-	-	-	-	-	-	-	-
총 계		24,150	27,100	4,840	1,500	4,900	2,350	2,850	192	67,882	129,482

● 돼지

(단위 : 마리)

구분	혈청검사						병 성 감 정											
	일본 뇌염 HI	일본 뇌염 ELISA	돼지 열병 항체	돼지 열병 항원	돼지 브루 셀라 C-ELISA	소계	독소 플라 즈마 ELISA	오제 스키 감별 진단	뇌심 근염 HI	돼지 파보 HI	돼지 열병 FA	PRRS IFA	PRRS ELISA	TGE MCA	PED MCA	로타 MCA	PRRS MCA	SI MCA
시·도	서울	-	-	-	-	-	-	-	-	-	-	-	-	-	-	-	-	-
	부산	-	384	200	83	667	-	-	-	-	-	-	460	-	-	-	-	-
	대구	-	384	2,494	723	3,845	384	-	-	-	-	-	920	-	-	-	-	-
	인천	-	192	1,504	130	1,826	-	-	100	100	-	-	460	-	-	-	-	-
	광주	-	384	1,408	70	1,862	-	-	-	-	-	-	460	-	-	-	-	-
	대전	-	192	1,112	20	1,324	-	-	-	-	-	-	460	-	-	-	-	-
	울산	-	192	818	110	1,120	-	-	-	-	-	-	460	-	-	-	-	-
	세종	-	100	1,342	580	100	2,122	100	-	200	-	-	100	-	-	-	-	-
	경기	-	960	41,006	14,029	1,920	57,915	576	-	300	-	-	4,600	-	-	-	-	-
	강원	-	960	10,246	4,863	1,920	17,989	192	-	100	100	-	5,520	-	-	-	-	-
	충북	-	576	21,838	5,386	1,536	29,336	-	-	-	-	-	3,680	-	-	-	-	-
	충남	-	384	39,544	15,235	3,840	59,003	384	-	400	-	-	5,280	-	-	-	-	-
	전북	-	768	27,878	10,194	3,072	41,912	576	-	-	-	-	5,060	-	-	-	-	-
	전남	500	384	23,458	10,804	2,688	37,834	384	-	-	-	-	6,440	-	-	-	-	-
	경북	-	384	27,644	12,170	4,608	44,806	384	-	200	-	-	5,520	-	-	-	-	-
	경남	300	960	29,566	12,395	3,456	46,677	576	-	200	300	100	96	7,820	50	50	50	50
	제주	-	960	10,838	3,676	960	16,434	-	-	-	-	-	-	-	-	-	-	-
	소계	800	8,164	240,896	90,468	24,484	364,812	3,556	-	400	1,600	100	96	47,240	50	50	50	50
검역본부	700	1,536	10,000	10,000	576	22,812	3,264	570	1,400	1,400	1,350	288	3,680	700	1,100	350	150	600
지정기관	-	-	-	-	-	-	-	-	-	-	-	-	17,080	-	-	-	-	-
총 계	1,500	9,700	250,896	100,468	25,060	387,624	6,820	570	1,800	3,000	1,450	384	68,000	750	1,150	400	200	650

구분		병 성 감 정													계
		써코 MCA	오제 스키 MCA	돼지 파보 유전자	오제 스키 유전자	일본 뇌염 유전자	뇌심근 염 유전자	PRRS 유전자	TGE 유전자	PED 유전자	돼지 써코 유전자	SI 유전자	인플루엔자 유전형 감별키트	소계	
시 · 도	서울	-	-	-	-	-	-	50	50	50	-	-	-	150	150
	부산	-	-	50	50	50	50	100	100	100	100	-	-	1,060	1,727
	대구	-	-	100	100	100	100	200	100	100	100	100	-	2,304	6,289
	인천	-	-	100	100	100	100	100	50	50	100	-	-	1,360	3,186
	광주	-	-	80	80	80	80	80	80	80	80	80	-	1,180	3,042
	대전	-	-	50	50	50	50	50	50	50	50	50	-	910	2,234
	울산	-	-	-	-	-	-	50	50	50	50	-	-	660	1,780
	세종	-	-	50	50	50	50	100	50	50	100	-	-	900	3,022
	경기	-	-	150	150	150	150	750	250	250	350	400	-	8,076	65,991
	강원	-	-	100	100	100	100	1,100	250	250	250	-	-	8,162	26,151
	충북	-	-	-	-	-	-	100	50	50	-	-	-	3,880	33,216
	충남	-	-	50	-	100	-	1,800	300	300	300	50	-	8,964	67,967
	전북	-	-	200	200	200	200	200	1,000	1,000	200	50	-	8,886	50,798
	전남	-	-	50	50	50	50	800	200	200	50	50	-	8,324	46,158
	경북	-	-	200	200	200	200	2,400	250	250	250	-	-	10,054	54,860
	경남	50	50	250	250	300	300	6,300	600	600	900	100	-	19,042	65,719
	제주	-	-	50	50	50	50	1,000	1,000	1,000	1,000	50	-	4,250	20,684
	소계	50	50	1,480	1,430	1,580	1,480	15,180	4,430	4,430	3,880	930	-	88,162	452,974
검역본부		200	450	1,000	1,000	1,000	1,000	3,100	1,050	1,050	1,400	3,000	1,000	30,102	52,914
지정기관		-	-	-	-	-	-	-	-	-	-	-	-	17,080	17,080
총 계		250	500	2,480	2,430	2,580	2,480	18,280	5,480	5,480	5,280	3,930	1,000	135,344	522,968

● 가금류

(단위 : 마리)

구분	혈 청 검 사										병 성 감 정	
	ND HI	ND ELISA	AI HI(H9)	AI HI(H5)	AI HI(H7)	AI C-ELISA	MG ELISA	추백리 가금티푸스 Plate	추백리 가금티푸스 ELISA	소 계	AI 유전자 rRT-PCR	AI 유전자 multi-tube
시 도	서울	-	-	-	-	-	-	-	-	-	-	-
	부산	-	-	300	300	300	-	-	-	900	-	-
	대구	450	5,000	400	400	400	-	-	-	6,650	-	-
	인천	320	4,800	300	300	300	-	-	-	6,020	-	-
	광주	150	-	100	100	100	-	-	-	450	-	-
	대전	-	-	100	100	100	-	-	-	300	-	-
	울산	380	-	500	500	500	-	-	-	1,880	-	-
	세종	1,250	-	400	600	600	-	-	-	2,850	-	-
	경기	11,530	34,000	2,800	4,000	4,000	-	-	-	56,330	-	-
	강원	3,230	6,000	1,000	500	500	-	-	-	11,230	-	-
	충북	5,190	27,000	500	1,000	1,000	-	-	-	34,690	-	-
	충남	6,090	35,100	400	1,200	1,200	-	-	-	43,990	-	-
	전북	3,920	67,000	5,000	5,000	5,000	-	-	-	85,920	-	-
	전남	5,360	15,500	1,300	1,300	1,300	-	-	-	24,760	-	-
	경북	6,990	16,000	1,000	3,500	3,500	-	-	-	30,990	-	-
	경남	4,850	13,252	200	200	200	-	-	-	18,702	-	-
	제주	1,890	3,000	200	500	500	-	-	-	6,090	-	-
	소 계	51,600	226,652	14,500	19,500	19,500	-	-	-	331,752	-	-
검역본부	5,000	-	52,000	52,000	52,000	4,800	3,220	1,000	1,380	171,400	2,976	372
지정기관	6,700	-	11,400	1,900	1,900	-	-	-	-	21,900	-	-
총 계	63,300	226,652	77,900	73,400	73,400	4,800	3,220	1,000	1,380	525,052	2,976	372

구분	병 성 감 정													계
	IB HI	IB ELISA	EDS HI	닭 전염성 F낭병 AGP	닭 전염성 F낭병 ELISA	MS Plate	MS ELISA	MG Plate	AI 신속 진단	ND 항원 진단 키트	가금 티푸스 감별	바이러스 (ND, AI)	소 계	
시 도	서울	-	-	-	-	-	-	-	-	48	50	1,000	1,098	1,098
	부산	100	-	100	200	-	100	-	100	-	96	100	796	1,696
	대구	-	920	200	-	920	200	-	200	-	144	100	200	9,534
	인천	-	-	-	200	-	200	-	200	-	96	50	-	6,766
	광주	-	100	-	-	-	100	-	100	-	96	50	-	896
	대전	-	-	-	200	-	-	-	-	48	-	-	248	548
	울산	-	-	-	400	-	400	-	400	-	48	50	-	3,178
	세종	-	460	200	-	460	-	-	-	48	50	-	1,218	4,068
	경기	-	4,800	-	-	4,800	2,500	-	-	-	336	250	-	69,016
	강원	100	460	100	200	460	100	-	100	-	240	50	-	13,040
	충북	-	-	-	-	-	-	-	-	960	-	-	960	35,650
	충남	-	-	-	-	2,880	1,000	-	1,000	-	576	100	-	49,546
	전북	-	-	-	-	-	-	-	-	384	500	50	934	86,854
	전남	-	-	-	-	480	1,000	-	1,000	-	1,920	100	-	29,260
	경북	-	1,380	-	-	920	2,000	-	2,000	-	480	250	-	38,020
	경남	-	1,380	-	600	4,160	200	-	200	-	816	250	130	26,438
	제주	-	-	-	-	-	-	-	-	96	50	-	146	6,236
	소 계	200	9,500	600	1,800	15,080	7,800	-	5,300	-	6,432	2,000	1,380	381,844
검역본부	300	2,300	200	200	1,380	3,000	2,300	3,000	990	2,400	250	-	19,668	191,068
지정기관	3,300	3,680	1,400	1,000	4,140	1,400	-	1,400	-	288	400	-	17,008	38,908
총 계	3,800	15,480	2,200	3,000	20,600	12,200	2,300	9,700	990	9,120	2,650	1,380	86,768	611,820

● 기 타

(단위 : 마리)

구분		혈 청 검 사											병 성 감 정							계	
		구제역 SP 항체 검사	구제역 NSP 항체 검사	구제역 3종 혈청형 판별	구제역 항원 검사 ELISA	구제역 항원 검사 PCR	TSE ELISA	광견병 (소·개) 혈청 검사	개브루 셀라병 진단액 (2-me RSAT)	ASF 야생 멧돼지 유전자, 항체)	브루 셀라 병 FPA	LSD 항체 진단 키트	소계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 16종	개 브루 셀라 진단 키트	광견병 (소·개 너구리) FA	큐열 항체 진단 ELISA	꿀벌 전염병 3종 PCR	LSD 유전자 진단키 트		소계
시 · 도	서울	-	-	10	-	-	-	-	150	-	-	-	160	-	50	50	-	1,200	-	1,300	1,460
	부산	419	439	-	-	-	-	-	50	-	-	-	908	-	20	-	-	150	-	170	1,078
	대구	5,775	5,778	20	-	-	-	-	-	-	-	-	11,573	-	10	-	-	450	-	460	12,033
	인천	2,484	2,684	-	-	-	-	-	-	-	-	-	5,168	-	-	-	-	100	-	100	5,268
	광주	922	922	10	-	-	-	-	-	-	-	-	1,854	-	-	-	-	300	-	300	2,154
	대전	1,152	1,152	10	-	-	-	-	50	-	-	-	2,364	-	10	-	-	600	-	610	2,974
	울산	2,999	3,049	-	-	-	-	-	-	-	-	-	6,048	-	-	-	-	150	-	150	6,198
	세종	3,517	3,617	10	-	192	-	-	-	-	-	-	7,336	-	-	-	-	150	-	150	7,486
	경기	88,614	91,548	120	-	4,032	-	-	-	-	-	-	184,314	-	300	250	-	750	-	1,300	185,614
	강원	31,038	33,928	50	-	384	-	-	50	-	-	-	65,450	-	300	-	-	2,600	-	2,900	68,350
	충북	36,567	37,157	50	-	1,248	-	-	-	-	-	-	75,022	-	-	-	-	-	-	-	75,022
	충남	92,720	97,990	60	-	576	-	-	-	-	-	-	191,346	-	-	-	-	2,400	-	2,400	193,746
	전북	62,667	66,847	50	-	288	-	-	50	-	-	-	129,902	-	50	-	-	3,200	-	3,250	133,152
	전남	69,512	73,692	100	-	1,152	-	-	50	-	-	-	144,506	-	10	50	-	1,800	-	1,860	146,366
	경북	83,808	87,948	50	-	1,920	-	-	-	-	-	-	173,726	-	-	-	-	2,250	-	2,250	175,976
	경남	52,753	53,933	50	-	864	-	-	-	-	-	-	107,600	-	-	-	-	3,450	-	3,450	111,050
	제주	18,719	19,447	100	-	2,016	-	-	-	-	-	-	40,282	-	-	-	-	300	-	300	40,582
		소계	553,666	580,131	690	-	12,672	-	-	400	-	-	-	1,147,559	-	750	350	-	19,850	-	20,950
검역본부		2,668	1,550	1,200	1,200	20,000	750	1,000	1,700	2,000	2,000	5,000	39,068	32,300	800	1,000	960	13,500	10,000	58,560	97,628
지정기관		100,000	-	-	-	-	-	-	-	-	-	-	100,000	-	-	-	-	400	-	400	100,400
총 계		656,334	581,681	1,890	1,200	32,672	750	1,000	2,100	2,000	2,000	5,000	1,286,627	32,300	1,550	1,350	960	33,750	10,000	79,910	1,366,537

〈2024년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용 진단액 생산(구입)·배정 계획〉

(단위 : 마리)

축종	구분	진단액명	총소요량	배정기관			비고
				시도	검역본부	진단기관	
소	혈청	소아카바네병	1,000	-	1,000	-	
		소유행열	1,000	-	1,000	-	
		이바라기	1,000	-	1,000	-	
		추잔병	1,000	-	1,000	-	
		아이노	1,000	-	1,000	-	
		소류코시스 AGP	10,400	7,900	2,500	-	
		소류코시스 ELISA kit	2,000	-	2,000	-	
		브루셀라병 TUBE	17,800	17,300	500	-	
		브루셀라병 I-ELISA	26,400	23,520	2,880	-	
	병성 감정 · 검역	바이러스설사병 유전자진단 키트	8,050	5,800	2,250	-	
		코로나바이러스설사병 유전자진단 키트	8,050	5,800	2,250	-	
		로타바이러스 유전자진단 키트	8,050	5,800	2,250	-	
		요네병 ELISA	27,100	17,760	9,340	-	
		네오스포라 ELISA	4,840	1,728	3,112	-	
		브루셀라병 유전자키트	1,500	-	1,500	-	
		우결핵병 유전자 키트	4,900	2,600	2,300	-	
		탄저 유전자 키트	2,350	1,750	600	-	
		기종저 유전자 키트	2,850	2,150	700	-	
		크립토포리디움 항원 ELISA	192	-	192	-	

축종	구분	진단액명	총소요량	배정기관			비고
				시도	검역본부	진단기관	
돼지	혈청 검사	돼지일본뇌염 HI	1,500	800	700	-	
		돼지일본뇌염 ELISA 키트	9,700	8,164	1,536	-	
		돼지열병 항체검사 ELISA	250,896	240,896*	10,000	-	
		돼지열병 항원검사 ELISA PCR 등	100,468	90,468	10,000	-	
		돼지브루셀라병 C - ELISA(항체)	25,060	24,484	576	-	
	병성 감정	톡소플라즈마 ELISA	6,820	3,556	3,264	-	
		돼지오제스키병 감별진단 Kit	570	-	570	-	
		돼지뇌심근염바이러스감염증 HI	1,800	400	1,400	-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HI	3,000	1,600	1,400	-	
		돼지열병 형광항체	1,450	100	1,350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IFA Kit	384	96	288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ELISA Kit	68,000	47,240	3,680	17,080	
		돼지전염성위장염 MCA	750	50	700	-	
		돼지유행성설사 MCA	1,150	50	1,100	-	
		돼지로타바이러스감염증 MCA	400	50	350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MCA	200	50	150	-	
		돼지인플루엔자 MCA	650	50	600	-	
		돼지췌코바이러스 MCA	250	50	200	-	
		돼지오제스키바이러스 MCA	500	50	450	-	
		돼지파보 유전자키트	2,480	1,480	1,000	-	
		돼지오제스키 유전자키트	2,430	1,430	1,000	-	
		돼지일본뇌염 유전자키트	2,580	1,580	1,000	-	
		뇌심근염 유전자키트	2,480	1,480	1,000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유전자키트	18,280	15,180	3,100	-	
		돼지전염성위장염 유전자키트	5,480	4,430	1,050	-	
		돼지유행성설사 유전자키트	5,480	4,430	1,050	-	
		돼지췌코 유전자 키트	5,280	3,880	1,400	-	
		돼지인플루엔자 유전자 키트	3,930	930	3,000	-	
		돼지인플루엔자 유전형감별 키트	1,000	-	1,000	-	

축종	구분	진단액명	총소요량	배정기관			비고
				시도	검역본부	진단기관	
닭	혈청 검사	뉴캐슬병 HI	63,300	51,600*	5,000	6,700	
		뉴캐슬병 ELISA	226,652	226,652*	-	-	
		조류인플루엔자 HI(H9형)	77,900	14,500	52,000	11,400	
		조류인플루엔자 HI(H5형)	73,400	19,500	52,000	1,900	
		조류인플루엔자 HI(H7형)	73,400	19,500	52,000	1,900	
		조류인플루엔자 C-ELISA	4,800	-	4,800	-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 ELISA	3,220	-	3,220	-	
		추백리·가금티푸스 PLATE	1,000	-	1,000	-	
		추백리·가금티푸스 ELISA	1,380	-	1,380	-	
	병성 감정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진단키트(rRT-PCR)	2,976	-	2,976	-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진단키트(AIV_Multi-tube)	372	-	372	-	
		닭전염성기관지염 HI	3,800	200*	300	3,300	
		닭전염성기관지염 ELISA	15,480	9,500*	2,300	3,680	
		산란저하증후군 HI	2,200	600*	200	1,400	
		닭전염성F낭병 AGP	3,000	1,800	200	1,000	
		닭전염성F낭병 ELISA	20,600	15,080	1,380	4,140	
		닭마이코플라즈마병(MS) PLATE	12,200	7,800	3,000	1,400	
		닭마이코플라즈마병(MS) ELISA	2,300	-	2,300	-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 PLATE	9,700	5,300	3,000	1,400	
		조류인플루엔자 신속진단키트	990	-	990	-	
		뉴캐슬병 항원검사 진단키트	9,120	6,432	2,400	288	
		가금티푸스 감별 동정 키트	2,650	2,000	250	400	
		ND, AI 바이러스검사	1,380	1,380*	-	-	

축종	구분	진단액명	총소요량	배정기관			비고	
				시도	검역본부	진단기관		
혈청 검사		구제역 혈청 SP항체 검사(소, 돼지, 염소)	560,000	557,200**	2,800	-		
		구제역 혈청 NSP항체 검사(소, 돼지, 염소)	584,850	583,100**	1,750	-		
		구제역 3종 혈청형 판별 신속진단키트	1,890	690	1,200	-		
		구제역 항원검사 ELISA	1,200	-	1,200	-		
		구제역 항원검사 PCR	32,672	12,672	20,000	-		
		전염성해면상뇌증 ELISA	750	-	750	-		
		광견병(소, 개) 혈청검사	1,000	-	1,000	-		
		개브루셀라병 진단액(2-me RSAT)	2,100	400	1,700	-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멧돼지(유전자, 항체)	2,000	-	2,000	-		
		브루셀라병 FPA	2,000	-	2,000	-		
		럼피스킨병 항체진단키트	5,000	-	5,000	-		
기타	병성 감정 · 검역	수포성구내염 ELISA(말)	1,500	-	1,500	-		
		일본뇌염 항체검사(말)	1,500	-	1,500	-		
		말바이러스동맥염 항체검사(말)	1,500	-	1,500	-		
		아프리카마역 항체진단키트(말)	1,500	-	1,500	-		
		아프리카마역 유전자 검사(말)	1,500	-	1,500	-		
		말전염성 빈혈 검사(ELISA 키트 등)(말)	1,500	-	1,500	-		
		말인플루엔자 항체검사	1,500	-	1,500	-		
		개브루셀라병 진단키트	1,550	750	800	-		
		광견병(소, 개, 너구리 등)형광항체	1,350	350	1,000	-		
		큐열 항체진단 ELISA	960	-	960	-		
		블루팅병 항체진단키트	2,500	-	2,500	-		
		우폐역 항체진단키트	800	-	800	-		
		리프트계곡열 항체진단키트	2,500	-	2,500	-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체진단키트	5,000	-	5,000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사	4,600	-	4,600	-		
		웨스트나일열 항체진단키트	1,500	-	1,500	-		
		가성우역 진단키트	3,000	-	3,000	-		
		돼지수포병 진단키트	1,800	-	1,800	-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등 7종 실시간 유전자키트	11,550	7,050	4,500	-		
		꿀벌 부저병 등 3종 실시간 유전자키트	11,100	6,400	4,500	200		
		꿀벌 석고병 등 4종 실시간 유전자키트	11,100	6,400	4,500	200		
		럼피스킨병 유전자 진단키트	10,000	-	10,000	-		
		말전염성자궁염 유전자 확진검사	100	-	100	-		
		계		2,540,090	2,104,386	379,316	56,388	

* ND, IB, EDS 등 5종 288,552 수분, ND·AI 바이러스 검사 1,380수분 및 돼지열병 항체 검사 75,942마리분은 시·도에서 직접 구입

** (구제역) SP항체검사 시도 배정분(557,200마리분)중 440,650마리분, NSP항체검사 시도 배정분(583,100마리분)중 460,250마리분 배정계획 수립, 추후 부족분은 예산확보후 배정예정

〈검역본부 (생산·구매) 공급 진단액 배정시기〉

(단위 : 마리분)

축종	구분	진단액명	총생산량	배정시기(월)						비고
				3	4	5	7	9	10	
소	혈청	소아카바네병	1,000	.	.	.	1,000	.	.	모니 터링 혈청 검사
		소유행열	1,000	.	.	.	1,000	.	.	
		이바라기	1,000	.	.	.	1,000	.	.	
		췌장병	1,000	.	.	.	1,000	.	.	
		아이노	1,000	.	.	.	1,000	.	.	
		소류코시스 AGP	10,400	10,400	.	.	.	.	.	
		소류코시스 ELISA kit	2,000	2,000	.	.	.	.	.	
		브루셀라병 TUBE	17,800	17,800	.	.	.	.	.	
		브루셀라병 I-ELISA	26,400	26,400	.	.	.	.	.	
	병성 감정 · 검역	바이러스설사병 유전자진단 키트	8,050	8,050	.	.	.	.	.	
		코로나바이러스설사병 유전자진단 키트	8,050	8,050	.	.	.	.	.	
		로타바이러스 유전자진단 키트	8,050	8,050	.	.	.	.	.	
		요네병 ELISA	27,100	.	.	27,100	.	.	.	
		네오스포라 ELISA	4,840	.	.	4,840	.	.	.	
		브루셀라병 유전자키트	1,500	.	.	1,500	.	.	.	
		우결핵병 유전자 키트	4,900	.	.	4,900	.	.	.	
		탄저 유전자 키트	2,350	.	.	2,350	.	.	.	
		기종저 유전자 키트	2,850	.	.	2,850	.	.	.	
		크립토스포리디움 항원 ELISA	192	.	.	192	.	.	.	

축종	구분	진단액명	총생산량	배정시기(월)						비고
				3	4	5	7	9	10	
돼지	혈청 검사	돼지일본뇌염 HI	1,500	1,500	.	.	.	.	.	
		돼지일본뇌염 ELISA 키트	9,700	.	.	9,700	.	.	.	
		돼지열병 항체검사 ELISA	174,954	174,954	.	.	.	.	.	
		돼지열병 항원검사 ELISA PCR 등	100,468	100,468	.	.	.	.	.	
		돼지브루셀라병 C - ELISA(항체)	25,060	.	.	25,060	.	.	.	
	병성 감정	톡소플라즈마 ELISA	6,820	.	.	6,820	.	.	.	
		돼지오제스키병 감별진단 Kit	570	570	.	.	.	.	.	
		돼지뇌심근염바이러스감염증 HI	1,800	1,800	.	.	.	.	.	
		돼지파코바이러스감염증 HI	3,000	3,000	.	.	.	.	.	
		돼지열병 형광항체	1,450	1,450	.	.	.	.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IFA Kit	384	384	.	.	.	.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ELISA Kit	68,000	68,000	.	.	.	.	.	
		돼지전염성위장염 MCA	750	750	.	.	.	.	.	
		돼지유행성설사 MCA	1,150	1,150	.	.	.	.	.	
		돼지로타바이러스감염증 MCA	400	400	.	.	.	.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MCA	200	200	.	.	.	.	.	
		돼지인플루엔자 MCA	650	650	.	.	.	.	.	
		돼지썩코바이러스 MCA	250	250	.	.	.	.	.	
		돼지오제스키바이러스 MCA	500	500	.	.	.	.	.	
		돼지파코 유전자키트	2,480	2,480	.	.	.	.	.	
		돼지오제스키 유전자키트	2,430	2,430	.	.	.	.	.	
		돼지일본뇌염 유전자키트	2,580	2,580	.	.	.	.	.	
		뇌심근염 유전자키트	2,480	2,480	.	.	.	.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유전자키트	18,280	18,280	.	.	.	.	.	
		돼지전염성위장염 유전자키트	5,480	5,480	.	.	.	.	.	
		돼지유행성설사 유전자키트	5,480	5,480	.	.	.	.	.	
		돼지썩코 유전자 키트	5,280	5,280	.	.	.	.	.	
		돼지인플루엔자 유전자 키트	3,930	3,930	.	.	.	.	.	
		돼지인플루엔자 유전형 감별 키트	1,000	1,000	.	.	.	.	.	

축종	구분	진단액명	총생산량	배정시기(월)						비고
				3	4	5	7	9	10	
닭	혈청 검사	뉴캐슬병 HI	11,700	.	.	11,700	.	.	.	
		조류인플루엔자 HI(H9형)	77,900	.	.	.	.	77,900	.	
		조류인플루엔자 HI(H5형)	73,400	.	.	.	.	73,400	.	
		조류인플루엔자 HI(H7형)	73,400	.	.	.	.	73,400	.	
		조류인플루엔자 C-ELISA	4,800	4,800	.	.	.	.	.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 ELISA	3,220	3,220	.	.	.	.	.	
		추백리·가금티푸스 PLATE	1,000	.	.	1,000	.	.	.	
		추백리·가금티푸스 ELISA	1,380	.	.	1,380	.	.	.	
	병성 감정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진단키트(rRT_PCR)	2,976	.	.	2,976	.	.	.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진단키트(AIV_Multi-tube)	372	.	.	372	.	.	.	
		닭전염성기관지염 HI	3,600	.	.	3,600	.	.	.	
		닭전염성기관지염 ELISA	5,980	.	.	5,980	.	.	.	
		산란저하증후군 HI	1,600	.	.	1,600	.	.	.	
		닭전염성F낭병 AGP	3,000	.	.	3,000	.	.	.	
		닭전염성F낭병 ELISA	20,600	.	.	20,600	.	.	.	
		닭마이코플라즈마병(MS) PLATE	12,200	.	12,200	.	.	.	.	
		닭마이코플라즈마병(MS) ELISA	2,300	.	.	2,300	.	.	.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 PLATE	9,700	.	9,700	.	.	.	.	
		조류인플루엔자 신속진단키트	990	.	.	990	.	.	.	
		뉴캐슬병 항원검사 진단키트	9,120	9,120	.	.	.	.	.	
		가금티푸스 감별 동정 키트	2,650	2,650	.	.	.	.	.	

축종	구분	진단액명	총생산량	배정시기(월)						비고		
				3	4	5	7	9	10			
	혈청 검사	구제역 혈청 SP항체 검사(소,돼지,염소)	443,450	295,750	.	.	.	.	.	147,700		
		구제역 혈청 NSP항체 검사(소,돼지,염소)	462,000	308,000	.	.	.	.	.	154,000		
		구제역 3중 혈청형 판별 신속진단키트	1,890	.	.	1,890	.	.	.	.		
		구제역 항원검사 ELISA	1,200	.	.	1,200	.	.	.	.		
		구제역 항원검사 PCR	32,672	.	.	32,672	.	.	.	.		
		전염성해면상뇌증 ELISA	750	.	.	750	.	.	.	.		
		광견병(소, 개) 혈청검사	1,000	.	.	1,000	.	.	.	.		
		개브루셀라병 진단액(2-me RSAT)	2,100	1200	.	.	900	.	.	.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멧돼지(유전자,항체)	2,000	2,000	.	.	.	.	.	.		
		브루셀라병 FPA	2,000	2,000	.	.	.	.	.	.		
		럼피스킨병 항체진단키트	5,000	.	.	5,000	.	.	.	.		
	기타	수포성구내염 ELISA(말)	1,500	1,500	.	.	.	.	.	.		
		일본뇌염 항체검사(말)	1,500	1,500	.	.	.	.	.	.		
		말바이러스동맥염 항체검사(말)	1,500	1,500	.	.	.	.	.	.		
		아프리카마역 항체진단키트(말)	1,500	1,500	.	.	.	.	.	.		
		아프리카마역 유전자 검사(말)	1,500	1,500	.	.	.	.	.	.		
		말전염성 빈혈 검사(ELISA 키트 등)(말)	1,500	1,500	.	.	.	.	.	.		
		말인플루엔자 항체검사	1,500	1,500	.	.	.	.	.	.		
		개브루셀라병 진단키트	1,550	.	.	1,550	.	.	.	.		
		광견병(소, 개, 너구리 등)형광항체	1,350	1,350	.	.	.	.	.	.		
		큐열 항체진단 ELISA	960	.	.	960	.	.	.	.		
		블루팅병 항체진단키트	2,500	2,500	.	.	.	.	.	.		
		우폐역 항체진단키트	800	800	.	.	.	.	.	.		
		리프트계곡열 항체진단키트	2,500	2,500	.	.	.	.	.	.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체진단키트	5,000	5,000	.	.	.	.	.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사	4,600	4,600	.	.	.	.	.	.		
		웨스트나일열 항체진단키트	1,500	1,500	.	.	.	.	.	.		
		가성우역 진단키트	3,000	3,000	.	.	.	.	.	.		
		돼지수포병 진단키트	1,800	1,800	.	.	.	.	.	.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등 7종 실시간 유전자키트	11,550	.	.	11,550	.	.	.	.		
		꿀벌 부저병 등 3종 실시간 유전자키트	11,100	.	.	11,100	.	.	.	.		
		꿀벌 석고병 등 4종 실시간 유전자키트	11,100	.	.	11,100	.	.	.	.		
		럼피스킨병 유전자 진단키트	10,000	.	.	10,000	.	.	.	.		
		말전염성자궁염 유전자 확진검사	100	.	.	100	.	.	.	.		
		계		1,932,368	1,148,486	21,900	229,682	5,900	224,700	301,700		

〈 검역본부 (생산·구매) 공급 진단액 예산 산출내역 〉

축종	구분	진단액명	생산	단가	소요예산 (천원)	담당과
소	혈청 검사		마리	원	검역본부	
		소아카바네병	1,000	2,000	2,000	질병진단과
		소유행열	1,000	2,000	2,000	"
		이바라기	1,000	2,000	2,000	"
		췌장병	1,000	2,000	2,000	"
		아이노	1,000	2,000	2,000	"
		소류코시스 AGP	10,400	2,100	21,840	바이러스질병과
		소류코시스 ELISA kit	2,000	3,650	7,300	"
		브루셀라병 TUBE	17,800	800	14,240	세균질병과
		브루셀라병 I-ELISA	26,400	2,100	55,440	"
	병성 감정 · 검역	바이러스설사병 유전자진단 키트	8,050	7,300	58,765	바이러스질병과
		코로나바이러스설사병 유전자진단 키트	8,050	7,300	58,765	"
		로타바이러스 유전자진단 키트	8,050	7,300	58,765	"
		요네병 ELISA	27,100	8,400	227,640	질병진단과
		네오스포라 ELISA	4,840	7,385	35,743	세균질병과
		브루셀라병 유전자키트	1,500	4,000	6,000	"
		우결핵 유전자 키트	4,900	8,800	43,120	"
		탄저유전자 키트	2,350	3,300	7,755	"
		기종저 유전자키트	2,850	3,300	9,405	"
		크립토스포리디움 항원 ELISA	192	10,000	1,920	질병진단과

축종	구분	진단액명	생산	단가	소요예산 (천원)	담당과
돼지	혈청 검사		마리	원	검역본부	
		돼지일본뇌염 HI	1,500	4,600	6,900	바이러스질병과
		돼지일본뇌염 ELISA 키트	9,700	4,800	46,560	"
		돼지열병 항체검사 ELISA	174,954	1,500	262,431	질병진단과
		돼지열병 항원검사 ELISA PCR 등	100,468	10,000	1,004,680	"
		돼지브루셀라병 C - ELISA(항체)	25,060	8,500	213,010	"
	병성 감정	톡소플라즈마 ELISA	6,820	5,844	39,856	세균질병과
		돼지오제스키병 감별진단 Kit	570	1,700	969	질병진단과
		돼지뇌심근염바이러스감염증 HI	1,800	2,000	3,600	바이러스질병과
		돼지파코바이러스감염증 HI	3,000	2,000	6,000	"
		돼지열병 형광항체	1,450	2,200	3,190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IFA Kit	384	3,000	1,152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ELISA Kit	68,000	5,500	374,000	질병진단과
		돼지전염성위장염 MCA	750	2,200	1,650	바이러스질병과
		돼지유행성설사 MCA	1,150	2,200	2,530	"
		돼지로타바이러스감염증 MCA	400	2,200	880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MCA	200	2,200	440	"
		돼지인플루엔자 MCA	650	2,200	1,430	"
		돼지싸코바이러스 MCA	250	2,200	550	"
		돼지오제스키바이러스 MCA	500	2,200	1,100	"
		돼지파코 유전자키트	2,480	4,800	11,904	질병진단과
		돼지오제스키 유전자키트	2,430	4,800	11,664	"
		돼지일본뇌염 유전자키트	2,580	7,300	18,834	"
		뇌심근염 유전자키트	2,480	7,300	18,104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유전자키트	18,280	10,000	182,800	바이러스질병과
		돼지전염성위장염 유전자키트	5,480	7,300	40,004	"
		돼지유행성설사 유전자키트	5,480	7,300	40,004	"
		돼지싸코 유전자 키트	5,280	7,300	38,544	"
		돼지인플루엔자 유전자 키트	3,930	9,200	36,156	"
		돼지인플루엔자 유전형 감별 키트	1,000	17,200	17,200	"

축종	구분	진단액명	생산	단가	소요예산 (천원)	담당과
	혈청 검사		마리	원	검역본부	
		뉴캐슬병 HI	11,700	373	4,364	조류질병과
		조류인플루엔자 HI(H9형)	77,900	1,500	116,850	AI연구진단과
		조류인플루엔자 HI(H5형)	73,400	1,500	110,100	"
		조류인플루엔자 HI(H7형)	73,400	1,500	110,100	"
		조류인플루엔자 C-ELISA	4,800	10,000	48,000	"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 ELISA	3,220	2,600	8,372	조류질병과
		추백리·가금티푸스 PLATE	1,000	55	55	"
		추백리·가금티푸스 ELISA	1,380	3,551	4,900	"
닭	병성 감정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 진단 키트 (rRT_PCR)	2,976	45,000	133,920	AI연구진단과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 진단 키트 (AIV_Multi-tube)	372	32,000	11,904	"
		닭전염성기관지염 HI	3,600	1,220	4,392	조류질병과
		닭전염성기관지염 ELISA	5,980	1,763	10,543	"
		산란저하증후군 HI	1,600	494	790	"
		닭전염성F낭병 AGP	3,000	1,210	3,630	"
		닭전염성F낭병 ELISA	20,600	1,763	36,318	"
		닭마이코플라즈마병(MS) PLATE	12,200	500	6,100	"
		닭마이코플라즈마병(MS) ELISA	2,300	2,600	5,980	"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 PLATE	9,700	400	3,880	"
		조류인플루엔자 신속진단키트	990	8,400	8,316	AI연구진단과
		뉴캐슬병 항원검사 진단키트	9,120	38,500	351,120	조류질병과
		가금티푸스 감별 동정키트	2,650	12,000	31,800	"

축종	구분	진단액명	생산	단가	소요예산 (천원)	담당과
기타	혈청 검사		마리	원	검역본부	
		구제역 혈청 SP항체 검사(소, 돼지, 염소)	443,450	5,630	2,496,624	구제역진단과
		구제역 혈청 NSP항체 검사(소, 돼지, 염소)	462,000	2,970	1,372,140	"
		구제역 3종 혈청형 판별 신속진단키트	1,890	47,200	89,208	"
		구제역 항원검사 ELISA	1,200	90,000	108,000	"
		구제역 항원검사 PCR	32,672	21,000	686,112	"
		전염성해면상뇌증 ELISA	750	200,000	150,000	해외전염병과
		광견병(소, 개) 혈청검사	1,000	2,000	2,000	질병진단과
		개브루셀라병 진단액(2-me RSAT)	2,100	800	1,680	세균질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멧돼지(유전자, 항체)	2,000	60,000	120,000	해외전염병과
		브루셀라병 FPA	2,000	4,000	8,000	세균질병과
		럼피스킨병 항체진단키트	5,000	13,000	65,000	해외전염병과
	병성 감정	수포성구내염 ELISA(말)	1,500	18,000	27,000	"
		일본뇌염 항체검사(말)	1,500	5,000	7,500	바이러스질병과
		말바이러스동맥염 항체검사(말)	1,500	20,000	30,000	해외전염병과
		아프리카마역 항체진단키트(말)	1,500	20,000	30,000	"
		아프리카마역 유전자검사(말)	1,500	25,000	37,500	"
		말전염성 빈혈 검사(ELISA 키트 등)	1,500	18,000	27,000	"
		말인플루엔자 항체검사	1,500	10,000	15,000	바이러스질병과
		개브루셀라병 진단키트	1,550	12,100	18,755	질병진단과
		광견병(소, 개, 너구리 등)형광항체	1,350	2,200	2,970	바이러스질병과
		큐열 항체진단 ELISA	960	11,000	10,560	질병진단과
		블루팅 항체진단키트	2,500	10,000	25,000	해외전염병과
		우폐역 항체진단키트	800	12,000	9,600	"
		리프트계곡열 항체진단키트	2,500	18,000	45,000	"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체진단키트	5,000	14,000	70,000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사	4,600	25,000	115,000	"
		웨스트나일열 항체진단키트	1,500	26,000	39,000	"
		가성우역 진단키트	3,000	18,000	54,000	"
		돼지수포병 진단키트	1,800	18,000	32,400	"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등 7종 실시간 유전자키트	11,550	26,250	303,188	세균질병과
		꿀벌 부저병 등 3종 실시간 유전자키트	11,100	9,240	102,564	"
		꿀벌 석고병 등 4종 실시간 유전자키트	11,100	9,240	102,564	"
		럼피스킨병 유전자 진단키트	10,000	75,000	750,000	해외전염병과
		말전염성자궁염 유전자 확진검사	100	25,000	2,500	"
계			1,932,368		10,970,139	

● 24년도 소류코시스 혈청검사 계획(안)

(단위 : 천두, 천원)

구분	사업량	소요경비(재료비)			세 부 내 역
		국 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실시대상 ☐ 종축장(국립·도립) : 종모우 및 후보종모우 선발대상인 모든 소 ☐ 도축장 : 젖소 암소
부산	-	-	-	-	
대구	0.1	20	-	20	☐ 소요경비 ☐ 진단액(AGP) 공급 : 검역본부에서 일괄 생산하여 시·도(동물위생시험소)에 공급 ☐ 재료비 : 두당 200원(국비 100%)
인천	0.2	40	-	40	
광주	0.1	20	-	20	☐ 검진주기 ☐ 종축장 : 반기별 1회(4월, 10월) ☐ 도축장 : 매월 1~2회
대전	0.1	20	-	20	
울산	-	-	-	-	☐ 실시요령 ☐ 시험소장은 배정된 검사물량을 범위내에서 종축장과 도축장 검사물량을 구분, 연간 계획 수립 - 종축장 : 반기별로 종축장과 협의하여 검사 - 도축장 : 매월 1~2회 검사 ☐ 검사방법 : 한천겔면역확산법
세종	0.1	20	-	20	
경기	1.0	200	-	200	☐ 양성 판정시 조치사항 ☐ 시험소장은 해당 농가 관할 시·군 통보 및 발생농장의 소 전두수 검사 실시 ☐ 시장·군수는 발생농장 이동제한 조치 ☐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소는 농장내 살처분 ☐ 임상증상이 없는 소는 도축장 조기 도태 지도
강원	1.3	260	-	260	
충북	0.4	80	-	80	
충남	0.4	80	-	80	
전북	0.5	100	-	100	
전남	1.0	200	-	200	
경북	1.0	200	-	200	
경남	1.5	300	-	300	
제주	0.2	40	-	40	
검역본부	1.0	200	-	200	
계	8.9	1,780	-	1,780	

● 구제역 예찰 계획

(단위 : 두)

구분	NSP항체			SP 항체 (백신항체 양성률)	세 부 내 역												
	통계 예찰	목적 예찰	소계														
서울	-	-	-	-	□ NSP 항체 [통계예찰] ○ 검사대상 : 전국 소(50두 미만)농가(5두) 및 염소(300두미만) 농가(5두) - 증화 2단계 표본 추출방법으로 농가선정 후 개체별 검사 ○ 시료채취기준: 아래 표의 세부채취기준을 포함하여 검사두수 채취 <table><tr><th>축종</th><th>세부채취기준</th><th>예찰(1차) 세부기준 해당개체</th><th>검사 두수</th></tr><tr><td>소</td><td>(사전) 백신접종 5회 미만 또는 24개월령 이하 (현장) 6개월 ~ 12개월령</td><td>3두 2두</td><td>5두</td></tr><tr><td>염소</td><td>6개월령 이상 ~ 백신접종 5회 미만 또는 24개월령 이하</td><td>5두</td><td>5두</td></tr></table> ○ 시료채취기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축방역기관 협조) ○ 검사실시기관 : 가축방역기관 ○ 검사방법 : NSP 항체 ELISA(바이오노트, 메디안디노스틱, 프라이오닉스) ※ NSP 항체 ELISA 3종 중 2종 항체 진단키트에서 모두 양성인 경우 최종 양성으로 판정하고 'NSP 항체 양성축 처리요령'에 따라 조치 □ NSP 항체 [목적예찰] ○ 검사대상 : 의뢰검사, 소 농장(50두 이상), 소 도축장, 소 종축장, 돼지 농장, 돼지 도축장, 종돈장, 염소 농장(300두 이상), 야생동물, 바이러스 순환, NSP항체 양성축 추적 조사 등 - (소, 농장)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최근 3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6두 검사 * 우수(90%이상): 무작위검사, 상대적미흡(80%이상~90%미만): 연 1회, 미흡(80%미만): 연 2회 - (돼지, 농장) 50두 이상 사육농가(19두*, 연 2회), 50두 미만(16두, 연 1회), 위탁사육농가(19두*, 연 1회) * 번식돈 3두와 비육돈 16두(번식돈이 없으면 비육돈만 16두) - (염소, 농장) 300두 이상 전 농가 (5두, 연 1회) - (돼지, 도축장) 비육돈(16두, 연 2회) - (소, 종축장) 16개소, 연 2회(시험소에서 NSP항체 검사 후 동일 시료로 검역본부에서 SP항체 검사 수행) - (야생동물) 야생멧돼지는 돼지열병 시료, 사슴은 결핵 및 CWD 시료 활용 ○ 임상검사 및 시료채취 기관: 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 ○ 검사실시기관 : 가축방역기관, 검역본부 ○ 검사방법 : NSP 항체 통계예찰과 동일 □ SP 항체 [백신 항체양성률 조사] ○ 검사대상 : (소) 농장, 도축장, 종축장, (돼지) 농장, 도축장, 종돈장, (염소) 농장 - (소, 소규모) 50두 미만 사육농가당 5두 검사 - (소, 전업)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최근 3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6두 검사 * 우수(90%이상): 무작위검사, 상대적미흡(80%이상~90%미만): 연 1회, 미흡(80%미만): 연 2회 ※ 50두 이상 농가(NSP 항체 목적예찰 시료 활용), 50두 미만 농가(NSP 항체 통계예찰 시료 활용) - (소, 도축장) 농가당 1두, 도축장 물량 중 100,000두는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	축종	세부채취기준	예찰(1차) 세부기준 해당개체	검사 두수	소	(사전) 백신접종 5회 미만 또는 24개월령 이하 (현장) 6개월 ~ 12개월령	3두 2두	5두	염소	6개월령 이상 ~ 백신접종 5회 미만 또는 24개월령 이하	5두	5두
축종	세부채취기준	예찰(1차) 세부기준 해당개체	검사 두수														
소	(사전) 백신접종 5회 미만 또는 24개월령 이하 (현장) 6개월 ~ 12개월령	3두 2두	5두														
염소	6개월령 이상 ~ 백신접종 5회 미만 또는 24개월령 이하	5두	5두														
부산	35	404	439	419													
대구	190	5,588	5,778	5,775													
인천	280	2,404	2,684	2,484													
광주	45	877	922	922													
대전	65	1,087	1,152	1,152													
울산	365	2,684	3,049	2,999													
세종	220	3,397	3,617	3,517													
경기	2,890	88,658	91,548	88,614													
강원	2,875	31,053	33,928	31,038													
충북	1,970	35,187	37,157	36,567													
충남	4,350	93,640	97,990	92,720													
전북	2,195	64,652	66,847	62,667													
전남	4,025	69,667	73,692	69,512													
경북	3,740	84,208	87,948	83,808													
경남	2,550	51,383	53,933	52,753													
제주	155	19,292	19,447	18,719													
소계	25,950	554,181	580,131	553,666													
검역 본부	-	1,550	1,550	2,668													
민간	-	-	-	100,000													
계	25,950	555,731	581,681	656,334													

□ NSP 항체 [목적예찰]

- 검사대상 : 의뢰검사, 소 농장(50두 이상), 소 도축장, 소 종축장, 돼지 농장, 돼지 도축장, 종돈장, 염소 농장(300두 이상), 야생동물, 바이러스 순환, NSP항체 양성축 추적 조사 등
- (소, 농장)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최근 3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6두 검사
- * 우수(90%이상): 무작위검사, 상대적미흡(80%이상~90%미만): 연 1회, 미흡(80%미만): 연 2회
- (돼지, 농장) 50두 이상 사육농가(19두*, 연 2회), 50두 미만(16두, 연 1회), 위탁사육농가(19두*, 연 1회)
- * 번식돈 3두와 비육돈 16두(번식돈이 없으면 비육돈만 16두)
- (염소, 농장) 300두 이상 전 농가 (5두, 연 1회)
- (돼지, 도축장) 비육돈(16두, 연 2회)
- (소, 종축장) 16개소, 연 2회(시험소에서 NSP항체 검사 후 동일 시료로 검역본부에서 SP항체 검사 수행)
- (야생동물) 야생멧돼지는 돼지열병 시료, 사슴은 결핵 및 CWD 시료 활용
- 임상검사 및 시료채취 기관: 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
- 검사실시기관 : 가축방역기관, 검역본부
- 검사방법 : NSP 항체 통계예찰과 동일

□ SP 항체 [백신 항체양성률 조사]

- 검사대상 : (소) 농장, 도축장, 종축장, (돼지) 농장, 도축장, 종돈장, (염소) 농장
- (소, 소규모) 50두 미만 사육농가당 5두 검사
- (소, 전업)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최근 3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구분하여 16두 검사
- * 우수(90%이상): 무작위검사, 상대적미흡(80%이상~90%미만): 연 1회, 미흡(80%미만): 연 2회
- ※ 50두 이상 농가(NSP 항체 목적예찰 시료 활용), 50두 미만 농가(NSP 항체 통계예찰 시료 활용)
- (소, 도축장) 농가당 1두, 도축장 물량 중 100,000두는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

세 부 내 역

- (소, 종축장) 16개소, 연 2회, 90두/회
 - ※ 세부채취기준: 6~12개월령 27두, 12~24개월령 36두, 24개월령 이상 27두(단, 세부채취기준별 해당 개체가 부족한 경우 다른 세부기준에서 채혈하고, 사육규모가 90두 미만인 경우 6개월 미만을 제외한 전 두수 채혈)
- (돼지, 농장) 50두 이상 사육농가(19두*, 연 2회), 50두 미만(16두, 연 1회), 위탁(19두*, 연 1회)
 - * 번식돈 3두와 비육돈 16두(번식돈이 없으면 비육돈만 16두)
- (돼지, 도축장) 비육돈 16두(연 2회)
- (돼지, 종돈장) 분기별 1회, 번식돈(25~30두) 및 사육단계별(30~40두)
 - ※ 사육단계별로 항체검사를 실시하되, 최종 구제역 백신항체양성률은 세부채취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연령은 제외하여 SP항체 실적 관리보고
- (염소, 농장) 300두 미만 농가당 5두, 300두 이상 농가당 16두
 - ※ 300두 이상 전 농가 연 1회(NSP 항체 목적예찰 시료 활용), 300두 미만 농가(NSP 항체 통계예찰 시료 활용)
- 시료채취기준: 아래 표의 세부채취기준을 포함하여 검사두수 채취
 - ※ 단, 농가내 조건 해당 개체가 없는 경우, 다른 세부채취기준에 해당하는 개체 시료 채취

축종		세부채취기준	예찰(1차) 검사		확인검사			
			세부기준 해당개체	검사 두수	세부기준 해당개체	검사 두수		
소	50두 미만	(사전) 백신접종 5회 미만 또는 24개월령 이하 (현장) 6개월 ~ 12개월령	3두 2두	5두	12두 4두	16두		
	50두 이상		12두 4두	16두	확인검사 생략			
염소	300두 미만	6개월령 이상 ~ 백신접종 5회 미만 또는 24개월령 이하	5두	5두	16두	16두		
	300두 이상		16두	16두	확인검사 생략			
돼지	일관 위탁	번식돈	후보돈 및 도태 모돈 또는 분만 후 30일령 이내 이유 모돈 또는 환축·위축돈		1두	3두	4두	16두
	사육	비육돈	105일령~120일령/120일령~140일령		8두/8두	16두	확인검사 생략	
	비육 사육	비육돈	105일령~120일령/120일령~140일령		8두/8두	16두		

※ 비육돈의 경우 해당 사육구간에 환축·위축돈이 있는 경우 우선 시료 채취

- 시료채취기관 : 가축방역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
- 검사실시기관 : 가축방역기관, 검역본부
- 검사방법 : SP 항체 ELISA(바이오노트, 메디안디노스틱, 프라이오닉스)
 - 1차 검사(5두 검사)에서 SP 항체양성률이 소 80% 미만, 염소 및 번식돈 60% 미만, 비육돈 30% 미만시 16두를 채혈하여 확인검사 실시, 단, 1차 검사에서 16두 이상 검사한 경우 확인검사 생략
 - ※ 확인검사 생략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검사(16두) 실시하되, 1차 검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진단키트 1종으로 16두 전체를 다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진단키트(ELISA) 배부 : 시·도 검사물량 등을 고려하여 배정(검역본부에서 키트 구입 후 송부)

□ 기 타

- NSP항체 양성축 검출 시 NSP항체 양성축 처리요령 준수
-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은 구제역진단과에서 별도 송부
- 최근 3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구분 기준에 따른 소 전업규모 농가현황은 별도 송부
- 상·하반기 축종별 일제접종 후 백신항체 모니터링 조사는 별도 운영

● 돼지열병 혈청검사 계획

(단위 : 두)

구분	항체검사				항원검사				세 부 내 역
	농장예찰		도축장 예찰	계	농장예찰		도축장 예찰	계	
	양돈장	종돈장			양돈장	종돈장			
서울	-	-	-	-	-	-	-	-	□ 검사 대상 ○ 농장예찰 : 양돈사육농가 전농가(멧돼지 제외) 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 ○ 도축장예찰 : 도축장 출하돈 무작위 표본추출 * 멧돼지는 반드시 항체·항원검사 실시 □ 검사방법 ○ 항체 : ELISA(항체보유상황검사) ○ 항원 : ELISA(집단검색) * 정밀재검사 및 의심축 검사시 PCR □ 시료채취 및 검사 실시기관 ○ 시료채취기준 : 농가당 연 2회 이상 - 1회 19두(위축돈, 환돈 5두 또는 종돈장 및 AI센터 정액 5개, 90~140일령 비육돈 11두, 번식돈 3두)이상 * 정액을 이용한 항원검사는 반드시 정장(seminal fluid) 원액을 채취하여 실시(희석정액은 검출 확률이 매우 낮음) * 위축돈 및 환돈은 반드시 항원검사 실시 * 50두 미만농가는 년1회6두(항체)/년1회3두(항원) * 도축장 예찰은 농가당 18두 시료채취 ○ 시료채취 : 양돈장·도축장(방역본부), 종돈장(시·도 가축방역기관) * 도축장 시료채취 기자재 및 항원검사용 EDTA 튜브는 시·도에서 방역본부 공급 * 검역본부의 도축장 예찰물량에 대한 시료채취용 소모품은 검역본부에서 방역본부에 공급 ○ 검사 실시기관 : 시·도 가축방역기관, 검역본부 □ 진단키트 공급 : 농림축산검역본부 ○ 배정물량을 월별로 균등분할 검사 □ 검사결과 조치 ○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참조 * 항체양성률은 비육돈 및 번식돈 항체검사 성적으로 판정 ○ 항원 양성축 확인시 시료 및 실험결과물 등을 검역본부에 송부 ○ 백신주(LOM주) 검출시 해당 시·도에 통보 - 시·도는 해당농가의 예방접종 적정여부를 조사 □ 검사결과 보고 ○ 매 검사결과를 수시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검사실적은 월별로 확정)
부산	200	-	-	200	83	-	-	83	
대구	1,068	580	846	2,494	423	300	-	723	
인천	352	-	1,152	1,504	130	-	-	130	
광주	184	-	1,224	1,408	70	-	-	70	
대전	50	-	1,062	1,112	20	-	-	20	
울산	296	-	522	818	110	-	-	110	
세종	1,242	100	-	1,342	480	100	-	580	
경기	24,346	4,600	12,060	41,006	9,709	4,320	-	14,029	
강원	4,236	3,220	2,790	10,246	1,623	3,240	-	4,863	
충북	6,676	2,760	12,402	21,838	2,686	2,700	-	5,386	
충남	25,318	5,280	8,946	39,544	9,955	5,280	-	15,235	
전북	13,116	5,060	9,702	27,878	5,154	5,040	-	10,194	
전남	11,330	6,440	5,688	23,458	4,364	6,440	-	10,804	
경북	13,706	6,900	7,038	27,644	5,330	6,840	-	12,170	
경남	13,106	7,820	8,640	29,566	5,015	7,380	-	12,395	
제주	5,128	1,840	3,870	10,838	1,876	1,800	-	3,676	
소계	120,354	44,600	75,942*	240,896	47,028	43,440	-	90,468	
검역 본부	-	-	10,000		-	-	10,000		
계	120,354	44,600	85,942	240,896	47,028	43,440	10,000	90,468	

* 항체검사 도축장예찰 시·도 계획물량(75,942두분)은 시·도에서 직접 구입(시·도 가축방역사업비)

● 말(더러브렛 종 등) 혈청검사 계획

(단위 : 두)

구분	사육두수	사업물량	세 부 내 역
서울	110	13	☐ 검사대상 : 더러브렛종 등 ☐ 검사두수 : 1,300두 ☐ 개체별로 7종 (일본뇌염, 말바이러스성 동맥염,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말전염성빈혈, 웨스트나일열, 인플루엔자)에 대한 전염병 검사 ☐ 실시요령 ☐ 마사회에서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에 검사 의뢰 ※ 시료 채취, 보관 및 운반방법 등은 검역본부와 추후 협의 ☐ 검역본부에서는 마사회에서 의뢰한 시료를 검사하여 결과 송부
부산	1,013	113	
대구	46	10	
인천	157	13	
광주	93	10	
대전	61	6	
울산	91	8	
세종	28	-	
경기	4,206	402	
강원	389	47	
충북	317	26	
충남	421	30	
전북	732	66	
전남	466	24	
경북	846	55	
경남	385	27	
제주	20,337	450	
계	29,698	1,300	

● 전염성해면상뇌증(TSE) 예찰 및 정밀검사 계획

(단위 : 두)

구분	소(두수)		면양·산양 (두)	사슴(두)	세 부 내 역
	농장	도축장			
서울	-	-	-	-	☐ 검사대상 ○ 소 : 소해면상뇌증(BSE) 검사 ○ 면양·염소 : 스크래피(Scrapie) ○ 사슴 : CWD(Chronic wasting disease) ※ 사업물량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이 변경될 경우 조정 가능하며, 국내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부산	-	-	-	-	
대구	-	30	-	-	☐ 치료채취 및 BSE신속검사 ○ 17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BSE 신속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시 검역본부로 송부 ※ 치료채취 등 TSE 검사 세부사항은 검역본부(해외전염병과) 에서 별도 시달할 계획
인천	-	15	-	-	
광주	-	5	-	-	☐ TSE 검사방법 ○ 신속검사 : ELISA법 ○ 확인검사 : 병리조직검사법, 면역조직화학염색법, 면역블로팅
대전	-	-	-	-	
울산	-	23	-	도축검사 의뢰 전두수 및 폐사축, 질병발생 으로 살처분된 사슴 중 2세 이상 성축	☐ TSE 검사기관 ○ 검역본부(해외전염병과) : BSE 확인검사 및 기타 TSE 검사 ○ 시·도 가축방역기관 : BSE 신속검사
세종	-	-	-		
경기	4	573	5	-	☐ 검사결과 보고 ○ 매 검사결과를 수시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KAHIS)에 입력(검사시 실적은 월별로 확정)
강원	2	97	-	-	
충북	2	45	60	-	
충남	4	263	20	-	
전북	4	106	20	-	
전남	5	110	20	-	
경북	5	311	25	-	
경남	3	400	-	-	
제주	1	22	-	-	
계	30	2,000	150	150	

〈 WOAH 예찰계획에 따른 부분모집단별 BSE검사대상 우 〉

- ① 진행성 신경증상우 (progressive Clinical signs suggestive of BSE)
 - BSE와 일치하는 행동변화 또는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 (의사환축 신고대상)
 -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진행성의 행동변화를 보이는 소
 - ※ 진행성의 행동변화 : 흥분, 착유시 계속적인 발길질, 축군내 서열변화, 문/입구/ 장애물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 감염성 질병증상 없이 진행성 신경증상
 - 접촉, 소리 또는 빛에 대한 과민반응 등을 보이는 경우
 - 단,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신경증상은 제외(예, 감염, 외상, 독성 원인)
- ② 도축장에서 신경증상 (behavioural or neurological signs at abattoirs)(4세이상)
 - 도축장에서 생해체 검사에서 행동 또는 신경학적 징후를 보이는 경우
 - 걷지 못하거나 원인불명으로 넘어지는 소, 외부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나거나 걷지 못하는 소
 - 문/입구/ 장애물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
 - 접촉, 소리 또는 빛에 대한 과민반응 등을 보이는 경우
 - 비정상적으로 공격적이거나 불안해 하는 소
- ③ 기립불능소 (downer cow with appropriate supporting clinical history)
 - 농장 등에서 횡와자세로 관찰되는 소
 - 횡와 전 임상병력이 일반적인 원인에 기인하지 않는 행동 및 신경학적 증상을 가지는 경우
- ④ 폐사소 (found dead with appropriate supporting clinical history)
 - 농장에서, 수송 도중 또는 도축장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소
 - 죽기 전 임상병력이 일반적인 원인에 기인하지 않는 행동 및 신경학적 증상을 가지는 경우

〈 BSE 예찰 산정기준 〉

- 농장유래 : 지난 5년간 도축금지 기립불능소 보상금 지급두수의 중앙값 기준 연간 30두
 - * 보상금지급 두수 ('16) 30 ('17) 34 ('18) 47 ('19) 25 ('20) 29
 - ** 시도별 검사두수는 소 사육규모 비율로 배분
- 도축장유래 : 지난 5년간 사고소 검사대상우(평균 6,000두)를 유지하되 검사연령을 상향(4세이상, WOAH 예찰 가이드라인 근거)하여 연간 2,000두(6,000*0.3[§]) 검사 (§4세이상 도축두수 비율)
 - * BSE 사고소 검사두수:('18) 5,579 ('19) 6,373 ('20) 7,019 ('21) 6,165 ('22) 5,946
 - ** 시도별 검사두수는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발급실적 기준으로 배분

III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축발기금 : 예산과목 3941-342)

1. 사업 총괄표	153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원 사업	154
3. 방역본부 자산취득 사업	181
4. 방역직 인건비 지원 사업	189
5.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	194



1 사업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내용	'24년 사업비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계		88,852,000	64,837,000	24,015,000	
□ 방역본부 운영지원		34,774,000	34,774,000	-	국비 100%
◦인건비		10,416,000	10,416,000	-	
-일반직, 검역직, 사무 운영직 등	총 184명 (검역직 73, 일반직 55, 사무 운영직 37, 안전직 11, 정보 통계직 4, 청사관리직 4)	10,416,000	10,416,000	-	
◦운영비	1본부·9도본부·43사무소·3검역 사무소	7,208,000	7,208,000	-	
◦전화예찰 사업	예찰직 203명	8,749,000	8,749,000	-	
◦가축질병근절 사업		8,401,000	8,401,000	-	
-방역재료구입	방역복, 주사기 등	3,553,000	3,553,000	-	
-긴급방역지원	재료 구입 등	450,000	450,000	-	
-드론운용전담팀	농장예찰·소독, 기피제 살포 등	1,548,000	1,548,000	-	
-방역전문가 평가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	60,000	60,000	-	
-신고포상금	가축전염병 조기신고 유도	50,000	50,000	-	
-철새 AI 검사	철새 분변 채취 및 포획	1,000,000	1,000,000	-	
-지자체방역평가지원	지자체 내외부 평가, 워크숍 개최, 해외 방역 선진지 견학	400,000	400,000	-	
-가축질병홍보	홍보, 교육, 행사, 회의	1,240,000	1,240,000	-	
-산란계 농장 등급부여	평가업무 수행	100,000	100,000	-	
□ 방역본부 자산취득		1,554,000	1,554,000	-	국비 100%
◦자산취득비	전산시스템, 차량, 집기비품 등	1,554,000	1,554,000	-	
□ 방역직 인건비 지원		22,468,000	13,481,000	8,987,000	국비 60% 지방비 40%
◦방역직 인건비	방역직 496명	22,468,000	13,481,000	8,987,000	
□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30,056,000	15,028,000	15,028,000	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540명	16,150,600	8,075,300	8,075,300	
◦운영비	540개반	13,906,520	6,952,700	6,952,700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원 사업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 기능 활성화를 통해 민·관 공동방역 체계를 확립하여 선제적인 방역 및 선진국형 가축방역 체계 구축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현장업무(가축전염병 검진·혈청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역실태점검) 및 방역 관련 행정업무(가축방역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방역용품 공급 및 관리, 가축방역사업 홍보 및 교육, 축산농가 방역정보시스템 관리 등) 실시
-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 사 업 비 : 34,774백만원(국비 100%)

- 인 건 비 : 10,416백만원(국비100%)
 - 184명(검역 73, 일반 55, 사무운영직 37, 안전 11, 정보통계 4, 청사관리 4)
- 운 영 비 : 7,208백만원(국비 100%)
- 전화예찰 운영 : 8,749백만원(국비 100%)
- 가축질병 근절 : 8,401백만원(국비 100%)

■ 기대효과

- 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해 민(공공기관)·관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 자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선진 방역시스템 구축

■ 지원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나. 사업내용

■ 주요사업

- 방역본부 운영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가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수행하는 현장 업무(가축전염병 검진·혈청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방역실태 점검 등) 및 방역 관련 행정업무(가축방역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방역용품 공급 및 관리, 가축방역사업 홍보 및 교육, 축산농가방역정보시스템 관리 등)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렘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필요한 시료 채취(결과 분석) 및 방역실태 점검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자가 진단 알림톡 포함)·상담을 통한 가축전염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렘피스킨 등) 방역 강화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수행

■ 사업추진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제6항)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록, 임상검사 및 검사 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 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이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추진체계

- 사업주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협조기관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 검진·혈청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
 - 시·도(시·군) : 검진·혈청검사 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방역조치
- 사업기간 : '24. 1월~12월(12개월)

다. 세부 사업별 내용

1. 인건비

■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근절 및 지원을 위한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184명(일반직, 검역직, 안전직, 정보통계직, 사무운영직, 청사관리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 **사업주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사 업 비** : 10,416백만원(국비 100%)

- **인건비(184명)** : 10,416백만원(국비 100%)
 - 일반직(55명) : 4,189백만원($6.35\text{백만원} \times 55\text{명} \times 12\text{개월} \times 100\%$)
 - 검역직(73명) : 3,978백만원($4.54\text{백만원} \times 73\text{명} \times 12\text{개월} \times 100\%$)
 - 안전직(11명) : 545백만원($4.13\text{백만원} \times 11\text{명} \times 12\text{개월} \times 100\%$)
 - 정보통계직(4명) : 238백만원($4.96\text{백만원} \times 4\text{명} \times 12\text{개월} \times 100\%$)
 - 사무운영직(37명) : 1,320백만원($2.97\text{백만원} \times 37\text{명} \times 12\text{개월} \times 100\%$)
 - 청사관리직(4명) : 146백만원($3.04\text{백만원} \times 4\text{명} \times 12\text{개월} \times 100\%$)

* 24년 공통인상분·최저임금 상향분 및 회사부담금·퇴직적립금 포함

2. 운영비

■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근절 및 지원을 위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무실 56개소 및 직원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

■ **사업주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기관 운영비** : 3,014백만원(국비 100%)

- * 기관운영을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제세공과금, 임차료, 관리비 등)
- * 과도한 연구용역비 지출 방지를 위해 방역본부는 기관 운영비 등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할 때 농식품부(방역정책과)와 사전협의 후 추진하여야 하며,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조달계약을 원칙으로 함.

- 수용비 : 1,044백만원(국비 100%)
 - * 사무용품 구입비 143백만원, 도서인쇄비 53백만원, 지급수수료 201백만원, 운영수당 174백만원, 감사실 추진사업 24백만원, 기혁혁신실 추진사업 102백만원, 경영지원실 추진사업 273백만원, 위생검역부 추진사업 7백만원, 안전관리부 추진사업 67백만원
- 제세공과금 : 711백만원(국비 100%)
 - * 전화 및 인터넷 요금 196백만원, 전기 및 수도요금 등 146백만원, 우편요금 7백만원, 차량세금 및 검사비 107백만원, 주민세 131백만원, 차량 보험료 107백만원, 스마트 복무관리시스템 17백만원
- 특근매식비 : 17백만원(국비 100%)
 - * 7천원×3.7명×12개월×56개소
- 임차료 : 875백만원(국비 100%)
 - * 사무실 임차료 635백만원, 업무용차량 임차료 47백만원, 사무기기 임차료 53백만원, 가축방역 회복지원 차량 임차료 100백만원, 본부 사업추진 임차료 40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 367백만원(국비 100%)
 - * 사무기기 등 수리비 50백만원, 청사 유지보수 15백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302백만원
- 차량비 : 749백만원(국비 100%)
 - 유류비 : 611백만원($183\text{천원} \times 278\text{대} \times 12\text{개월} \times 100\%$)
 - 차량수리비 : 138백만원($496\text{천원} \times 278\text{대} \times 100\%$)
- 여비 : 1,055백만원(국비 100%)
 - 관외여비 : 144백만원($20\text{천원} \times 680\text{명} \times 12\text{개월} \times 100\%$)
 - 관내여비 : 896백만원($110\text{천원} \times 680\text{명} \times 12\text{개월} \times 100\%$)
 - 국외여비 : 15백만원($5,000\text{천원} \times 3\text{명} \times 100\%$)
- 업무추진비 : 224백만원(국비 100%)
 - 부서 및 산하기관 회의 추진 : 103백만원($214\text{천원} \times 56\text{개소} \times 12\text{개월} \times 100\%$)
 - 체육행사비 : 41백만원($30\text{천원} \times 680\text{명} \times 2\text{회} \times 100\%$)
 - 대외업무 추진 : 71백만원($592\text{천원} \times 56\text{개소} \times 12\text{개월} \times 100\%$)
 - 대내업무 추진 : 9백만원($900\text{천원} \times 10\text{회} \times 100\%$)
 - * 이사회, 자문위원회, 도본부협의회 등

● 기타운영비 : 127백만원(국비 100%)

- 부서운영비 : 73백만원(108천원×56개소×12개월×100%)

- 표창 및 포상 : 54백만원(80천원×56개소×12개월×100%)

* 본부장 표창 9백만원, 적극행정 포상 1.8백만원, 대국민 공모전 포상 1.8백만원, 기관평가 우수직원 포상 및 해외연수 40백만원, 안전문화 확산 포상 1백만원

● 복리후생비 : 2,039백만원(국비 100%)

- 후생복지 : 2,039백만원(250천원×680명×12개월×100%)

* 명절휴가비, 근로자의 날 행사비,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특수건강검진, 단체보험가입 등

◆ 회복 지원차량 운영

○ 사업목적

- (초기 대응능력 증대)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능력 증대
- (초동방역 업무 효율성 제고) 초동방역 업무수행 시 피로 해소를 위한 임시 휴식 공간 마련 등 초동방역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초동방역 회복 지원차량 운영
- 사업주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사업부)
- 사업대상 : 초동방역 투입시 ①전업농 ②발생다발 시군 ③3박 이상 투입 예상 ④장소적 여건이 확보되는 농장에서 우선적으로 운영
 - * 도본부 자체 회복차량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시(살처분 시간, 날씨 등)에도 운영
 - * 전업농 기준 : 가금(닭 3천수이상, 이외 2천수 이상), 소(50두 이상), 돼지(1천두 이상)
 - * 발생다발 시군 : 전남(나주·영암·무안·함평·고흥·장흥), 경기(평택·안성·이천·화성·김포·포천·여주), 전북(정읍·부안·고창·김제), 충북(음성·청주·진천), 충남(천안·아산·예산·세종)
- 사업비 : 100,000천원=500천원×200일×국비 100%
 - * 연말연시, 계절특수에 따라 1일당 렌탈 금액 변동 가능
- 사업방법 : 악성전염병 발생시 도본부별 선정 업체를 통한 렌탈 방식
 - * 발생시 탁송 또는 직접 인수
 - * 차량운영 장소 선정(진출입이 용이한 곳을 사전에 확인하여 배치)
 - * 회복지원차량은 농가 밖에 주차
 - * 회복지원차량 실내 진입시 개인소독 실시 후 진입
 - * 반납시 1차적으로 차량 바퀴 및 바닥 등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 후 거점소독 시설로 이동하여 2차 소독 실시 및 소독필증을 교부 받은 후 렌탈 장소로 반납
 - * 사용인원은 개인 의복 등을 소독하고 손발을 씻고 목욕 후 다른 의복으로 갈아 입도록 조치

3. 8대 가축 질병별 시료 채취

◆ 농장 시료 채취 요령 준수(가축방역사업 중 검진·혈청검사사업 참조)

- 농장 출입 시 1회용 기자재(방역복·비닐장화·수술용 장갑 등)를 반드시 착용, 사용한 기자재는 현장에서 즉시 폐기, 시료 채취 시 질병별로 각각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 채취 요령을 준수

◆ 시료 채취 및 통보 결과의 농가 환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위생시험소에 의뢰하여 검출·통보된 가축 질병에 대해 지역(시군)·연도별 발생 차이·변화 등을 분석하여 해당 축산농가에 1년에 1회 이상 통보

1)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항체 검사(조류 인플루엔자 검사비 참조)

- 검사대상 : 가금 사육 전업농[메추리 2천수 이상, 기타 가금(거위, 기러기 등) 10수 이상],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금중개상 등
- 검사물량 : 5,251개소 / 169,900점
 - 기타가금(메추리, 거위, 기러기 등) 3,415호 114,520점, 전통시장 912개소 36,480점, 가금중개상(차량) 516대 2,580점, 가금중개상(계류장) 408개소 16,320점
- ※ AI 발생 위험도 등에 따라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서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음
- 검사방법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상시 예찰·검사 계획,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 등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협의하여 시료 채취 계획 수립·운영
 - ※ 시료채취 비협조(거부) 농가는 시·군에 명단을 통보

2) 아프리카돼지열병 혈청검사(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사업 참조)

- 검사대상 : 전국 돼지농장, 취약농가, 밀집사육단지 등
- 검사물량 : 5,485호 / 54,850두
 - 일제검사(돼지농장) 4,928호 49,280두, 취약농가 248호 2,480두, 밀집사육단지 309호 3,090두

● 검사방법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상시·예찰 검사 계획,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ASF 방역대책 등에 따라 시·도와 협의하여 채혈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양돈농가 시료채취 및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시료 송부
 - ※ ASF 발생 위험도 등에 따라 농식품부(구제역방역과)에서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음
 - ※ 사육 돼지 출하 전 모든 전수 검사 시료 채취의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협의하여 분담 추진하고 사육 돼지 중 종돈장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료 채취
 - ※ 농장방문 일정을 조정하여 돼지열병과 같은 날 시료 채취하되, 돼지열병 시료를 활용하여 병행검사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동물위생시험소와 협의하여 추진
 - ※ 시료채취 비협조(거부) 농가는 시·군에 명단을 통보

3) 구제역 혈청검사(구제역 예찰계획 참조)

● 검사대상 : 농장예찰 중 시·도 통계예찰

● 검사물량 : 5,190호 / 25,950두

※ 2024년 구제역 혈청 예찰사업 세부 실시요령에 따름

● 검사방법

-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여 연간 대상 물량을 사업 개시 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통보
 - ※ 구제역 백신 접종 횟수가 적은 어린 연령 개체 위주 검사 → 접종 횟수 5회 미만 혹은 2년생 이하 시료 채취
 - ※ 세부실시요령은 검역본부(구제역진단과)에서 별도 수립·시달
 - ※ 시료채취 비협조(거부) 농가는 시·군에 명단을 통보

4) 소 결핵병·브루셀라병(브루셀라병 검진계획 참조) 및 림피스킨 검진

※ 림피스킨 검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시행 예정인 림피스킨 예찰 계획에 따름

- 검진대상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관련 시·군에서 채혈을 요청한 소 및 림피스킨 예찰 계획에 따라 검역본부·지자체에서 채혈을 요청한 소

※ 결핵병 거래우 신청 시 브루셀라와 동일 개체일 경우 병행하여 실시

- 검진물량 : 135,000호 / 445,500두

※ 림피스킨 예찰 등 계획 물량이 포함된 검진물량

- 검진방법

- 시·군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담당 사무소로 시료채취 대상농가, 시료채취 두수, 출하 예정일, 검사 신청일, 시료채취 예정일 등을 Agrix 내 소-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보

- 시·군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검사신청 농가에게 검사 예정일 등을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보

※ 시·군은 검사신청 농가에게 채혈 당일에 보정자(농장주 또는 농장관리자 등)가 대기토록 사전 통보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월별로 적정한 시료채취 물량이 배정되도록 할 것

- 방역사는 채혈예정일에 농장주 등의 재택 여부와 귀표장착 및 보정준비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해당농가에 방문

- 방역사는 시료채취를 실시하기 전에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의뢰서를 작성, 의뢰서상 기재된 검사대상 소의 소유자 등에게 서명을 받음

- 방역사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의뢰서를 혈액과 함께 검사대상 소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송부

5) 돼지열병 항원·항체검사(돼지열병 혈청검사계획 참조)

- 검사대상 : 돼지사육 전농가(일반 양돈장)예찰 및 도축장예찰
- 검사물량 : 14,639호 / 263,324두
 - 농장 9,420호 / 167,382두, 도축장 5,219호 / 95,942두
- 검사방법

〈농장 예찰〉

- 돼지열병 혈청검사계획에 따라 농가당 연 2회 이상 채혈 실시
- 1회 19두(위축돈, 환돈 5두 또는 종돈장 및 AI센터 정액 5개, 90~140일령 비육돈 11두, 번식돈 3두 이상) 시료채취
 - ※ 양돈농장 내 번식돈이 없는 경우 1회 16두로 시료채취
- 50두 미만 농가는 연 1회 6두(항체) / 연 1회 3두(항원)
- 비육전문농장은 입식 시 마다 1회 시료 채취하며, 소규모 농가의 동일 돈군개체에 대하여 연 1회 시료채취
 - ※ 위축돈 시료는 항원검사만 실시, 그 외의 시료는 항체검사 실시
 - ※ 시료채취 비협조(거부) 농가는 시·군에 명단을 통보

〈도축장 예찰〉

- 작업장별로 대상 농가를 중복이 없도록 무작위 선정하여 농가당 18두 시료채취
- 시·도방역기관 검사 : 항체검사 4,219호 / 75,942두
- 검역본부 검사 : 항체검사 500호 / 10,000두, 항원검사 500호 / 10,000두
 - ※ 도축장 시료채취 기자재 및 항원검사용 EDTA 튜브는 검역본부, 시·도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급

6) 돼지오제스키병 혈청검사(돼지오제스키병 근절사업 참조)

- 검사대상 : 50두 이상 규모의 일반 양돈장을 대상으로 무작위표본 추출로 선정
- 검사물량 : 5,954호 / 59,640두
- 검사방법
 - 농가당 연 2회 이상, 1회 10두 이상 시료 채취
 - 일관사육 또는 자돈분양 농장은 번식돈 3두 비육돈 7두, 비육전문농장은 비육돈 10두 시료채취
 - 위축돈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 돼지는 우선 시료 채취
 - ※ 농장방문 일정을 조정하여 돼지열병과 같은 날 시료 채취하되, 돼지열병 시료를 활용하여 돼지오제스키병 혈청검사 등 병행 검사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동물위생시험소와 협의하여 추진
 - ※ 시료채취 비협조(거부) 농가는 시·군에 명단을 통보

7) 뉴캐슬병 혈청검사(뉴캐슬병 근절사업 참조)

- 검사대상 : 3,000수 이상 규모의 산란계 농장
- 검사물량 : 1,015호 / 51,600수
- 검사방법 : 3,000수 이상 규모의 전 산란계(종계장 제외) 농가 연 1회 이상 방문, 계군별 시료채취
 - 계군규모 10천수 미만 : 계군당 20수 이상 시료채취
 - 계군규모 10천수 이상 : 계군당 30수 이상 시료채취
 - ※ 시료채취 비협조(거부) 농가는 시·군에 명단을 통보

4. 축산농가 방역상황 실태 점검 및 예찰

- 점검시기
 - 농장 시료채취 방문 : 농장방문 시료채취시 농가의 소독·예방접종 등 방역상황 점검 및 예찰 실시
 - 순회점검 방문 : 농장방문 시료채취와 합하여 연 5회 기준으로 농가를 방문하여 방역실태 점검(소 브루셀라는 시료채취시 농장방문으로 같음)
 - ※ 시료채취 농가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상농가와 변경농가의 순회점검 실적을 합산하여 반영

● 점검 및 보고 요령

- 방역사는 스마트패드를 활용하여 농장별 방역 실태점검(이상축 유무 확인, 소독시설 확인 등)을 추진
- 축산농가 방역실태 점검 중 임상증상 이상축 발견 시 해당 가축에 대한 시료채취와 가축질병예찰실시결과보고서(별첨)를 작성하고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검사의뢰 및 검사의뢰 공문 발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방역관리시스템(팜스)에 실적 등록(향후 검사결과 수신 시 결과 내용 추가 등록)
(단, “예찰실시결과보고서“ 작성시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서식 활용 가능)

5. 축산농장정보 수집 및 제공

● 목 적

- 축산농장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제공하여 가축질병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사업의 기반정보로 활용

● 대 상(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방역관리시스템(팜스) 기준)

- 축산법상 가축 중 18개*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 272천여호

* 소·돼지·염소·사슴·산양·면양·닭·오리·메추리·관상조·거위·꿩·칠면조·타조·기러기·말·꿀벌·토끼

● 정보 수집 및 처리

- 방역사: 정기방문(현행화 주기별) 및 현장조사
- 예찰직: 전체 축산농가 정기·비정기 조사
- KAHIS를 통해 지자체·방역 유관기관에 농장정보 제공
- 인허가정보, 축산물이력제, 가금입식신고, 도축검사 매칭을 통한 정보보완

● 계획 및 분석

- 연초 농장정보현행화 매뉴얼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 분기별 농가변동이 반영된 실적 집계

6. 축산농가 상담·예찰

- 목 적
 - 비대면 예찰(전화·문자·알림톡 등)을 통해 악성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검색하고 방역정책 홍보 및 농장 정보 수집, 분석하여 국가가축방역시스템(KAHIS)에 제공
- 예찰 대상
 - 축산법상 가축 중 18개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 272천여호(축종기준)
- 예찰 주기

구분	우제류㉑	돼지	가금류㉒		기타축종㉓	비 고
			전업농·일반㉔	소규모㉕		
평시	월 1회	월 1회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특별방역	월 1회	주 1회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 예찰 주기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8개 축종별 범례

㉑ 우제류 : 소, 산양, 염소, 면양, 사슴,

㉒ 가금류 : 닭, 오리, 메추리, 거위, 칠면조, 관상조, 꿩, 기러기, 타조

㉓ 기타축종 : 꿀벌, 말, 토끼

㉔ 전업농·일반 : 소규모 농가를 제외한 가금사육농가

㉕ 소규모 : 사육규모 100수 미만의 가금사육농가

- 예찰방법
 -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주기 내 1회 이상 예찰(전화·문자·알림톡 등) 실시
 - 가축전염병 발생시 10km 방역대 중 예찰지역에 대하여 전염병별 SOP에 따라 주기적으로 예찰을 실시, 결과는 지자체 및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공유

구분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	방역대 외 예찰 필요지역
	발생농장 ~ 500m 이내	500m 초과 ~ 3km 이내	3km 초과 ~ 10km 이내	
담당	지자체		방역본부	

- 예찰 결과에 이상이 있거나, 주기 내 3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사가 1차 조치하며, 조치 후 개선이 안 될 시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 계획 및 실적보고 요령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사업 세부계획 및 분기별 세부추진 실적을 보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본부는 매월 전화예찰 사업 추진실적 및 예찰결과, 장기 미수신 농가 현황 등을 지자체 및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 계획 및 실적보고 서식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작성하여 보고·제출

7. 가축질병 근절

1) 방역재료 구입

■ 사업목적

- 주요 가축전염병 조기 검색 및 예방접종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채혈 시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하여 적정 사업 추진 도모
- 방역사가 채혈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농가별 방문 시 구비된 개인분무 소독기를 활용, 방역사 및 방역 차량을 소독하여 가축전염병 전파방지

■ 사업내용 : 시료 채취 시 소요 기자재 및 방역사·방역 차량 소독용 소독약 구입

■ 사업주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사 업 비 : 3,553백만원(국비 100%)

- 필수 기자재 : 3,106백만원
 - 방역복 : 2,248백만원(≒ 7,700원 × 2벌 × 146,000호)
 - 마스크 : 79백만원(≒ 270원 × 2개 × 146,000호)
 - 니트릴장갑 : 292백만원(≒ 500원 × 4켄레 × 146,000호)
 - 비닐장화 : 321백만원(≒ 550원 × 4켄레 × 146,000호)
 - 주사기 : 67백만원(≒ 100원 × 670,000두(수))
 - 시료운반백 : 51백만원(≒ 350원 × 146,000호)
 - 소독약 : 48백만원(≒ 19,250원 × 248개조 × 10개)
- 선택 기자재 : 374백만원
 - 면장갑 : 88백만원(≒ 300원 × 2켄레 × 146,000호)
 - 돼지보정기 : 223백만원(≒ 24,500원 × 9,100호)
 - 근무복 : 63백만원(≒ 64,000원 × 496명 × 2벌)
- 안전용품 : 73백만원
 - 안전화 : 31백만원(≒ 62,000원 × 496명)
 - 방한용품(햇팩 등) : 36백만원(≒ 800원 × 496명 × 90일(3개월))
 - 기타안전용품 : 6백만원
- 질병 발생 및 업무 협조 등으로 인한 기자재 사용량 증가, 해당연도 제품 생산 단가 변경 및 낙찰차액 발생 등 특이사항에 따라 실제 구입 및 공급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실시요령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연간 기자재 구입 및 공급계획을 수립 후 일괄 구입하여 사무소별로 차질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 ※ 다만, 입찰 기간 지연 등으로 기자재 공급이 지연되거나 질병발생 상황으로 긴급하게 기자재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로 구입·공급할 수 있음
- 신규 방역직 안전용품과 같이 신속한 공급을 요하거나, 각 도본부·사무소별 운용상 선호도가 분명한 기자재(주사기 등) 등 도본부 단위에서 자체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기자재의 경우 사업절차 및 방역·안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도본부 단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공급

[본부·도본부 구입 품목 구분]

구분	본부	도본부(사무소)
품목	방역복, 마스크, 니트릴장갑, 비닐장화, 시료운반백, 소독약, 면장갑, 돼지보정기, 근무복, 안전화, 방한용품, 기타안전용품 등	주사기, 돼지보정기, 방한용품, 기타안전용품 등

- ※ 품목은 질병 발생·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변동 될 수 있음.
- 방역복, 안전보호구 등 고용노동부의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상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안전관리부의 협조를 통해 관련 규격 및 사양 등을 검토
- 기자재 구입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동 법에서 다루지 않는 세부사항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계약사무처리준칙」을 따름
- 사무소장은 기자재를 각 사무소에 보관·관리하고, 방역사가 기자재 수불대장에 기록 후 사용(수불대장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시 한시적으로 수기로 관리할 수 있다)하도록 관리
- 축산농가 방문 전후 방역복 착용 철제 및 신체, 차량, 채혈 도구 등 소독 실시 후 방문

2) 긴급방역지원

■ 목 적

- 국가 긴급방역 지원을 위한 초동방역팀을 편성하여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렘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투입으로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

■ 사 업 비 : 450백만원(국비 100%)

■ 세부 시행계획

- 긴급상황에 대비한 전국 단위의 초동방역팀 출동 태세 유지
 - 초동방역 투입 명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전국 단위), 지방자치단체장(도·시/시·군·구 단위)
- 가상방역교육·훈련(CPX)을 통한 현장 방역 수행 능력배양
 - 상황·시간대별 수행임무, 보고사항, 행동요령 등 교육
- 초동방역 물자 세트 적정성 검토·보완
 - 구성 : 방역본부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에 따른 필수 기자재 및 선택 기자재
- 특별방역대책 기간 및 가축전염병 다발생 시 원활한 방역 추진을 위해 퇴직방역사 운용

3) 철새 AI 검사

■ 사업목적

- AI의 주요 유입원으로 알려진 철새 분변검사 및 야생조류 포획 검사 등을 통해 AI 재발 방지 및 상시방역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철새 AI검사
- 사업주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100%)
- 검사대상 : 철새 도래지 등 야생조류 분변, 야생조류 포획검사 등

● **검사물량**

- 철새 도래지 : 25개소, 농가 주변 등 항원검사
- 검사물량 : 42,000점[9,600점(시·도 가축방역기관), 32,400점(민간병성감정기관)]
- 야생조류 포획검사(항원·항체검사) : 1,000수

시도	방역본부 (25개소)
서울경기(8)	강서지구, 서호, 상패천, 왕송호수, 문산천, 진위천, 남한강(양평-여주), 포천천
강원(2)	한탄강(동송읍), 토교저수지
충북(1)	보강천
충남(4)	천수만, 금천, 도당천, 논산천
전북(1)	조류지
전남(5)	대동저수지(함평), 사내간척지, 만덕간척지, 고막원천, 주암댐
대구경북(1)	형산강
부산울산경남(3)	장척저수지, 양산천, 태화강

■ **검사방법**

- 시료채취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검사기관 : 민간병성감정기관,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등
 - 철새 도래지 등 야생조류 분변검사 : rRT-PCR 검사 결과 M-gene 양성 시 종란 접종 검사 실시
 - ※ 종란 접종하여 HA 양성 또는 rRT-PCR 검사결과 AI H5 및 H7 양성 시 검역본부에 확인검사 의뢰
 - 야생조류 포획검사 : 항원검사(부화란접종) 후 HA 검사 및 항체검사(HI 검사)

■ **기타 사항**

- 민간병성감정기관은 검역본부 확인 검사 의뢰 시료에 대해 조류의 미토콘드리아 DNA 검출방법으로 조류종 확인 후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및 방역감시과로 통보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성반응 시료 확인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방역감시과),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보고, 해당 시·도,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및 검사기관에 통보 등
- 검사기관은 매주 검사실적을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FAX 등 송부

- 검사기관은 월별 검사종료 후 최종 검사결과를 공문으로 검역본부, 관할 시도 및 가축방역기관에 송부하고 시료 등 검사 폐기물은 멸균 후 처리하며, 사진·기록 등 증빙자료는 3년간 유지
 - ※ 검사 폐기물(인후두 및 분변 시료, 종란, 주사기, 튜브, 팁등)은 반드시 고압멸균 소독(autoclave)한 후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
- 검역본부는 검사기관의 보고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최종보고서를 농식품부(방역정책과, 조류 인플루엔자방역과)에 제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는 공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검역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최종 결과를 취합하여 전화예찰 및 알림톡 등을 활용하여 농가에 정보 제공
- 검사기관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실험실 요원의 명단을 질병관리청(신종감염병대응과, 043-719-9102)을 통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 수행

4) 가축 질병 홍보

■ 사업목적

-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통한 축산농가의 공감대 형성
-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예방대책 추진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홍보를 통하여 관련 대책의 원활한 추진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 사업내용

●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계		1,240
교 육	◦축종별·질병별 업무 담당자 교육, 가축방역사 교육 등	457
홍 보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전문지 광고 등	695
회 의	◦전문가 회의 및 협의회 개최, 위원 수당 등	88

주) 예산범위 내에서 각 구분간 사업비 조정 가능

● **사업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기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홍보, 행사 및 회의 등은 농식품부(방역정책과)와 협의하여 추진
- 협조기관 : 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농협중앙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육계협회 등
- 위탁기관 : 대한양계협회, 한빛복지협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농식품부로부터 시달된 교육·홍보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방역정책과)에 보고 후 추진
- 위탁기관은 시행기관으로부터 교육·홍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시행기관으로부터 교육·홍보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탁기관은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기관으로 사전 신청하고, 해당 사업 종료 후 그 결과 및 집행 내역을 시행기관에 제출
 - 시행기관은 추진 결과 및 집행 내역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예산 범위 내 지원
 - 시행기관은 위탁기관이 시행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점검할 수 있음

5) 지자체 방역 평가 지원

- 기본 사업 실시계획을 농식품부(방역정책과)에서 관계기관으로 통보하면 방역본부는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

6) 신고포상금 지원

■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조기 신고 유도

- 예방접종·이동제한 명령 또는 소독의무 위반자 색출·규제를 통한 가축 방역 규정 준수 유도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구제역, 돼지열병, 소해면상뇌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신고자
 - 다만,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
 - 구제역·돼지열병·뉴캐슬병 예방접종 명령 위반자
 -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이동제한 등 명령 위반자 및 이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도축장영업자 등

■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금액 및 기준

지 급 대 상	신 고 포 상 금	확 인 방 법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임상 의심축을 신고한 자	500만원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50만원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 실시 (정밀검사 결과 : 음성)
돼지열병 발생을 신고한 자	50만원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소해면상뇌증 임상 의심축을 신고한 자	100만원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30만원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 실시 (정밀검사 결과 : 음성)
돼지열병 또는 뉴캐슬병 예방접종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브루셀라병 검사 또는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의 소독관련규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부과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위반자의 해당 가축 또는 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
 - 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시 위반자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조치사항을 첨부하여 신청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시 신고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번호, 신고일자, 신고유형, 조치사항 등을 기재(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검토·확인한 후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포상금 지급요청(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을 하고, 이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에서 축발기금 지출한도액 배정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포상금 지급
- 주의사항
 - 동일한 대상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초 신고한 자에 한하여 포상
 - 1인당 신고포상금이 월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지급

■ 사 업 비 : 50백만원(국비 100%)

- 지급한도액 : 당해년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급
 - 지급 기산일 : '24.1.1부터 발생한 위반행위

■ 세부 시행계획

- 신고포상금의 추진계획은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농식품부 고시) 별표 1에 따르며, 방역본부는 지급 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

7) 방역전문가 평가

■ 목 적

- 가축방역 업무 추진 시 대외 홍보 등을 위한 전문가 그룹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정부 정책의 이해당사자 및 대국민 이해 증진

■ 사 업 비 : 60백만원(국비 100%)

■ 주요내용

- 가축방역·수의분야 등에 필요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 지원
 - 농식품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통보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가축방역 또는 수의분야 세미나를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8) 드론운용전담팀 운영

■ 목 적

- 드론을 통한 언택트 가축방역 실현으로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현장상황 정보 제공으로 조기종식에 기여

■ 사업내용 : 드론을 활용하여 농장 내부 및 오염 우려지역 직접 방문을 최소화하면서 점검 및 예찰 실시

■ 사업주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사 업 비 : 1,548백만원(국비 100%)

- 인건비 : 307백만원(18명×2.84백만원×6개월×100%)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퇴직적립금 포함
- 운영비 : 1,241백만원
 - 드론 임차료(646백만원), 장비 수리비(50백만원), 재료 구입비(140백만원), 차량비(42백만원), 수용비(219백만원), 여비(134백만원), 제세(10백만원)

■ 세부 시행계획

- 드론 운용 현황 : 26대(예찰드론 18, 소독드론 8)
 - * 운용인력 : 18명(세종2, 경기2, 강원2, 충북2, 충남2, 전북2, 전남2, 경북2, 경남2)
- 드론 보안성 강화를 위해 중국산 드론(2대)을 국산 드론(2대)으로 대체 활용하는 시범사업 실시
 - (계약·도입) '24년 2~5월, (시범운영) '24년 6~9월

● 드론 사업계획

구분	사업계획	사업물량
야생멧돼지 검색지원	매년 6월~9월 ASF 발생 위험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도본부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와 협의 후 실시	48건
철새도래지 예찰	매년 9월~3월(7개월) 개소별 월 1회 이상 철새동향 파악(철새도래지 25개소)	175건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 부여 평가결과 적합농가 등 소독실시	특별방역대책기간 월 2회 이상, 소독제 및 기피제 살포(도별 10호 선정)	800건
ASF, AI 발생위험지역내 농가 및 밀집단지	도본부별 8호 월 4회 이상 소독제 및 기피제 살포	3,072건

* 가축전염병 발생시 가축전염병 차단활동 최우선 실시

* 시도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량 조정 가능[단, 사업량 감축 조정 시는 농식품부(방역정책과)와 사전협의]

〈 도본부별 개소수 현황(24.1.1.) 〉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철새도래지 (개소)	25	8	2	1	4	1	5	1	3	-
양돈농가* (호)	4,981	1,008	169	276	1,073	591	470	604	544	246
산란계 농가**(호)	995	225	66	102	157	54	92	167	103	29
오리농가 (호)	363	7	3	32	10	59	198	10	44	-

* ASF 및 야생ASF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양돈농가”를 지정하고, AI 발생지역은 “가금농가”를 지정(도본부에서 축종선정)

** 산란계 농가는 3천수 이상

● 스마트 업무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드론활용 스마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 드론관련 SW 도입 및 기존 시스템과 연계 구축

● 드론 양성교육(20명), 드론 자격증 소지자 대상으로 보수교육(130명) 실시

- 드론 양성교육은 “2종” 실시, 드론 자격증 소지자 대상 자체 보수교육

9) 산란계 농장 방역기준 유형 부여(구 질병관리등급제)

■ 목 적

- 산란계 농장의 자율방역 수준 제고를 위해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 제도 도입으로 평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형부여 평가 업무를 수행

■ 사업내용

- 산란계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 제고를 위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을 부여하는 제도로, 신청 농가에 한하여 평가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 사업주관 : 지자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사 업 비 : 100백만원(국비 100%)

■ 세부 시행계획

-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 부여 평가는「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농식품부 고시)에 따르며, 방역본부는 평가 실적을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에 보고
 - 관리기관(시·군·구) : 평가·재평가 신청의 접수, 결과서 발급·재발급, 살처분 제외 신청(변경)의 접수, 살처분 제외 신청 확인서 발급 등
 - * 고시에 따라 농장이 자율적으로 관리기관(시·군·구)에 평가를 신청
 - 평가기관(방역본부) : 관리기관(시·군·구) 요청에 따른 평가·재평가 실시, 평가사 지정 등
- 평가대상 : 「축산법」상 허가받은 산란계 농장(산란계 사육업 및 산란계 생산 종계업*) 대상
 - * 부화업을 종계업과 같은 장소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
- 평가방법 : 관련 고시* 별표1의 방역기준 평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 평가 전 방역관련 시설의 설치 및 적정 운영에 대한 농가 사전 컨설팅 수행
- 객관적·전문적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평가 인력 교육

라. 세부 사업 추진체계

■ 사업비 집행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자금(보조금)교부 요청
- 농식품부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를 통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농식품부에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
 - ※ 기타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5454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등의 관계규정 준용

■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혈청검사 사업 및 동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별 농장 채혈·방역실태점검·전화예찰 계획 및 기자재 공급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 시·도지사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자료 요청 시 협조
 - 시·군별 농장 시료채취 물량 협의 요청시 시·군별 농장 시료채취 물량 통보
 - 관내 농장 시료채취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해당 시·도지사에게 인력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인건비 세부소요내역을 1월 30일까지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실시요령에 명시된 검사 물량(마릿수 기준) 외 10% 이내의 추가 검사 등을 요청할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무상으로 협조를 받거나, 사업비(가축방역대응지원사업 실시요령 내 사업별 채혈비 단가 기준)를 지원하여 방역본부에 추가 검사를 위탁할 수 있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10% 이내의 추가 검사 등을 요청받은 경우 각 도본부 또는 사무소의 업무량과 방역 기자재 재고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인력이나 방역 기자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추가사업비(보조금 교부 등)를 요구 및 지원받아 검사할 수 있음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자체 협조 요청사업(지침 외 지원 요청사업 포함)에 대한 위탁 검사 단가를 마련하여 각 시도와 도본부에 제공할 수 있다.

■ 농장 시료채취·방역실태점검 실시 및 전화 예찰전담요원 운영

- 방역사는 세부계획에 따라 배정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료채취, 방역실태 점검 및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혈청검사 의뢰
- 농장 시료채취 및 방역실태 점검 : 연 5회
 - 농장 시료채취 : 대상 농가를 기본계획에 따라 방문하여 농장 시료채취 및 방역실태 점검
 - 순회점검 : 대상농가는 농장 시료채취 방문을 포함하여 연 5회 방문, 방역실태 점검 (소결핵병·브루셀라병 시료채취 대상농가는 시료채취시 농장방문으로 같음)
 - ※ 시료채취 농가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상농가와 변경농가의 순회점검 실적을 합산하여 반영
- 가축 사육농가 272천여호에 대해 축종별 주기 내 1회 이상 예찰(전화·문자 등) 실시
-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혈청검사 결과를 시·도(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해당 농가에 통보
 - 검사결과에 따라 확대검사, 이동제한, 살처분·도태 및 과태료 처분 등 조치

마. 자금 집행

■ 자금집행요령

- 방역사 인건비는 농식품부(축발기금사무국)에서 시·도로 자금(자체단체경상보조) 교부에 따라, 시·도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보조금 교부
- 기자재 구입비는 농식품부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직접 교부(민간경상보조)
 - ※ 기타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5호),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등의 관계규정 준용

바. 보 고

■ 세부 추진계획 보고

- 각 내역사업(내내역 사업 포함)은 세부 추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에 보고

■ 추진실적 보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각 도본부 포함)는 분기별로 인건비, 운영비, 가축질병근절 사업 등 국비 100%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실적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소결핵병·브루셀라병 검진 사업 등 지방비 지원 사업의 경우 농식품부 및 시·도에 보고
- 축산농가 방역상황 실태 점검 및 예찰, 축산농가 상담·예찰사업 추진실적 등은 국비 100% 지원사업이지만, 지자체에도 공유가 필요하므로 해당 사업의 추진 실적을 관할 시·도에 통보
- 보조금 예산 집행 실태는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각 도 본부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사업 결과 보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1월 15일까지 제출하고, 지자체는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사업 결과 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익년 1월 31일까지 제출
- * 지자체 e나라도움 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별첨 〉

가축질병 예찰실시 결과보고서

□ 예찰기간 : . . .

□ 예찰지역 :

□ 예찰결과 :

일자	축종	사육 두수	축주		특이사항
			주소	성명	

년 월 일
의뢰자:

○○ 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

3 방역본부 자산취득 사업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현장업무(가축전염병 검진·혈청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역실태점검) 및 방역 관련 행정업무(가축방역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방역용품 공급 및 관리, 가축방역사업 홍보 및 교육, 축산농가 방역시스템 관리 등) 지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노후한 가축방역시설 및 장비 교체를 통해 원활한 가축방역 사업 추진

■ 사업추진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 사업주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지원품목 : 방역차량, 방역장비, 정보화시스템 개선, 사무소 임차보증금 등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합 계		1,554
자본지출-자산취득비	◦정보시스템 개선	326
자본지출-자산취득비	◦사무소 임차보증금 지원	151
자본지출-자산취득비	◦노후차량 교체	925
자본지출-자산취득비	◦노후자산 교체	152

주) 예산범위 내에서 각 구분간 사업비 조정 가능

나. 세부 사업내용

1. 정보시스템 개선

■ 사업목적

- 응용프로그램, 하드웨어 등 정보시스템 교체·개선을 지속 추진(5개년)
- 정보보안체계 강화 및 중요 인프라 이중화하여 시스템 안정성 향상

■ 사업내용

- 2024년 추진 계획
 - 그룹웨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전자결재·메일·메신저 업그레이드 및 연동
 - 하드웨어 교체·보강 : 노후 서버·스토리지 교체, 보안체계 보강 등
- 5개년 추진 계획

연도	추진 내용	비고
'24년	노후시스템 추가교체(1차 - 전자결재 시스템)	
'25년	노후시스템 추가교체(2차 - 통합행정 시스템)	
'26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이중화(1차 - 백본, 보안)	
'27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이중화(보안, 스위치)	
'28년	서버 이중화	

■ 추진체계

- '24년 사업비 : 326백만원
- 조달계약 등을 통해 계약사무 추진(공고, 평가, 계약 등)
- '24년 사업 일정

추진내용	수행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사업계획 수립						
- 기본계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 과업 심의·기간산정						
계약사무 추진(경영지원실 협조)						
사업 수행						
- 분석·설계						
- 장비도입·개발						
- 테스트 및 적용						

2. 사무소 임차보증금

■ 사업목적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효율적인 사무소 운영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 사업내용

- 현장사무소 임차보증금 없는 사무소 임차보증금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이전 및 재계약 시 보증금 지원

■ 추진체계

- 사업기간 : '24. 1월 ~ 12월(12개월)
- 사업대상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임차사무소(56개소)

순번	소속	사무소	소재지	개선대상 (예정)	비고
1	본부	본부	세종시 세종로 1234-12, 2층	24년 재계약	
2	본부	용인점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78-4, 503호		'25년
3	본부	광주점역	경기도 광주시 청석로 234번지 3층		'25년
4	본부	부산점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천로12 수협빌딩 2층 202호(감천동476-6)	24년 재계약	
5	경기	도본부(예찰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0번길 30 KT수원지사 별관 3층	24년 재계약	
6	경기	중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0번길 30 KT수원지사 별관 1층	24년 재계약	
7	경기	동부	경기도 이천시 황무로 698 2동 2층(사읍동 9-2)	24년 재계약	
8	경기	서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210번길 34-8(대준마을회관)	24년 재계약	
9	경기	남부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학 11길 19(1층)		'28년
10	경기	북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381번길 64, 2층	24년 재계약	
11	경기	동북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조종로 1810 1층(상면 올길리 461-18)	24년 재계약	
12	경기	서북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69, 제이엠씨빌딩 202호	24년 재계약	
13	강원	도본부(예찰센터)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1 KT 춘천지사 4층	24년 재계약	
14	강원	서부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1 KT 춘천지사 4층	24년 재계약	
15	강원	중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평창새싹길 35(하리 112-7)		'25년
16	강원	동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덕실길 5	24년 재계약	
17	강원	남부	강원도 원주시 강변로 93-5(단구동 1489-2) 1층		'25년
18	강원	북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청대로 232번길 23-1(2층)		'25년
19	충북	도본부(예찰센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KT 상당사옥 8층	24년 재계약	
20	충북	중부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KT 상당사옥 8층(지하포함)	24년 재계약	
21	충북	동부	충북 제천시 의병대로 34길 9(2층)		'25년
22	충북	남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신기2길 21 1층	24년 재계약	
23	충북	북부	충북 충주시 문화동 대림5길 5 1층	24년 재계약	
24	충남	도본부(예찰센터)	충남 아산시 충무로 93 KT 아산사옥 3층		'27년
25	충남	중부	충남 아산시 충무로 93 KT 아산사옥 3층		'27년
26	충남	동부	충남 공주시 의당면 모란길 98-7		'25년
27	충남	서부	충남 홍성군 홍성군 홍성읍 구항길 380		'25년

순번	소속	사무소	소재지	개선대상 (예정)	비고
28	충남	남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왕중로 70번길 11 복지회관2층		'25년
29	충남	북부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422-13		'26년
30	충남	동북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세종로 2233		'25년
31	전북	도본부(예찰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KT빌딩 13층(지하2층 창고)	24년 재계약	
32	전북	중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KT빌딩 13층(지하2층 창고)	24년 재계약	
33	전북	동부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259-3	24년 재계약	
34	전북	서부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호남철로 24 신태인KT 1층(창고 포함)	24년 재계약	
35	전북	남부	전북 남원시 용성로 348 새마을금고 월락지점(2층)		'25년
36	전북	북부	전북 익산시 배산로4길 9-23 MG익산서부새마을금고 3층		'25년
37	전남	도본부(예찰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2번길 15 KT 북광주사옥 6층	24년 재계약	
38	전남	북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2번길 15 KT 북광주사옥 6층	24년 재계약	
39	전남	중부	전남 나주시 남평1로 12, 파평회관 202호	24년 재계약	
40	전남	동부	전남 순천시 가곡동 원가곡3길 12 1층, 2층		'26년
41	전남	서부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581		'25년
42	전남	남부	전남 강진군 강진읍 송계로 233(1층)		'26년
43	경북	도본부(예찰센터)	대구시 남구 봉덕로 61 KT 봉덕빌딩 8층	24년 재계약	
44	경북	중부	대구시 남구 봉덕로 61 KT 봉덕빌딩 8층	24년 재계약	
45	경북	동부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TCC 사옥 4층)		'26년
46	경북	서부	경북 상주시 북상주로 10		'25년
47	경북	남부	경북 칠곡군 서중리4길 30-24	24년 재계약	
48	경북	북부	경북 안동시 제봉길 54-5(2층)		'25년
49	경남	도본부(예찰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동마산KT, 시내동2층)	24년 재계약	
50	경남	중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동마산KT, 시내동2층)	24년 재계약	
51	경남	동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신평로 54(2층)		'26년
52	경남	서부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17(2층)		'25년
53	경남	남부	경남 고성군·읍 남해안대로 2334(2층)		'25년
54	경남	북부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대로 2971(2층)		'25년
55	경남	동북부	경남 밀양시 초동면 초동로 500		'25년
56	제주	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성1길 21-20		'25년

* 계약 변경 및 특이사항 발생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24년 사업비 : 151백만원

● 소속기관 사무소 운영 가이드라인 시행('24. 3월예정) 후 기준에 적합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소 이전 및 재계약시 임차보증금 활용

《 사무소 운영 기준(안) 》

- ① 사무공간의 적절한 집무면적 확보
- ② 사무지원공간(회의실, 샤워/탈의실, 휴게실, 탕비실, 창고 등) 확보
- ③ 공용공간(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확보
- ④ 주차공간 확보여부(방역차량 주차 공간 확보, 개인차량 주차 고려)
- ⑤ 보증금 및 임차료 소요예산 검토
- ⑥ 유관기관 및 관내지역의 상시출장을 위한 도로(교통) 사항
- ⑦ 직원들의 편의사항 반영(출퇴근 거리, 대중교통, 주유소, 식당 등)

3. 업무용 노후차량 교체

■ 사업목적

-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하거나 신규로 방역차량을 구입하여 방역사업에 활용하여 가축방역 업무의 원활한 추진

■ 사업내용

- 내용연한이 경과한 업무용차량을 교체하여 직원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자동차 구매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시책 동참

■ 추진체계

- 사업기간 : '24. 1월 ~ 12월(12개월)
- 사업대상 : 본부, 도본부, 사무소
- 사업량 : 25대
 - ※ 차량 단가 및 소요예산에 따라 구매대수 조정 가능
- '24년 사업비 : 925백만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차량 보유현황(자산) : 264대
 - ※ 2023.12월 기준 사업용차량 중 노후차량 110대
 - ※ 차량 수리비 발생 현황, 내용연수(8년), 누적주행거리(12만km) 등 검토를 통해 교체차량 선정
 - ※ 차량교체 기준은 물품관리법에 따름

■ 물품선정요령

- 소속기관 자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노후 차량 현황 및 교체 대상 선정 후 조달계약 등을 통해 차량 구입 및 현장 배치

4. 노후 자산 교체

■ 사업목적

- 가축위생방역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업무 및 행정업무 시 필요한 자산 및 내용연한이 지난 노후된 자산 교체

■ 사업내용

- 노후된 장비(방역장비, 사무지원비품 등)를 교체하여 원활한 가축위생방역사업 추진 환경을 개선하며, 교체장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

■ 추진체계

- 사업기간 : '24. 1월 ~ 12월(12개월)
- 사업대상 : 본부, 도본부, 사무소
- '24년 사업비 : 152백만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사업물량 범위 안에서 조달계약 등을 통해 자산 구매 추진
- 자산현황('23.12기준) : 12,000여개 중 노후자산 3,500여개
- 물품 구매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분류	구매물품	전체자산	노후자산	소요예산
합 계			11,502	3,479	152
1	집기비품-컴퓨터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소프트웨어 등	3,829	1488	60
2	집기비품-사무지원비품	복사기, 냉방기, 온수기 등	1,348	294	30
3	집기비품-가구	책상, 의자, 서랍장, 캐비닛 등	4,782	1,388	50
4	집기비품-방역장비	초미립바이오분무기, 고압소독기 등	1,279	199	12

※ 방역업무(전화예찰, 방역위생사업)시 부족한 컴퓨터 보급과 사무용품(책상·의자 등)을 우선 교체

※ 물품 단가 및 소요예산에 따라 구매 수량 조정 가능

■ 물품선정요령

- 소속기관 자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필요물품 선정 후 조달계약 등을 통해 구매
- 물품구매는 상반기, 하반기 구분하여 일괄 구매하며 녹색제품 위주 구매
 - ※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70%이상 구매 추진

다. 자금집행

■ 자금집행요령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자금(보조금)교부 요청
- 농식품부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를 통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농식품부에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
 - ※ 기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5454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등의 관계규정 준용

라. 보 고

■ 추진실적 보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반기별로 별첨1의 서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에 추진 실적 제출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각 도 본부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사업 결과 보고서를 익년 1월 31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에 제출

〈 별첨 〉

2023년 자산취득사업 집행실적 보고**1. 사업 추진실적**

구분	'24년 추진계획	집행실적(상·하반기)	비고
정보화시스템 개선	◦ ◦		
사무소 임차보증금	◦ ◦		
노후차량 교체	◦ ◦		
노후자산 교체	◦ ◦		
계			

2. 사업비 집행실적

구분	'24년 교부예산	집행실적(상·하반기)	집행잔액
정보화시스템 개선			
사무소 임차보증금			
노후차량 교체			
노후자산 교체			
계			

4 방역직 인건비 지원 사업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 기능 활성화를 통해 민·관 공동방역 체계를 확립하여 선제적인 방역 및 선진국형 가축방역 체계 구축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현장업무(가축전염병 검진·혈청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역실태점검)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 방역을 위해 활동하는 방역본부 방역직의 인건비 지원

■ 사 업 비 : 13,481백만원(국비 60%)

- 인 건 비 : 13,481백만원(국비 60%), 8,987백만원(지방비 40%)

■ 기대효과

- 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해 민(공공기관)·관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 자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선진 방역시스템 구축

■ 지원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축산법 제47조(기금의 용도)

나. 사업내용

■ 주요사업

-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방역직 인건비를 지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가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수행하는 현장 업무 (가축전염병 검진·혈청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방역실태 점검 등) 및 방역 관련 행정업무(가축방역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방역용품 공급 및 관리, 가축방역사업 홍보 및 교육, 축산농가방역정보시스템 실적등록 등)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필요한 시료 채취(결과 분석) 및 방역실태 점검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수행

■ 사업추진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제6항)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록, 임상검사 및 검사 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 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추진체계

- 사업주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관계기관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 검진·혈청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
- 시·도(시·군) : 검진·혈청검사 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방역조치

● 사업기간 : '24. 1월~12월(12개월)

다. 세부사업 추진체계

■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혈청검사 사업 및 동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별 농장 채혈·방역실태점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 시·도지사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자료 요청 시 협조
 - 시·군별 농장 시료채취 물량 협의 요청시 시·군별 농장 시료채취 물량 통보
 - 관내 농장 시료채취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해당 시·도지사에게 인력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인건비 세부소요내역을 1월 30일까지 제출

■ 농장 시료채취·방역실태점검 실시

- 방역사는 세부계획에 따라 배정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료채취, 방역실태 점검 및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혈청검사 의뢰
- 농장 시료채취 및 방역실태 점검(연 5회)
 - 농장 시료채취 : 대상 농가를 기본계획에 따라 방문하여 농장 시료채취 및 방역실태 점검
 -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식품부 담당과 협의를 통한 시료채취 계획량 조정 가능
 - 순회점검 : 대상농가는 농장 시료채취 방문을 포함하여 연 5회 방문, 방역실태 점검 (소결핵병·브루셀라병 시료채취 대상농가는 시료채취시 농장방문으로 같음)
 - ※ 시료채취 농가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상농가와 변경농가의 순회점검 실적을 합산하여 반영
-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혈청검사 결과를 시·도(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해당 농가에 통보
 - 검사결과에 따라 확대검사, 이동제한, 살처분·도태 및 과태료 처분 등 조치

라. 자금집행

■ 자금집행요령

- 방역사 인건비는 농식품부(축발기금사무국)에서 시·도로 자금(자체단체경상보조) 교부에 따라, 시·도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보조금 교부
- ※ 기타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5호),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등의 관계규정 준용

마. 보 고

■ 추진실적 보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각 도본부 포함)는 분기별로 사업추진 실적을 **농식품부 및 시·도에 보고**(월별로 확정)하고, 보조금예산 집행실태를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식품부 및 시·도에 보고
-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각 지자체 보조금관리 조례 등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각 도본부 포함)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사업 결과 보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익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고, 지자체는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사업 결과 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익년 1월 31일까지 제출

〈 붙임 1 〉

시·도별 방역요원 인건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무소 개소수	방역요원수	소 요 예 산		
			국 비	지방비	계
서 울	-	-	-	-	-
부 산	-	2	55,000	37,200	92,200
대 구	-	7	203,000	136,100	339,100
인 천	-	4	130,000	86,200	216,200
광 주	-	2	53,000	36,000	89,000
대 전	-	2	56,000	37,800	93,800
울 산	-	6	156,000	100,200	256,200
세 종	-	5	145,000	96,400	241,400
경 기	7	56	1,516,000	1,011,200	2,527,200
강 원	5	42	1,151,000	766,700	1,917,700
충 북	4	40	1,067,000	711,300	1,778,300
충 남	6	63	1,724,000	1,149,800	2,873,800
전 북	5	58	1,518,000	1,011,800	2,529,800
전 남	5	72	1,940,000	1,293,700	3,233,700
경 북	5	73	2,000,000	1,333,900	3,333,900
경 남	6	58	1,599,000	1,065,900	2,664,900
제 주	-	6	168,000	112,800	280,800
계	43	496	13,481,000	8,987,000	22,468,000

5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

가. 운영개요

■ 목 적

-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철저한 소독으로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여 축산농가 보호 및 국민 보건에 기여
-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발생 시 신속한 공동방역 지원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 상시소독

- 소규모 농가 방문소독 지원 : 연 24회
 - 농협 공동방제단의 방역요원이 소독차로 축사를 순환 방문하며 소독을 실시
 - ※ 공동방제단에 지원하는 소독약품 등은 사업비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소독약품은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 전통시장 및 밀집사육지역 소독 지원 : 연 24회
 - 방역요원이 시·군별 대상지역 소독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입국시 해당농장 방문소독 : 연중
 - 대상자의 농장 소재지 시·군 농협 공동방제단이 소독
- 기타 소독활동 지원
 - 기존 질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인한 추가 소독이 필요하거나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AI 등 질병이 발생한 지자체의 긴급 요청 등으로 필요한 추가 소독활동에 공동방제단이 참여 가능

나.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약품 공급 지원

1. 추진방향

- 소독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농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
- 소독약품은 24회분을 공급하고, 그 외 소요되는 소독약품은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여 공동방제단에 예산을 지원
- 소규모 농가, 취약지역 방제용, 기타 소독지원 등으로 사용되는 약품비와 방제단 운영 제비용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50%씩 부담

2. 사업 실시요령

1) 사업개요

■ 공동방제단 편성기준 : 540개 반

- 편성기준 : 축협은 시·군별로 1개 방제단 이상을 구성하고, 방제단은 방역요원 (소독전담요원) 1명과 소독차 1대를 기본으로 편성
- 방제단 규모 : 방역요원 540명, 소독차 540대
- 방제단 업무 : 방역요원은 담당구역을 연간 24회 순회 방문소독(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의 해당농장은 입국 시 1주일 이내)

■ 소독지원 소규모 농가 : 42천호 × 24회

- 소·사슴·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000수 미만, 오리 2,000수 미만 농가

■ 가금거래 전통시장 소독 : 222개소 × 24회

- 시·군별 가금거래 전통시장 소독
 - 방역요원은 시·군별 해당 전통시장을 격주 1회 소독 실시

■ 밀집사육지역 주변 소독 : 92개소 × 24회

- 시·군별 밀집사육지역 진·출입로, 주요 도로 및 농장 주변을 소독
 - 방역요원은 시·군별 해당 밀집사육지역을 격주 1회 소독 실시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해당농장 소독 : 입국 시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전산으로 대상자 입국 여부를 매일 조회하여 1주일 이내 농장 방문 소독
 - 대상자의 농장 소재지 시·군 축협 공동방제단이 소독 실시

■ 기타 소독활동 지원 : 필요시 운영

- 시·군별 가축전염병 발생 및 인접 농가, 축산차량 진출입로, 거점소독시설 등 집중 소독
 - 농장 소재지 시·군 축협 공동방제단이 소독지원

■ 지원내용

- 방역요원 540명 인건비 : 정액제(1인당 연간 29,890천원 한도)
 - 축협은 인건비를 분기별로 시·군에 청구하고, 시·군은 1인당 보조금 한도 내에서 방역요원 채용·운영 실적을 확인하여 지급
 - 축협은 1인당 보조금 한도 이내에서 방역요원 채용계약을 체결하되, 부득이 보조한도를 초과하여 채용 시 초과분은 농축협에서 자체 부담함
- 공동방제단 운영 제비용(통합운영 가능)
 - 방제단 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제비용을 말함 (약품비, 소독장비 임대료, 유류비, 차량·소독기 정비료, 수도료, 전기료, 소모품비, 인쇄비, 교육비, 제세공과금 등)
 - 소독약품 : 1농가 1회 소독약(희석액 기준) 50ℓ
 - * 광범위 소독제 : 41,758호×24회×1,787원(50ℓ)
 - 소독장비(1톤화물차 및 탑재형 방제기) 임대료(리스료, 보험료 포함)
 - * 임대료 : 540대×12월×월 평균 969,000원(계약단가에 의함, 보험료 포함)
 - 기타 소모품, 인쇄비, 교육비 및 제세공과금은 실비로 정산

■ 사업비 : 30,056백만원(국비 15,028, 지방비 15,028)

- 인건비(540명) : 16,150백만원(국비 8,075 지방비 8,075)
 - 산출근거 : (540명 × 29,890천원) + 10,000천원(울릉군)
- 소독장비 임대료 : 6,280백만원(국비 3,140, 지방비 3,140)
 - 소독차 임대료 : 6,280백만원(540대 × 12월 × 월 평균 969,000원)
- 소독약품 : 1,790백만원(국비 895, 지방비 895)
 - 소독약 : 41,758호 × 24회 × 1,787원(50ℓ)
- 공동방제단 운영 활동비 : 5,836백만원(국비 2,918, 지방비 2,918)
 - 소독차 유류비 : 3,408백만원(경유 1,654백만원 + 휘발유 1,754백만원)
 - * 1톤화물차 운행 유류비(경유) : 41,758호 × 24회 × 1,650원
 - * 원거리방제기 작동 유류비(휘발유) : 41,758호 × 24회 × 1,750원
 - 차량 및 소독기 정비료 : 972백만원(540대 × 1,800천원)
 - 수도료 : 180백만원(41,758호 × 24회 × 180원(=60ℓ ÷ 800ℓ × 2,400원))
 - 소모품비(방역복, 마스크 등) : 1,080백만원(540명 × 2,000천원)
 - 인쇄비 등 : 80백만원(41,758호 × 12회 × 160원)
 - 교육훈련비 : 59백만원(540명 × 108천원)
 - 제세공과금 : 57백만원(106천원 × 540대)

■ 사업주관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지역축협

- 총괄수행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 공동방제단 편성 및 운영 : 지역축협
- 방역용품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지역축협
- 인력채용 : 지역축협
- 대상농가 선정 : 사업계획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시·군과 지역축협이 협의하여 결정
 - ※ 공동방제단 운영 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시·도별 방제단 편성 및 운영 제비용 지원

(단위 : 호, 개소, 반, 천원)

시·도	사업대상(호,개소)				방제단 편성 (반)	인건비 (A)	운 영 비				총계 (A+B)
	소규모 농가 (a)	전통 시장 (b)	밀집 지역 (c)	계 (d=a+b+c)			리스료	약품비	기타	소계 (B)	
부산	129	2	0	131	2	59,780	23,256	5,616	19,536	48,408	108,188
대구	430	8	0	438	6	179,340	69,768	18,655	62,295	150,718	330,058
인천	345	0	0	345	6	179,340	69,768	14,795	54,387	138,950	318,290
광주	96	11	0	107	2	59,780	23,256	4,588	17,426	45,270	105,050
대전	90	2	0	92	2	59,780	23,256	3,945	16,109	43,310	103,090
울산	814	2	0	816	9	269,010	104,652	34,992	107,804	247,448	516,458
세종	189	0	1	190	3	89,670	34,884	8,147	28,731	71,762	161,432
경기	2,366	25	17	2,408	40	1,195,600	465,120	103,262	372,086	940,468	2,136,068
강원	2,502	39	6	2,547	49	1,464,610	569,772	109,223	420,417	1,099,412	2,564,022
충북	3,041	8	6	3,055	34	1,016,260	395,352	131,008	404,828	931,188	1,947,448
충남	6,395	15	14	6,424	63	1,883,070	732,564	275,479	817,165	1,825,208	3,708,278
전북	3,898	27	15	3,940	46	1,374,940	534,888	168,958	530,734	1,234,580	2,609,520
전남	6,869	40	7	6,916	99	2,959,110	1,151,172	296,578	1004,886	2,452,636	5,411,746
경북	7,229	21	13	7,263	88	2,640,320	1,023,264	311,458	991,212	2,325,934	4,966,254
경남	6,866	18	9	6,893	86	2,570,540	1,000,008	295,590	950,680	2,246,278	4,816,818
제주	188	4	4	196	5	149,450	58,140	8,405	37,285	103,830	253,280
계	41,447	222	92	41,761	540	16,150,600	6,279,120	1,790,699	5,835,581	13,905,400	30,056,000

2) 세부 추진절차

(가) 공동방제단 편성기준 및 방역용품 배정 사전준비

■ 공동방제단 사업계획 수립 : 농협중앙회(전년도 12월)

- 농협중앙회는 확보된 예산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의 기초자료가 되는 축종별 농가수의 경우, 소(한·육우, 젖소 등)는 축산물이력제 등록자료, 기타 축종은 통계청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 활용
- 농협중앙회는 필요시 시·군별 방제단 인력과 장비를 조정 배치할 수 있음

■ 시·군별 예산 배정 및 방제단 편성 : 시·군, 축협(연초)

-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시·군별로 대상 농가수를 감안하여 배정
 - 농협중앙회에서 작성한 시·군별 예산편성자료를 참조하여 배정
 - 시·도지사는 시·군별 배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축협은 편성된 방제단을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
- 공동방제단 운영계획은 시·군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축협방제단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축협과 시·군이 협의하여 결정

■ 시·군별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 농가 선정 : 시·군, 축협(연초)

- 축협은 관할 시·군별 배정예산과 농협중앙회에서 편성한 사업물량 및 보유자원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축협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과 자원의 능력을 감안하여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확정
- 시·군별 대상 농가 선정시 다음 자료를 참고하되, 농가수는 농협중앙회에서 작성 통보한 예산편성 자료상의 시·군별 농가수를 사업물량의 기준으로 함
 - 소(한·육우, 젖소 등) : 축산물이력제시스템 등록자료
 - 닭 : 통계청(전수조사) 또는 행정 통계치 자료
 - 사슴·염소·돼지·오리 : 통계청 또는 행정 통계치를 참조
- 시·군은 명단을 사업 개시 전 축협에 통보하며, 축협은 관할 사업대상 농가명단 및 주소를 통보받아 전산(KAHIS)에 등록하여 관리(연도 중 휴·폐업, 신규농장 명단은 시군과 협의 하여 사업에 반영)

(나) 공동방제단 방역요원 교육 및 농가 홍보

■ 공동방제단 방역요원(소독전담요원) 직무교육

- 지역축협은 방역요원 채용 후 현장 배치 이전에 방역 및 공동방제단 사업요령 교육 실시 및 연 1회 이상 자체 방역교육을 실시
- 농협중앙회는 방역요원을 소집하여 연 1회 이상 실무 및 방역교육을 실시
- 농협중앙회는 방제요원 교육 계획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교육내용은 방역관련 제 법령, 전염병 특성과 주의사항, 가축사육기술, 소독기 정비점검, 소독약의 특성과 희석배수 적용 및 농가 소독요령, 예찰요령, 근무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

* 농협중앙회는 공동방제단 세부요령을 마련하여 운영

(다) 공동방제단 인력, 장비, 약품의 확보 등

■ 인력의 확보

- 공동방제단 소요인력은 시·군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축협이 방역요원(소독전담요원)을 별도 채용(정규직 등을 방역전담으로 운영 가능)
- 방역요원은 소독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소독 실습교육을 받아야 함

■ 장비의 확보

- 농협중앙회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소독장비(소독차량 등)를 확보하여 축협에 배정
- 시·군별 추가 소요되는 장비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가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 소독약품 등의 확보

- 소독약품은 시·군별 사업예산 범위내로 축협에서 구입
 - 소독약품 구매절차
 - i) 시·군은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하단의 소독약품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5개 품목 이상을 선정(가축방역심의회 구성 시 반드시 축협 등 관계자 포함)

* 소독약품 선정기준

-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 소독범위(구제역·AI·ASF 등)가 광범위 할 것, 사람과 가축에 위해가 적을 것
- ASF·구제역·고병원성AI 긴급행동지침 등의 소독제 종류 및 적용범위 준수(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바이러스에 효력을 인정한 허가된 제품 선정, 동절기 소독을 위한 산화제 품목 포함 및 동절기 산화제 사용 권고)

ii) 축협은 시·군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선정된 품목을 구매

- 소독약품은 분기별로 배정 및 배송을 원칙으로 하되 물량이 많은 지역은 월별로 분할 배송할 수 있음
- 소독대상 질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결핵병, 뉴캐슬병 등에 유효한 제제를 선정

(라) 공동방제단(방역요원)의 소규모농가 및 취약지역 소독 실시

■ 농가방문 및 소독 요령

- 시·군별 축협방제단은 대상농가에 대해 방역요원을 동원하여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순회하며 방문 소독을 실시
- 대상농가에 대해 소독목적 및 필요성 등을 지도·홍보
- 축종별 소독 요령
 - 소 : 농장입구, 축사주변 등의 외부, 축사 내부, 농장차량 바퀴 등
 - 기타축종 : 농장입구, 축사주변 등 외부, 농장차량 바퀴 등
 - 방역요원은 소독 실시 후 당해 농가에 비치된 별지서식 “소독실시기록부”에 소독상황을 기록
 - 방역요원은 별지서식 “축사방문소독실시대장”에 당해 농가의 소독상황을 기록하고 농가의 서명을 받되, 부재중일 경우 소독확인서(스티커)를 발급 배부
 - 소독이 완료되면 일회용 방역복(덧신, 마스크, 두건, 장갑 등)을 갈아입은 후 사용한 일회용 방역복은 밀봉 폐기하고 다음 농가로 이동(단, 농가에 진입하지 않고 입구나 주변도로를 소독한 경우에는 신발, 호스 및 소독차 바퀴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 후 이동 가능)
 - 동일지역의 경우에도 지리적 위치, 격리 정도, 차단방역 수준 등을 고려하여 소독 횟수와 소독약의 양을 달리하여 소독할 수 있음

■ 전통시장 소독 요령

- 관할지역 담당 공무원의 지도로 소독을 실시
- 전통시장 방문 전에 업주나 시장관리인을 통해 가금을 일제 출하(all-out)토록 하고, 소독 시에는 가금이 접촉한 케이지나 어리장 등을 충분히 젖도록 소독하고, 가금이 운반되는 진·출입로와 주변을 철저히 소독
 - 방역요원은 소독 실시 후 별지 서식의 '공동방제단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상황을 기록하고, 전통시장 업주나 시장관리인에게 서명을 받음
 - 소독이 완료되면 일회용 방역복(덧신, 마스크, 두건, 장갑 등)을 갈아입은 후 사용한 일회용 방역복은 밀봉폐기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
 - 동일지역의 경우에도 지리적 위치, 격리 정도, 차단방역 수준 등을 고려하여 소독 횟수와 소독약의 양을 달리하여 소독할 수 있음

■ 밀집사육지역 주변 소독 요령

- 관할지역 담당공무원의 지도로 소독을 실시
- 밀집사육지역 진·출입로, 인접 주요 도로 및 농장 주변을 소독차를 이용하여 충분히 소독
 - 방역요원은 소독 실시 후 별지 서식의 '공동방제단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상황을 기록하고, 농가 또는 밀집사육지역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 소독이 완료되면 일회용 방역복(덧신, 마스크, 두건, 장갑 등)을 갈아입은 후 사용한 일회용 방역복은 밀봉 폐기하고 다음 농가로 이동(단, 농가에 진입하지 않고 입구나 주변도로를 소독한 경우에는 신발, 호스 및 소독차 바퀴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 후 이동 가능)
 - 동일지역의 경우에도 지리적 위치, 격리 정도, 차단방역 수준 등을 고려하여 소독 횟수와 소독약의 양을 달리하여 소독할 수 있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해당 농장 소독 요령

- 관할지역 담당공무원의 지도로 소독을 실시
 - KAHIS에서 전산상으로 조회하여 대상자 입국 여부를 매일 확인
 - 농장 소재지 축협 공동방제단이 대상자 입국 후 1주일 이내에 방문 소독을 실시
- 농장 진·출입로, 축산차량 실내 및 바퀴, 축사관리소, 대상자 농장내 이동동선 등을 따라 소독차를 이용하여 충분히 소독

- 방역요원은 소독 실시 후 별지 서식의 ‘공동방제단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상황을 기록하고, 대상자의 서명을 받음
- 소독이 완료되면 일회용 방역복(덧신, 마스크, 두건, 장갑 등)을 갈아입은 후 사용한 일회용 방역복은 밀봉 폐기하고 다음 농가로 이동(단, 농가에 진입하지 않고 입구나 주변도로를 소독한 경우에는 신발, 호스 및 소독차 바퀴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 후 이동 가능)

■ 기타 소독활동 지원

- 기존 질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인한 추가 소독이 필요하거나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AI 등 질병이 발생한 지자체의 긴급 요청 등으로 필요한 추가 소독활동에 공동방제단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독활동의 범위·횟수 등은 당해 지자체와 관할 축협이 협의하여 결정
- 다만, 시군별 공동방제단의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부득이 예산초과 할 경우 초과비용은 당해 지자체에서 지원
 - * 기타 소독활동 지원시 연간 소규모농가 등의 정기 소독실적에 합산 가능
- 기타 소독활동을 하는 경우, 지자체 소독담당자는 추가 소독이 필요한 대상농가, 소독차량의 이동동선 파악, 일일 소독횟수 등의 소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축협에 사전 통보할 것
- * 특히, 소독차량별로 운영기간 등을 사전에 명확히 공지하여 효율적인 소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 지자체 및 농협경제지주는 질병발생 관련 감수성 가축농장 소독이 누락(예: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음에도 소독차량이 양돈농장 위주로 편성되는 등)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소독 후 실적입력

- 방역요원은 당해 농장 소독 실시사항을 3일 이내에 KAHIS 시스템에 등록

(마) 공동방제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등

■ 시장·군수(시·도지사)

-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은 지방비를 확보·지원
 - 필기구, 기록대장, 방역복, 장화, 장갑 등
- 공동방제단 운영 및 가축방역 관련 홍보물을 제작, 공동방제단을 통해 농가에 배포하는 등 자체 홍보 실시

■ 축산관련 단체

- 시·군과 협조하여 소독장비 및 인력 등을 최우선적으로 지원

다. 공동방제단 사업비 배정·지급 및 정산

1. 사업비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 지급 통보
- 농협(축발기금사무국)은 해당 시·도에 보조금 지급
- 시·도는 관할 시·군에, 시·군은 사업추진 축협에 사업비 배정내역을 통보
- 시·군은 사업비를 사업수행 지역 축협에 지급

※ 시·도는 배정된 공동방제단 사업비 내에서 시·군별로 자체 조정 가능

- 시·군별 사업비 배정결과 보고 : 1.31까지

● 보고체계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에는 사본 송부)

● 보고서식(Excel 작성 제출)

(단위 : 개소, 명, 천원, 천 l)

시·군	개소수	방역 인원	공동방제단			사업비 항목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인건비	소독장비 임대료	소독 약품	기타 운영비	

2. 사업비 지급

- 시·군은 공동방제단 사업비를 분기별로 사업수행 축협에 지급.
- 축협은 수령한 사업비를 운영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인건비 지급대장”에 지급상황을 기록·보관

3.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총결산은 연도 말일자로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

〈분기별 정산〉

- 축협은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내역을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은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매 분기 말일까지 시·도에 보고
 - * 정산서류에는 소득실적, 항목별 지급금액, 법적지출증빙서 또는 계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하여야 함
- 시·도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협중앙회(친환경방역부) 송부 및 농식품부에 보고

〈연도말 정산〉

- 축협은 연도말 최종 사업비 집행결과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은 집행결과를 정리 및 최종 확정하여 12월 말일까지 시·도에 보고
 - 시·도는 시·군의 운영비 정산결과 보고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 미집행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에 통보하고, 잔액을 반납조치
- 시·도는 연도말 국비 및 지방비 최종 사업비 집행결과를 익년 1월 10일까지 농협중앙회(친환경방역부) 송부 및 농식품부에 보고

라. 공동방제단 사업추진 실적보고

1. 소득실적 보고 : 매월 익월 5일 이내

- 보고체계 : 축협 → 시·군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
- 시·군별 공동방제단 소득실적 보고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전산입력으로 같음할 수 있음
- 보고서식(Excel 작성 제출)

(단위 : 호, 명, 천 l)

시 군	대상농가수	축협명	월 공동방제단 소득실적				비 고
			방제단 운영	방역요원명	소득농가수	소득약 사용	

2. 공동방제단 운영결과 보고 : 매 분기 익월 10일 이내

■ 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축협의 공동방제단 운영실적(채용인원, 소독점검 실적, 교육실적, 자체 운영 점검 실적 등)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3. 연도말 최종 사업결과 보고 : 익년 1월 31일 까지

■ 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부

마. 공동방제단사업 실태 및 농가 소독실태 점검

1. 시·도

■ 시·도지사는 현장점검 책임자를 지정, 운영

■ 시·군별 현장점검자를 동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모든 시·군별로 2개소 이상을 점검(연 1회이상)

- 방제단별 방역요원과 예산의 지급상황 등을 실태 점검
- 농가의 소독실시기록부 작성여부 확인
- 가금거래 전통시장, 밀집사육단지 등에 대한 공동방제단 소독실태 점검

2. 시·군

■ 시장·군수는 방제단 별로 대상농가 2개 이상을 무작위로 방문, 소독실태 점검(소독실시기록부 등 확인)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방제단의 비용집행 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3.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반기 단위로 시·도별로 2개소 이상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방제단 운영 실태를 현지 방문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토록 지시한다.

4. 점검결과, 후속조치

■ 점검결과 소독 미실시(소독실시 기록부 미 기록 및 미비치 등) 및 시설 미운영 농가, 업체 등은 확인서를 받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 시장·군수는 공동방제단 운영 장비 및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한 공동방제단은 강력한 제재조치 실시

〈 별지 제1호서식 〉

소규모 농가 명단 현황

□ 마을단위 : 시·군 읍·면 리

□ 소규모 농가 명단 및 현황

일련 번호	농가명	주 소 (전화번호)	사육가축 및 두수								비 고
			한육우	젖소	사슴	염소	닭	오리	기타	계	
		리 번지	두								
계											

※ 가급적 축종별 단위로 구분 작성

〈 별지 제3호서식 〉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공동방제단 소독 실시대장

□ 소속 실시자 :

□ 소득 내역

일련 번호	농가명	주 소 (전화번호)	축종 및 사육두수		특이사항	농가확인 (서 명)
			축 종	두수		
계						

- 210 -

〈 별지 제5호서식 〉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급대장

□ 시·군명 :

□ 추월명 :

작성자 : (인)

[illegible]

IV

가축백신지원 사업

(농특회계 : 예산과목 3940-342)

1. 사업 총괄표	215
2. 사업별 추진개요	216
1) 말 예방백신 등 지원 사업	216
2)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	217
3) 렘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사업	221
3. 세부사업 시행내역	222
4.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232



1 사업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23년도 사업비 (국 비)	'24년도 사업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53,021,954	132,051,376	65,264,000	32,668,422	34,118,954
□ 말 예방백신 등 지원	1,719,000	1,910,000	1,337,000	-	573,000
□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51,302,954	111,482,155	48,198,000	29,738,201	33,545,954
○ 소 구제역백신(전업농)	3,836,002	10,554,440	3,694,053	1,583,167	5,277,220
○ 소 구제역백신(소규모)	5,274,510	4,601,578	3,221,104	1,380,474	
○ 돼지 구제역백신(전업농)	22,234,147	56,537,468	19,788,114	8,480,620	28,268,734
○ 돼지 구제역백신(소규모)	4,878,254	5,561,940	3,893,358	1,668,582	
○ 염소, 사슴 등 구제역 백신	1,232,620	1,598,350	1,118,845	479,505	
○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2,089,887	3,518,296	1,759,148	1,759,148	
○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기술비	7,194,466	15,605,304	7,802,652	7,802,652	
○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기술비	3,982,870	7,573,160	3,786,580	3,786,580	
○ 구제역 예방약류 조달수수료	86,278	82,511	82,511	-	
○ 구제역 채혈비	493,920	3,996,390	1,198,917	2,797,473	
○ 유보액	-	1,852,718	1,852,718		
□ 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	18,659,221	15,729,000	2,930,221	-
○ 림피스킨병 백신	-	12,786,000	12,786,000	-	-
○ 소 림피스킨병 예방백신 접종기술비	-	5,860,442	2,930,221	2,930,221	-
○ 유보액	-	12,779	12,779	-	-

2 사업별 추진개요

1 말 예방백신 등 지원 사업(3940-342-320-01, 민간경상보조)

■ 사업목적

- 국내 말 산업의 성장에 따른 말 전염병 발생위험에 대비하여 예방백신 접종과 전염병 모니터링을 통해 전국단위의 말 방역체계를 구축
- 말 전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말 산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육성기반을 조성

■ 사업내용

- 사업시행 : 한국마사회, 농림축산검역본부
- 지원내용 : 말 예방백신 지원, 말 전염병 모니터링, 말 전염성자궁염(CEM) 일제조사
 - 말 예방백신 지원 : 수의사를 활용하여 전국 말 18,000두에 예방백신 3종* 접종
 - * 말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선역
 - 말 전염병 모니터링 : 전국 말 1,300여두를 대상으로 하여 주요 말 전염병 9종* 질병에 대한 검사(농림축산검역본부 협조)
 - *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웨스트나일열, 일본뇌염, 말인플루엔자, 말파이로플라즈마, 슈라
 - 전국 더러브렛 번식마 2,200여두를 대상으로 말 전염성자궁염(CEM) 검사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비(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910,000	1,337,000	-	573,000

* 지원비율 : 국비 70%, 자부담 30%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실시요령을 한국마사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달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하여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4.2월) 후 승인을 받아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2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3940-342-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세부 요령은 '2024년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 실시요령'에 따름

1. 구제역 예방약

■ 사업목적

- 구제역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약 지원

■ 사업개요

- 주 관 : 시·도(시·군·구)
- 지원대상 :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사육농가
- 지원내용 : 구제역 예방약(백신) 지원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비(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78,853,776	31,715,474	13,592,348	33,545,954

* 지원비율 : (소규모) 국비 70%, 지방비 30% (전업농) 국비 35%, 지방비 15%, 자부담 50%
단, 염소·사슴 등 기타 우제류 사육 농가는 규모에 상관없이 소규모 농가로 간주

● 사업량 확정 및 제품 선정·공급·보관 등 사업실시 요령

- 사업량 확정 : 시·도는 시·군별 농가수·사육두수 및 구제역 발생 동향 등을 고려하여 예방약 공급 계획을 확정

- 제품 선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후 제품 선정

* 협의회 구성원: 방역본부 방역사, 공·개업 수의사, 지역 축협장, 농가 대표 등

※ 정부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제품을 선정하는 경우, 지방비 투입 또는 농가 자부담 조치

- 약품 공급

- (소규모농가) 지자체에서 정부 조달을 통해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배부

* 시·군·구는 가축방역관, 공·개업 수의사 등을 통해 약품을 공급하고, 농가별 공급 현황을 기록·관리 (냉장보관 시설을 갖춘 지역에 한하여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배분도 가능)

- (전업농가) 농협(축협동물병원)이 백신 공급사와 정부 조달계약단가(또는 공급가)에 따라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판매)하고 농가가 소재한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신청

2. 접종 시술비

■ 사업목적

- (소) 사육 마릿수가 50마리 미만인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수의사를 동원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염소) 사육 마릿수가 300마리 미만인 농가를 대상으로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방목 사육하는 특성상 예방접종 시 별도의 포획인력 필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289천두분(소 2,601천두, 염소 688천두)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23,178,464	11,589,232	11,589,232	-
소	15,605,304	7,802,652	7,802,652	-
염소	7,573,160	3,786,580	3,786,580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소) 6천원/두(국비 3천원, 지방비 3천원)
(염소) 11천원/두(국비 5.5천원, 지방비 5.5천원) * 접종비 6천원, 포획비 5천원

3. 스트레스 완화제

■ 사업목적

- 예방접종에 의한 식육부진 등의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량 : 10,662천두분
-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비(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3,518,296	1,759,148	1,759,148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대상 : 소규모농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소규모농가 기준 : 소 50두 미만, 돼지 1천두 미만 사육 / 염소·사슴 등 기타 우제류 농가는 사육 규모와 관계없이 소규모농가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
 - 시·군·구에서 구제역백신 접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업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 제품 선정 : 조달청(나라장터)에 계약·등록된 물품 중 구제역백신 접종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음이 명시된 제품(주사제, 산제 등)
 -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더라도 사실상 동일 제품(등록물품과 동일 성분에 용량만 다른 경우 등)인 경우 구매·지원 가능
- 지원 방법 : 시·군·구는 농가별 희망 물품 및 소요량을 파악한 후 조달청(나라장터)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 백신접종 시기에 맞춰 농가에 공급

4. 구제역 채혈비

■ 사업목적

- 구제역 혈청검사(NSP, SP)를 위해 공수의 등 민간 수의사를 동원하여 시료 채취(채혈)를 실시하는 비용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00천두분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비(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3,996,390	1,198,917	2,797,473	-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70%

- 지원대상 : 소 전업규모 사육 농가
 - 구제역 혈청 예찰(NSP, SP)을 목적으로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 한하여 동원 수의사에게 보조금을 지급
 - 소 소규모농가 및 돼지, 염소 등 타 축종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구제역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 후 채혈비 지급 가능
- 지원 금액
 - 결핵, 브루셀라 등 다른 가축전염병 관련 검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로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한 경우 : 5,000원/마리(두)
 - 구제역 혈청 예찰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해당 시료가 구제역 외에 타 질병의 진단 등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 : 10,000원/마리(두)

* 해당 시료로 채혈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른 가축전염병을 검사하는 경우도 포함

3 렘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사업(3940-342-330-01/210-11, 자치단체경상보조/재료비)

1. 렘피스킨병 예방약(210-11, 재료비)

■ 사업목적

- 렘피스킨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약 지원

■ 사업개요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 지원대상 : 소 사육 농가
- 지원내용 : 렘피스킨병 예방약(백신) 지원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비(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12,786,000	12,786,000	-	-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경쟁입찰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계약·구매 후 각 시·군의 소 사육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배부

2. 접종 시술비(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목적

- 고령이거나 영세하여 농장주 스스로 백신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소 사육 농가(50두 미만 사육)를 대상으로 수의사를 동원하여 백신접종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172천두분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비(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5,860,435	2,930,221	2,930,221	-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5천원/두(국비 2.5천원, 지방비 2.5천원)

3 세부사업 시행내역

■ 시·도별 국비 예산

①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단위 : 천원)

시 도	총 계	구제역 예방약					
		소 계	소 전업농	소 소규모	돼지 전업농	돼지 소규모	염소·사슴 기타우제류
계	46,345,282	31,715,474	3,694,053	3,221,104	19,788,114	3,893,358	1,118,845
서울	1,190	1,190	-	262	-	-	928
부산	38,409	19,705	732	2,975	1,361	11,900	2,737
대구	322,585	216,184	26,600	29,507	145,908	9,520	4,649
인천	179,161	95,733	22,610	15,470	19,530	29,155	8,968
광주	36,382	24,168	3,213	4,284	9,450	5,950	1,271
대전	36,899	17,047	4,005	5,236	-	4,760	3,046
울산	384,831	177,832	24,605	56,752	63,000	22,332	11,143
세종	382,731	257,033	34,090	27,811	155,610	35,000	4,522
경기	6,024,995	4,781,070	505,400	249,900	3,213,000	737,800	74,970
강원	2,420,517	1,423,466	217,461	228,155	782,569	127,105	68,176
충북	3,005,832	1,927,081	249,293	185,747	1,179,306	166,726	146,009
충남	8,538,028	6,637,240	498,750	439,830	4,662,000	909,574	127,086
전북	5,737,882	3,928,632	521,080	338,480	2,263,590	610,134	195,348
전남	6,834,535	4,247,178	514,141	559,300	2,614,500	327,457	231,780
경북	6,922,048	4,251,007	750,055	716,850	2,268,000	368,900	147,202
경남	4,321,333	2,716,952	274,138	336,074	1,654,290	369,958	82,492
제주	1,157,924	993,956	47,880	24,471	756,000	157,087	8,518

(단위 : 천원)

시 도	접종 시술비			스트레스 완화제	구제역 예방약류 조달 수수료	구제역 채혈비
	소 계	(소) 예방접종 시술비	(염소) 포획·예방접종 시술비			
계	11,589,232	7,802,652	3,786,580	1,759,148	82,511	1,198,917
서 울	-	-	-	-	-	-
부 산	16,900	6,450	10,450	1,650	154	-
대 구	91,281	74,385	16,896	6,600	408	8,112
인 천	71,795	44,295	27,500	8,250	503	2,880
광 주	10,989	10,989	-	1,155	70	-
대 전	19,000	13,500	5,500	743	109	-
울 산	184,500	135,000	49,500	11,550	821	10,128
세 종	98,900	78,000	20,900	16,500	698	9,600
경 기	847,500	600,000	247,500	214,500	10,514	171,411
강 원	815,320	658,614	156,706	87,450	4,281	90,000
충 북	834,802	422,577	412,225	148,500	5,449	90,000
충 남	1,427,790	956,517	471,273	297,000	14,598	161,400
전 북	1,462,021	794,772	667,249	181,500	10,785	154,944
전 남	2,250,131	1,381,725	868,406	181,500	10,556	145,170
경 북	2,123,000	1,650,000	473,000	280,500	12,541	255,000
경 남	1,260,753	912,828	347,925	247,500	8,756	87,372
제 주	74,550	63,000	11,550	74,250	2,268	12,900

② 렘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접종 시술비)

(단위 : 두, 천원)

시 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비고
계	1,172,087	2,930,221	2,930,221	□ 지원대상 :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비용 : 5,000원/두 ○ 국비 2,500원, 지방비 2,500원 * (지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서 울	-	-	-	□ 실시요령 ○ 수의사를 동원한 렘피스킨병 예방접종 지원 ○ 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 대장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후 수의사에 시술비 지급 *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개체별 접종 내역을 철저히 확인할 것
부 산	1,159	2,898	2,898	
대 구	10,350	25,875	25,875	
인 천	7,147	17,868	17,868	
광 주	2,355	5,888	5,888	
대 전	2,371	5,928	5,928	
울 산	21,139	52,848	52,848	
세 종	10,100	25,250	25,250	
경 기	87,234	218,085	218,085	
강 원	86,513	216,283	216,283	
충 북	75,104	187,760	187,760	
충 남	148,622	371,555	371,555	
전 북	124,000	310,000	310,000	
전 남	223,672	559,180	559,180	
경 북	245,000	612,500	612,500	
경 남	118,231	295,578	295,578	
제 주	9,090	22,725	22,725	

■ 예산 세부 현황(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① 구제역 예방약(백신)

■ 소 구제역 예방약

(단위 : 두, 천원)

시 도	구제역(전업규모 농가)				구제역(소규모 농가)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5,554,968	3,694,053	1,583,167	5,277,220	2,706,810	3,221,104	1,380,474
서울시	-	-	-	-	220	262	112
부산시	1,100	732	314	1,045	2,500	2,975	1,275
대구시	40,000	26,600	11,400	38,000	24,795	29,507	12,646
인천시	34,000	22,610	9,690	32,300	13,000	15,470	6,630
광주시	4,832	3,213	1,377	4,590	3,600	4,284	1,836
대전시	6,023	4,005	1,717	5,722	4,400	5,236	2,244
울산시	37,000	24,605	10,545	35,150	47,691	56,752	24,322
세종시	51,263	34,090	14,610	48,700	23,371	27,811	11,919
경기도	760,000	505,400	216,600	722,000	210,000	249,900	107,100
강원도	327,009	217,461	93,198	310,659	191,727	228,155	97,781
충북도	374,877	249,293	106,840	356,133	156,090	185,747	79,606
충남도	750,000	498,750	213,750	712,500	369,605	439,830	188,499
전북도	783,579	521,080	223,320	744,400	284,437	338,480	145,063
전남도	773,145	514,141	220,346	734,488	470,000	559,300	239,700
경북도	1,127,903	750,055	321,452	1,071,508	602,395	716,850	307,221
경남도	412,237	274,138	117,488	391,625	282,415	336,074	144,032
제주도	72,000	47,880	20,520	68,400	20,564	24,471	10,488

* 산출 근거 : 전업농(1,900원/두, 국비35%, 지방비15%, 자부담50%), 소규모(1,700원/두, 국비70%, 지방비30%)

 돼지 구제역 예방약

(단위 : 두, 천원)

시 도	구제역(전업규모 농가)				구제역(소규모 농가)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31,409,704	19,788,114	8,480,620	28,268,734	3,271,730	3,893,358	1,668,582
서울시	-	-	-	-	-	-	-
부산시	2,160	1,361	583	1,944	10,000	11,900	5,100
대구시	231,600	145,908	62,532	208,440	8,000	9,520	4,080
인천시	31,000	19,530	8,370	27,900	24,500	29,155	12,495
광주시	15,000	9,450	4,050	13,500	5,000	5,950	2,550
대전시	-	-	-	-	4,000	4,760	2,040
울산시	100,000	63,000	27,000	90,000	18,766	22,332	9,571
세종시	247,000	155,610	66,690	222,300	29,412	35,000	15,000
경기도	5,100,000	3,213,000	1,377,000	4,590,000	620,000	737,800	316,200
강원도	1,242,173	782,569	335,387	1,117,956	106,811	127,105	54,474
충북도	1,871,914	1,179,306	505,417	1,684,723	140,106	166,726	71,454
충남도	7,400,000	4,662,000	1,998,000	6,660,000	764,348	909,574	389,817
전북도	3,593,000	2,263,590	970,110	3,233,700	512,718	610,134	261,486
전남도	4,150,000	2,614,500	1,120,500	3,735,000	275,174	327,457	140,339
경북도	3,600,000	2,268,000	972,000	3,240,000	310,000	368,900	158,100
경남도	2,625,857	1,654,290	708,981	2,363,271	310,889	369,958	158,553
제주도	1,200,000	756,000	324,000	1,080,000	132,006	157,087	67,323

* 산출 근거: 전업농(1,800원/두, 국비35%, 지방비15%, 자부담50%), 소규모(1,700원/두, 국비70%, 지방비30%)

 기타우제류(염소, 사슴 등) 구제역 예방약

(단위 : 두, 천원)

시 도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940,206	1,118,845	479,505
서울시	780	928	398
부산시	2,300	2,737	1,173
대구시	3,906	4,649	1,992
인천시	7,536	8,968	3,843
광주시	1,068	1,271	545
대전시	2,560	3,046	1,306
울산시	9,364	11,143	4,776
세종시	3,800	4,522	1,938
경기도	63,000	74,970	32,130
강원도	57,291	68,176	29,218
충북도	122,697	146,009	62,575
충남도	106,795	127,086	54,465
전북도	164,158	195,348	83,721
전남도	194,773	231,780	99,334
경북도	123,699	147,202	63,086
경남도	69,321	82,492	35,354
제주도	7,158	8,518	3,651

* 산출 근거 : 1,700원/두(국비70%, 지방비30%)

2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소)

(단위 : 두, 천원)

시 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비고
계	2,600,884	7,802,652	7,802,652	□ 지원대상 :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서 울	-	-	-	□ 지원기간 : 연 중
부 산	2,150	6,450	6,450	□ 지원비용 : 6,000원/두
대 구	24,795	74,385	74,385	○ 국비 3,000원, 지방비 3,000원
인 천	14,765	44,295	44,295	* (지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광 주	3,663	10,989	10,989	□ 실시요령
대 전	4,500	13,500	13,500	○ 수의사를 동원한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울 산	45,000	135,000	135,000	○ 지자체는 대상 농가 및 사육현황을 매월
세 종	26,000	78,000	78,000	파악하여 접종계획 수립*
경 기	200,000	600,000	600,000	* 일제접종 기간 내에 모든 개체를 접종할 수 있도록
강 원	219,538	658,614	658,614	접종 일정 관리
충 북	140,859	422,577	422,577	○ 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 대장 및 관련 증빙자료,
충 남	318,839	956,517	956,517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내 구제역백신 접종
전 북	264,924	794,772	794,772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수의사에 시술비
전 남	460,575	1,381,725	1,381,725	지급
경 북	550,000	1,650,000	1,650,000	*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개체별 접종 내역을
경 남	304,276	912,828	912,828	철저히 확인할 것
제 주	21,000	63,000	63,000	

③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염소)

(단위 : 두, 천원)

시 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비고
계	688,469	3,786,580	3,786,580	□ 지원대상 : 염소 300두 미만 사육농가
서 울	-	-	-	□ 지원기간 : 연 중
부 산	1,900	10,450	10,450	□ 지원비용 : 11,000원/두
대 구	3,072	16,896	16,896	* 접종시술비 6,000원, 포획비 5,000원
인 천	5,000	27,500	27,500	○ 국비 5,500원, 지방비 5,500원
광 주	-	-	-	* (지원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대 전	1,000	5,500	5,500	□ 실시요령
울 산	9,000	49,500	49,500	○ 수의사 및 포획단을 동원한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세 종	3,800	20,900	20,900	○ 지자체는 대상 농가 및 사육현황을 매월 파악하여
경 기	45,000	247,500	247,500	접종계획 수립*
강 원	28,492	156,706	156,706	* 일제접종 기간 내에 모든 개체를 접종할 수 있도록
충 북	74,950	412,225	412,225	접종 일정 관리
충 남	85,686	471,273	471,273	○ 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 대장 및 관련 증빙자료
전 북	121,318	667,249	667,249	등을 확인한 후 수의사 및 포획단에 포획·접종
전 남	157,892	868,406	868,406	시술비 지급
경 북	86,000	473,000	473,000	*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별 접종 내역을 철저히
경 남	63,259	347,925	347,925	확인할 것
제 주	2,100	11,550	11,550	** 접종시술비와 포획비 중복 지급 불가(수의사가 포획단 없이
				접종한 경우 접종시술비만 지급)

4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단위 : 두, 천원)

시 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비 고
계	10,661,500	1,759,148	1,759,148	□ 지원대상 : 우제류 사육 농가
서 울	-	-	-	□ 산출근거 : 330원/두 (국비 165, 지방비 165)
부 산	10,000	1,650	1,650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대 구	40,000	6,600	6,600	□ 실시요령
인 천	50,000	8,250	8,250	○ 소규모농가* 지원을 원칙으로 함
광 주	7,000	1,155	1,155	* 소 50두 미만, 돼지 1천두 미만 사육 농가 (염소·사슴 등 기타 우제류 농가는 사육 규모와 관계없이 소규모농가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
대 전	4,500	743	743	○ 지자체에서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제품 및 공급물량 결정
울 산	70,000	11,550	11,550	* 축종별 사육두수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적정물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
세 종	100,000	16,500	16,500	○ 지자체에서 정부 조달계약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여 농가에 공급(필요시 생산자단체를 통해 농가에 공급 가능)
경 기	1,300,000	214,500	214,500	- 조달청(나라장터)에 계약·등록된 물품 중 구제역백신 접종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음이 명시된 제품만 지원 가능(주사제, 산제 등)
강 원	530,000	87,450	87,450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사실상 동일 제품(등록 물품과 동일 성분 용량만 다른 경우 등)인 경우 구매·지원 가능
충 북	900,000	148,500	148,500	** 국비 지원분 외에 소요량은 지방비를 자체 확보하여 지원 가능
충 남	1,800,000	297,000	297,000	
전 북	1,100,000	181,500	181,500	
전 남	1,100,000	181,500	181,500	
경 북	1,700,000	280,500	280,500	
경 남	1,500,000	247,500	247,500	
제 주	450,000	74,250	74,250	

5 구제역 채혈비

(단위 : 두, 천원)

시 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비 고
계	399,639	1,198,917	2,797,473	□ 지원대상 : 소 전업규모 농가 * 구제역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 소규모농가 및 돼지, 염소 등 타 축종 사육 농가 대상으로도 지원 가능
서 울	-	-	-	□ 단가
부 산	-	-	-	○ 10,000원/두 (국비 3,000, 지방비 7,000)
대 구	2,704	8,112	18,928	- 구제역 혈청 예찰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해당 시료가 구제역 외에 타 질병의 진단 등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
인 천	960	2,880	6,720	* 해당 시료로 채혈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른 가축전염병을 검사하는 경우 포함
광 주	-	-	-	○ 5,000원/두(국비 1,500, 지방비 3,500)
대 전	-	-	-	-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다른 가축전염병 관련 검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로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한 경우
울 산	3,376	10,128	23,632	□ 실시요령
세 종	3,200	9,600	22,400	○ 구제역 혈청 예찰(NSP, SP)을 목적으로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 한하여 동원된 수의사에게 보조금 지급
경 기	57,137	171,411	399,959	- 시·군·구는 시료 채취를 요청한 농장의 혈청검사 결과를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확인 농장 정보 등 이상 없는 경우 수의사에 보조금 지급
강 원	30,000	90,000	210,000	* 국비 지원분 외에 소요량은 지방비를 자체 확보하여 지원 가능
충 북	30,000	90,000	210,000	
충 남	53,800	161,400	376,600	
전 북	51,648	154,944	361,536	
전 남	48,390	145,170	338,730	
경 북	85,000	255,000	595,000	
경 남	29,124	87,372	203,868	
제 주	4,300	12,900	30,100	

4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 사업비 배정

- 국고 송금 : 연간 배정계획에 따라 국고 교부(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

■ 자금 집행

-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집행하고 보조율에 맞추어 지방비·자부담액 동시 집행
- 시·도별 여건에 따른 방역 조치로 인한 추가 소요 발생 시 지방비에서 부담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시·도는 2025.1.17.까지 별첨 서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에 사업 정산 보고 및 추진 실적 제출

〈 별첨 1 〉

2024년 가축백신지원사업(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 구제역 예방약 등약품 공급

구 분	연간 계획 (A)	누 계	
		공급량 (C)	공급율 (C/A)
소 전업농	두		
소 소규모			
돼지 전업농			
돼지 소규모			
염소, 사슴 등 기타우제류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계			

☐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구 분	연간 계획 (A)	누 계	
		실시 두수 (C)	공급율 (C/A)
	두		
계			

2. 사업비 집행실적

구 분		사업비 배정				집행 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구 제 역 예 방 약	소 전업농								
	소 소규모								
	돼지 전업농								
	돼지 소규모								
	염소, 사슴 등 기타 우제류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기술비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기술비 구제역 예방약류 조달 수수료 구제역 채혈비									
계									

〈 별첨 2 〉

2024년 가축백신지원사업(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 럼피스킨병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연간 계획 (A)	누 계	
	실시 두수 (B)	공급율 (B/A)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구 분	사업비 배정				집행 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소) 럼피스킨병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V

살처분보상금 사업

(농특회계 : 예산과목 3940-337)

- 1. 살처분보상금 239
- 2. 생계 및 소득안정 240



1 살처분보상금

■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물건의 폐기(살처분 등)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
- 가축방역 사업 추진과 관련,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투약 실시로 인해 죽거나 부상당한 동물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동물의 태아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지급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 국가는 다음 각호의 가축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살처분·도태 처리한 가축 및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2.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

■ 지급기준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름

■ 사 업 비 : 80,215백만원(국비) (국비 80%, 지방비 20%)

■ 추진체계

- 매월 소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시·도) → 지출한도액 배정(농식품부) → 농가별 살처분보상금 계좌입금(시·군·구)
- 시도별 살처분보상금 이월액 및 불용액 파악 보고(11월초)

■ 지급절차

- 신속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의 살처분 즉시 보상금 추정액의 50%까지 가지급금으로 우선 지급
- 가지급금 지급 후, 보상금 평가반 구성·평가금액 결정 및 농가의 보상금 지급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나머지 금액을 정산
- 살처분한 소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폐사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2 생계 및 소득안정

■ 사업목적

-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생계안정비용 지원
- 이동제한 또는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소득안정비용 지원

■ 지급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지급기준 : 농식품부 고시 또는 사업 지침에 따름

■ 사 업 비 : 1,100백만원(국비) (국비 70%, 지방비 30%)

■ 추진체계

- 소요액을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시·군·구) → 소요액 검증 후 농식품부에 제출(시·도) → 시·도에 예산 교부(농식품부) → 시·도 및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 후 농가 지원

■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피해 농가에 생계 및 소득안정비용이 신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 등 사업 적기 추진
-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계 및 소득안정비용 지원 시 검증 철저
- 농가에 지원 완료 후 농식품부에 해당사항 보고

VI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 (농특회계 : 예산과목 3940-341)

1. 사업 총괄표	243
2.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244
3.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	246
4. 사업 세부내역	249
5. 사업비 집행 및 실적 보고	254



1 사업 총괄표

■ 세부사업: 가축사체처리지원(3940-341)

■ 내역사업(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 ①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②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 ①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② 살처분가축처리 장비 ③ 가축폐사체 수거함
④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23년 사업비 (국 비)	'24년도 사업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9,769,000	8,533,334	2,930,000	3,670,000	1,933,334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4,855,000	3,700,000	1,480,000	2,220,000	-
○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155,000	200,000	80,000	120,000	-
○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4,700,000	3,500,000	1,400,000	2,100,000	-
□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4,914,000	4,833,334	1,450,000	1,450,000	1,933,334
○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2,400,000	3,000,000	900,000	900,000	1,200,000
○ 살처분가축처리 장비	540,000	1,800,000	540,000	540,000	720,000
○ 가축폐사체 수거함	1,176,000	26,667	8,000	8,000	10,667
○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798,000	6,667	2,000	2,000	2,667

2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 세부사항은 「2024년도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 지침」에 따름

■ 사업목적

- (사후관리) 관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관리 중인 매몰지 관리·정비 및 소규모 매몰지 발굴, 현장조사·점검 실시를 통한 매몰지 환경관리 강화
- (발굴·복원) 환경오염 우려 매몰지를 발굴·복원 처리하여 민원 해소 및 가축전염병 전파방지

■ 사업주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사업대상

1) 매몰지 발굴·복원사업

- '10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 중 매몰된 사체의 분해를 확인하지 않고 관리해제된 모든 매몰지
 -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매몰지부터 우선 발굴·복원
 - 소규모 매몰지나 사체부패가 용이한 곳에 매몰된 경우는 시굴조사로 사체 분해 정도 확인 후 소멸처리 가능(사전협의 및 보고는 발굴·복원 절차와 동일)
- 관리 중인 매몰지 중 침출수 유출 우려 등 “가축매몰지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예외적으로 발굴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
- 발굴·복원 대상 매몰지 선정 시 우선순위는 아래 기준을 따르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음
 - ① 환경오염 우려 매몰지 ② 민원 매몰지(축주 신청 또는 인근주민 신청 등)
 - ③ 일반 매몰지 ④ 미생물처리 매몰지 및 호기호열 매몰지 ⑤ FRP저장조, 액비저장조 및 기타저장조 매몰지 ⑥ 지자체 발굴 필요 매몰지 등

2) 매몰지 사후관리사업

- 현재까지 가축전염병 발생 조성된 가축매몰지 중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거나 악취 제거 등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매몰지

* 침출수 유출이나 유실·붕괴가 우려되거나, 민원 관련 매몰지를 우선 사업대상으로 선정

■ 사업비 및 지원비율

- 지원비율 : 국비 40%, 지방비 60%

1) 매몰지 발굴·소멸 사업

- 사업비 : 3,500백만원 (국비보조 1,400, 지방비 2,100)
- * 매몰지 규모, 형태 등에 따라 개소당 비용이 다르므로 사업량과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70개×50,000천원(개소당 국비 20,000, 지방비 30,000)

2)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

- 사업비 : 200백만원 (국비보조 80, 지방비 120)
- * 매몰지 규모, 형태 등에 따라 개소당 비용이 다르므로 사업량은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32개×6,250천원(개소당 국비 2,500, 지방비 3,750)

■ 지원대상

1) 매몰지 발굴·소멸 사업

- 매몰지 발굴 : 발굴 준비작업, 주변 소독 및 작업자 안전조치, 발굴작업, 잔존물 분리 등
- * 매몰지 내 사체분해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나 부분 발굴에 드는 비용도 포함
- 잔존물 처리 : 매몰지 내 잔존 사체, 플라스틱, 비닐, 침출액 등을 처리하거나, 랜더링·미생물분해 등으로 처리 후 남은 잔재물 적정 처리
- 토양복원 : 침출수 유출 등에 의한 토양오염 시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토양환경 개선 조치 등
- 주변 등 환경정리 : 주변 환경오염 예방 및 토지활용 등을 위한 부대 조치
- 부대 비용 : 사전 조사, 품질검사, 용역설계, 입찰, 민원 대응 등 관련 비용
- * 지원 제외 : 매몰지 발굴소멸이나 환경오염방지 등과 관련 없는 진입로, 부지 정비 등

2)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

- 미생물소독약 구입 등 저장조 매몰 사체 분해 및 환경관리를 위한 비용, 매몰지 이설·소멸처리와 관련된 비용, 사체분해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발굴 관련 비용, 매몰지 점검 후 복구·시정조치 등을 위한 비용

3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

※ 세부사항은 「2024년도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2024년도 가축폐사체 수거함 및 수거처리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 사업목적

- 가축전염병에 의한 살처분가축 및 농장 폐사가축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으로 재활용

■ 사업주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사업대상

1) 살처분가축 처리시설 지원

- 살처분가축처리시설(고정식랜더링 등)을 신규로 운영하려고 하거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사업자
- * (지원 제외) 도축장 도축라인과 관련된 랜더링 시설

2) 살처분가축 이동식처리장비 등 지원

- 살처분가축 이동식열처리 장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 지자체 등

3) 가축폐사체 수거함 및 수거처리비 지원

-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양돈농가 및 폐사체 처리시설·장비를 갖춘 지자체, 사업자, 단체 등

■ 지원자격

1) 살처분가축 처리시설 지원

- 살처분 가축 처리시설 및 주변 환경시설(폐수처리장, 악취제거 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소유한 단체 또는 개인
- 사업비 자부담이 가능하고, 건물 및 주변 환경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

2) 살처분가축 처리장비 지원

- 가축전염병 살처분 가축 또는 매몰지 잔존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농·축협, 축종별 생산자단체 등) 또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개인사업자
- 최근 5년간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살처분가축 처리 또는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실적이 있거나, 매몰지 발굴복원 관련 연구실적이나 특허 등이 있는 업체

3) 가축폐사체 수거함 및 수거처리비 지원

- 전국 양돈농가 및 폐사체 처리시설 시설·장비를 갖춘 지자체, 사업자, 단체 등

■ 사업비 및 지원비율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 조정 가능(농식품부 사전승인 필요)

1) 살처분가축 처리시설 지원

- 사업비 : 3,000백만원 (국비 900, 지방비 900, 자부담 1,200)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3개소 × 2,000백만원 × 연차사업(50%) × 국비 30%

2) 살처분가축 처리장비 지원

- 사업비 : 1,800백만원 (국비 540, 지방비 540, 자부담 720)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6개소 × 300백만원 × 국비 30%

3)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 사업비 : 27백만원 (국비 8, 지방비 8, 자부담 11)
- 사업량 및 지원단가: 33개 × 800천원 × 국비 30%

4)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 사업비 : 7백만원 (국비 2, 지방비 2, 자부담 3)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2천수 × 3천원 × 국비 30%

■ 지원대상

1) 살처분가축 처리시설 지원

- 살처분 가축처리(고정식랜더링 등) 기계·장비·소독 시설 구입·설치 및 설계·공사감리, 건물 신·증축 및 개보수 비용
- 살처분 가축 사체 보관용 저장 창고(냉장·냉동), 운반용 밀폐 차량 등 부대 시설 및 장비

2) 살처분가축 처리장비 지원

- 이동식 열처리 기계·장비 및 부대시설의 구입·설치비 일체
 - 살처분 한 가축사체를 분쇄·열처리 할 수 있는 이동식 처리장비
 - 살처분 가축사체를 분쇄할 수 있는 고성능 파쇄기 구입(제작)비용
 - 살처분 및 사체처리를 위한 밀폐 보관 용기, 저장탱크 등 부대 장비
 - 살처분 후 장비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고압 세척·소독기
 - 가축 사체, 잔존물, 방역복 등을 소각할 수 있는 이동식 소각 장비
- 화학적 처리에 필요한 부대장비
 - 저장조 등

3)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 가축폐사체 처리를 위한 수거함 구입·제작·대여 및 폐사체 수거함 관리를 위한 교체·수리 등의 비용

4)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 가축폐사체 수거, 운반비용, 랜더링 등 처리 및 수거 시 주변 환경 소독 등의 제반비용

4 사업 세부내역

■ 지자체별 자금배정 내역(가축매몰지 관리·소멸·발굴·소멸)

(단위 : 천원)

시 도	'23년도 사업비		'24년도 사업비				세 부 내 역
	사업량	국비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0	※ 사업실시 세부사항은 별도로 시행된 2024년 사업지침에 따름
부산	-	-	-	-	-	0	
대구	-	-	-	-	-	0	○ 사업주관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인천	-	-	9	180,000	-	180,000	○ 사업대상 - '10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 중 매몰된 사체의 분해를 확인하지 않고 관리 해제된 모든 매몰지
광주	-	-	-	-	-	0	- 관리 중 매몰지 중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발굴허용 가능한 매몰지
대전	-	-	-	-	-	0	○ 사업비 및 지원 비율 - 지원 : 국비 40%, 지방비 60%
울산	-	-	-	-	-	0	- 사업비 : 1,400백만원 * 70개소×50,000천원×40%(국비)
세종	-	-	-	-	-	0	- 규모, 형태 등에 따라 사업비·사업량은 변동 가능
경기	73	1,460,000	10	200,000	300,000	500,000	○ 지원대상 - 매몰지 발굴: 발굴 준비작업, 주변 소독 및 작업자 안전조치, 발굴작업, 잔존물 분리 등
강원	5	92,000	34	680,000	1,020,000	1,700,000	* 사체분해 확인을 위한 시굴·발굴 포함
충북	4	92,000	-	-	-	0	- 잔존물 처리: 매몰지내 잔존 사체, 플라스틱, 비닐, 침출액 등을 처리하거나 랜더링, 화학적 처리, 미생물 분해처리 등 후 남은 잔존물 처리
충남	10	120,000	4	80,000	120,000	200,000	- 토양복원: 침출수 유출 등 토양오염 시 복토하는 등 토양환경 개선 조치 등
전북	-	-	-	-	-	0	- 환경정리: 주변 환경오염 예방 및 토지활용 등을 위한 부대 조치
전남	5	432,500	-	-	-	0	- 부대비용: 사전조사, 품질검사, 용역 설계, 입찰, 민원 대응 등 관련 비용
경북	1	20,000	4	80,000	120,000	200,000	* 지원 제외: 매몰지 발굴소멸이나 환경오염 방지 등과 관련없는 진입로, 부지 정비 등
경남	1	20,000	-	-	-	0	
제주	-	-	1	20,000	-	20,000	
유보액	136	2,463,500	8	160,000	240,000	400,000	
계	235	4,700,000	70	1,400,000	1,800,000	3,200,000	

■ 지자체별 자금배정 내역(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후관리)

(단위 : 천원)

시 도	'23년도 사업비		'24년도 사업비				세 부 내 역
	사업량	국비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0	※ 사업실시 세부사항은 별도로 시행된 2024 사업지침에 따름 ○ 사업주관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사업대상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조성된 매몰지 중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거나 악취 제거 등 추가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매몰지 ○ 사업비 및 지원 비율 - 지원: 국비 40%, 지방비 60% - 사업비 : 80백만원 * 32개소×6,250천원×40%(국비) - 규모, 형태 등에 따라 사업비, 사업량은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기기 및 탈취제 구입 비용, 매몰지 소독 비용, 미생물 구입 등 잔존물 분해 비용, 매몰지 이설·소멸처리 관련 비용, 잔존물 분해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발굴 관련 비용, 매몰지 점검 후 복구·시정조치 등을 위한 비용 등
부산	1	2,500	-	-	-	0	
대구	-	-	-	-	-	0	
인천	1	2,500	1	2,500	3,750	6,250	
광주	-	-	-	-	-	0	
대전	-	-	-	-	-	0	
울산	-	-	-	-	-	0	
세종	-	-	-	-	-	0	
경기	20	50,000	10	25,000	37,500	62,500	
강원	9	22,500	2	5,000	7,500	12,500	
충북	-	-	-	-	-	0	
충남	2	5,000	-	-	-	0	
전북	-	-	-	-	-	0	
전남	3	7,500	-	-	-	0	
경북	3	7,500	3	7,500	11,250	18,750	
경남	2	5,000	-	-	-	0	
제주	1	2,500	-	-	-	0	
유보액	20	50,000	16	40,000	60,000	100,000	
계	62	155,000	32	80,000	120,000	200,000	

■ 지자체별 자금배정 내역(살처분가축처리시설·장비-시설·장비)

(단위 : 천원)

시 도	'23년도 사업비			'24년도 사업비						세 부 내 역
	사업량		국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시설	장비		시설	장비					
서 울	-	-	-	-	-	-	-	-	0	※ 사업실시 세부사항은 2024년 사업지침에 따름 ○ 사업주관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사업대상 - 살처분가축처리시설을 운영중/운영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사업자로, 시설·부지를 소유하고 사업비의 40%의 자부담 가능한 자 * (지원제외) 도축장 관련 등 질병 발생시 살처분가축처리가 불가능한 시설 - 이동식 열처리 장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사업비의 40%의 자부담 가능한 자 ○ 사업비 및 지원 비율 - (시설) 8개소×2,000백만원 × 1년차 50% × 국비30% * 개소당 지원액은 사업계획 및 시설 특성·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장비) 6대×300백만원×국비30% * 장비당 지원금액은 사업계획 및 시설 특성·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한도:5억/대) ○ 지원대상 - (시설) 기계장비·소독 시설의 구입설치, 설계비, 공사감리비, 건물 신·증축 및 개보수 비용 등 * 부지매입·운영비는 지원제외, 추가 소요비용은 자부담 - (장비) 이동식열처리 기계·장비, 부대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 유보액 배정분은 추후 시도별 수요 및 예산 확정에 따라 배정 예정
부 산	-	-	-	-	-	-	-	-	0	
대 구	-	-	-	-	-	-	-	-	0	
인 천	-	-	-	-	-	-	-	-	0	
광 주	-	-	-	-	-	-	-	-	0	
대 전	-	-	-	-	-	-	-	-	0	
울 산	1	-	90,000	-	-	-	-	-	0	
세 종	-	-	-	-	-	-	-	-	0	
경 기	1	-	291,000	1	1	381,000	381,000	508,000	1,270,000	
강 원	-	-	-	-	-	-	-	-	0	
충 북	-	1	45,000	-	-	-	-	0	0	
충 남	-	-	-	-	-	-	-	-	0	
전 북	1	1	390,000	-	1	90,000	90,000	120,000	300,000	
전 남	2	-	600,000	1	2	480,000	480,000	640,000	1,600,000	
경 북	-	1	150,000	-	-	-	-	0	0	
경 남	-	-	-	-	-	-	-	-	0	
제 주	-	-	-	2	-	309,000	309,000	-	618,000	
유보액	3	3	1,374,000	-	2	180,000	180,000	240,000	600,000	
계	8	6	2,940,000	4	6	1,440,000	1,440,000	1,508,000	4,388,000	

■ 지자체별 자금배정 내역(살처분가축처리시설·장비-폐사체수거함)

(단위 : 천원)

시 도	'23년 사업비		'24년도 사업비					세 부 내 역
	사업량	국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서 울	-	-	-	-	-	-	0	※ 사업실시 세부사항은 2024년 사업지침에 따름
부 산	8	2,000	-	-	-	-	0	○ 사업주관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대 구	-	-	-	-	-	-	0	○ 사업대상
인 천	37	9,000	-	-	-	-	0	- 전국 양돈농가
광 주	-	-	-	-	-	-	0	○ 사업비 및 지원 비율
대 전	-	-	-	-	-	-	0	- 지원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울 산	17	4,000	-	-	-	-	0	- 사업비 : 8백만원
세 종	50	12,000	-	-	-	-	0	* 33개 × 800천원 × 30%(국비)
경 기	506	121,000	-	-	-	-	0	- 규모, 형태 등에 따라 사업비· 사업량 변동 가능
강 원	204	49,000	-	-	-	-	0	○ 지원대상
충 북	300	72,000	-	-	-	-	0	- 가축폐사체 처리를 위한 수거함 구입·제작·대여 등의 비용
충 남	1,110	266,000	26	6,320	6,320	8,427	21,067	- 폐사체 수거함 관리를 위한 교체· 수리 등의 비용
전 북	641	154,000	-	-	-	-	0	
전 남	512	123,000	-	-	-	-	0	
경 북	662	159,000	-	-	-	-	0	
경 남	591	142,000	-	-	-	-	0	
제 주	262	63,000	7	1,680	1,680	2,240	5,600	
유보액	-	-	-	-	-	-	-	
계	4,892	1,174,000	33	8,000	8,000	10,667	26,667	

■ 지자체별 자금배정 내역(살처분가축처리시설·장비-폐사체수거처리비)

(단위 : 천원)

시 도	'23년 사업비		'24년도 사업비					세 부 내 역
	사업량	국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서 울	-	-	-	-	-	-	0	※ 사업실시 세부사항은 2024년 사업지침에 따름 ○ 사업주관 :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사업대상 - 전국 양돈농가 ○ 사업비 및 지원 비율 - 지원: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비 : 2백만원 * 2천수×3천원/kg× 30%(국비) - 규모, 형태 등에 따라 사업비·사업량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가축폐사체 수거비용, 운반비용, 랜더링 등 처리비용 일체 - 수거 시 폐사체의 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주변환경 소독 등의 제반비용
부 산	222	200	-	-	-	-	0	
대 구	-	-	-	-	-	-	0	
인 천	21,111	19,000	-	-	-	-	0	
광 주	-	-	-	-	-	-	0	
대 전	-	-	-	-	-	-	0	
울 산	2,222	2,000	-	-	-	-	0	
세 종	7,222	6,500	-	-	-	-	0	
경 기	132,223	119,000	-	-	-	-	0	
강 원	31,111	28,000	-	-	-	-	0	
충 북	-	45,000	-	-	-	-	0	
충 남	168,111	151,300	-	2,000	2,000	2,667	6,667	
전 북	105,555	95,000	-	-	-	-	0	
전 남	111,111	100,000	-	-	-	-	0	
경 북	116,667	105,000	-	-	-	-	0	
경 남	98,889	89,000	-	-	-	-	0	
제 주	42,222	38,000	-	-	-	-	0	
유보액	-	200	-	-	-	-	0	
계	836,444	798,000	0	2,000	2,000	2,667	6,667	

5 사업비 집행 및 실적 보고

■ 사업비 배정

- 연간 배정계획에 따라 자치단체 경상보조(3940-341-330-01) 및 자본보조(3940-341-330-03)로 국고 송금

■ 자금 집행

-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집행하고, 지방비 부담액도 동시 집행
- 사업 비목(경상보조, 자본보조)에 따라 집행 가능한 지원 내역 검토 후 집행
- 「보조금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시 등록 및 보고

■ 사업 수요 및 추진실적 보고

- 사업수요 : '25년 사업 희망 예산 수요내역을 '24.3.31.까지 제출
- 실적보고 : 시·도는 농식품부의 요청 시 해당 사업의 실적을 수시·정기 제출
- 완료보고 : 시·도는 '25.1.15.까지 사업실적 제출(별도서식 미송부시 별첨1에 따라)

〈 별첨 1 〉

2024년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 추진실적 보고

내역 사업명	사업비 배정					집행 누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살처분가축 시설·장비 지원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살처분가축처리 장비										
◦가축폐사체 수거함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계										

VII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사업

(일반회계 : 예산과목 7001-100)



■ 사업목적

- 가축방역, 동물검역, 축산물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를 일선 현장에 배치·운영하여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
-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 체계를 구축하여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후처리 역할 수행

■ 운영인원 : 423명(1년차 147, 2년차 149, 3년차 127)

■ 신 분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

■ 근무처 : 시·군·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검역본부

■ 예산액 : 14,196,363천원(국비 100%)

■ 보수 : 근무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에서 3호봉 수준

※ 보수는 국비로 지급하고, 여비·초과근무 등은 지방비에서 지급

■ 담당업무

- 가축방역 :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 및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 질병예찰 등
- 축산물위생관리 : 원유·도축 검사, 가공장 위생관리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 등
- 동물검역 :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 질병검사·위생검사 등

■ 복무·병역 관계 : 3년간 복무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필한 것으로 함

■ 급여 지급방법

- 검역본부 및 시·도는 지역본부·사무소, 동물위생시험소, 시·군·구 등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소요액을 파악하여 매 분기 시작 월 5일까지 제출
- 농식품부는 검역본부 및 시·도별 지출한도액을 배정
- 검역본부, 시·군·구, 동물위생시험소는 공중방역수의사별 계좌 입금 조치

■ 주요 추진일정(예정)

- 역종분류(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및 군사교육 : 2.23. / 3.14. ~ 4.4.
- 공중방역수의사 직무교육(방역행정과정) : 4.15. ~ 4.18.(4일간)
- 공중방역수의사 임관식 및 근무기관 배치 : 4.4.

〈 공중방역수의사 배치현황 〉

(단위 : 명, '24.1월 기준)

구분	15기 ('21년 임용)	16기 ('22년 임용)	17기 ('23년 임용)	계
검역본부	28	14	9	51
서울	-	-	-	-
부산	1	-	-	1
대구	4	-	-	4
인천	1	2	-	3
광주	-	-	-	0
대전	-	2	-	2
울산	3	-	-	3
세종	-	2	1	3
경기	12	24	19	55
강원	13	14	12	39
충북	9	16	11	36
충남	18	13	17	48
전북	16	9	17	42
전남	12	15	22	49
경북	19	20	5	44
경남	7	16	12	35
제주	4	2	2	8
계	147	149	127	423

※ 신규 공중방역수의사(18기) 배치계획은 추후 확정·통보할 계획

가축 방역기관 연락처



가축 방역기관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지역
			DDD	번 호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30110	044 FAX	201-2519/2521 868-0628	전국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지역
			DDD	번 호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 관리계)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39660	054 FAX	912-0361/3 912-0383	전국

● 시·도

시·도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번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02-2133-7652	2133-0796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51-888-5121~2	888-4979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053-803-3421	803-3439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032-440-4394	440-8663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	062-613-4691	613-3969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042-270-3842	270-3789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31	229-2919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위생방역과	044-300-7621~3	300-7619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82	8030-3479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33-249-2682	249-4206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043-220-3562	220-3569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	041-635-2552	635-3491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3-280-2652~3	280-2639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061-286-6571~3	286-4393
경상북도	동물방역과	054-880-3443~7	880-3449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055-211-6562~6	211-6559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51~3	710-2669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기관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지역
			DDD	번 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	13818	02 FAX	570-3435 570-3442	서울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724	46510	051 FAX	330-6120 331-6121 330-6119	부산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15	42183	053 FAX	760-1300~4 760-1302	대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7번길 34	22320	032 FAX	440-5642~3 440-8863	인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584	61954	062 FAX	613-7651~3 613-7649	광주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7	34142	042 FAX	270-6895 270-6869	대전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청룡들로 6번지	44642	052 FAX	229-5241 229-5249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북부2로 12	30033	044 FAX	301-3861~2 301-3819	세종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지역
				DDD	번 호	
동 경물 위 기생 시 도협 소	본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번길 63	16381	031 FAX	8008-6270~1 8008-6247	수원, 안양, 부천 안산, 과천, 시흥 군포, 의왕, 김포 성남, 오산, 화성 광명
	동부지소	경기도 이천시 구만리로 96-3	17391	031 FAX	8008-6371 636-3676	하남, 여주 광주, 이천, 양평
	남부지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31	17560	031 FAX	8008-6341 651-1614	용인, 평택 안성
	북부동물 위생시험소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229-26	11459	031 FAX	8008-6431 8008-6404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고양 파주
	북부지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릉로 271	12035	031 FAX	8008-6472 593-4012	남양주, 구리, 가평, 포천
강동 원물 특위 별생 자시 치협 도소	본 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	24203	033 FAX	248-6621 248-6610	춘천, 철원, 화천, 양구
	동부지소	강원 강릉시 모산로 214	25606	033 FAX	610-8702 610-8722	강릉, 동해, 삼척, 태백
	남부지소	강원 원주시 입춘내길 47	26457	033 FAX	737-6771 737-6790	원주, 홍천, 횡성
	중부지소	강원 평창군 평창읍 제방길 15-8	25377	033 FAX	339-8852 339-8866	영월, 평창, 정선
	북부지소	강원 속초시 장성천길 15-14	24802	033 FAX	634-8532 634-8543	인제, 고성, 속초, 양양
동 충물 청위 복생 도시 협 소	본 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새동네길 39	28153	043 FAX	220-6231~4 220-6229	청주, 진천, 괴산, 증평
	중부지소	충북 충주시 팽고리산길 13	27336	043 FAX	220-6311 220-6319	충주, 음성
	북부지소	충북 제천시 내토로73길 10	27139	043 FAX	220-6351 220-6359	제천, 단양
	남부지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회동로 230	29140	043 FAX	220-6331 220-6339	보은, 옥천 영동
동 충물 청위 남생 도시 협 소	본 소	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2233번길 22	32280	041 FAX	635-7021 635-7967	보령, 청양, 홍성
	아산지소	충남 아산시 음봉로 337번길 23	31415	041 FAX	635-7131 548-2954	천안, 아산
	공주지소	충남 공주시 우성면 귀산길 91-8	32528	041 FAX	635-7101 881-0129	공주, 금산, 계룡
	당진지소	충남 당진시 역천로 632-18	31788	041 FAX	635-7170 357-5850	예산, 당진
	부여지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52번길 32-4	33159	041 FAX	635-7191 635-7975	논산, 부여, 서천
	태안지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굴포길 37	32138	041 FAX	635-7221 675-4348	서산, 태안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관할지역
				DDD	번 호	
전동 북물 특위 별생 자시 치협 도소	본 소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8-4	55632	063 FAX	290-5361 290-5411	전주, 완주, 무주, 진안, 장수
	남부지소	전북 남원시 요천로 1975	55725	063 FAX	290-6571 290-6598	남원, 임실 순창
	서부지소	전북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800	56134	063 FAX	290-6542 290-6568	정읍, 고창, 부안
	북부지소	전북 익산시 하나로 15길 149	54531	063 FAX	290-6512 290-6538	군산, 익산 김제
동 전물 라위 남생 도시 협 소	본 소	전남 강진군 작천면 금강로 619	59213	061 FAX	286-6130 434-9131	나주,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완도, 진도
	동부지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8	58010	061 FAX	286-6300 286-6308	순천, 여수, 광양 보성, 구례, 고흥
	서부지소	전남 영광군 묘량면 밀재로 385	57057	061 FAX	286-6870 352-1110	목포, 무안, 함평, 영광, 신안
	북부지소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영천성도길 212	57368	061 FAX	286-6670 380-7979	담양, 곡성, 화순, 장성
동 경물 상위 북생 도시 협 소	본 소	대구 북구 구리로 43	41405	053 FAX	310-5522 326-1066	구미, 칠곡, 군위 성주, 고령, 경산 영천, 청도
	북부지소	경북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	36621	054 FAX	850-3310 850-3329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 봉화
	동부지소	경북 경주시 알천북로 435	38101	054 FAX	778-3520 748-6685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
	서부지소	경북 상주시 영남제일로 1276	37240	054 FAX	530-4121 534-1755	김천, 상주 문경, 예천
동 경물 상위 남생 도시 협 소	본 소	경남 진주시 초전북로 104	52733	055 FAX	254-3022 254-3059	진주, 사천 산청, 하동
	중부지소	경남 김해시 서부로 1074-21	50876	055 FAX	254-3212 254-3229	창원, 김해 함안
	동부지소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618	50636	055 FAX	254-3382 254-3389	창녕, 양산 밀양
	북부지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인덕로 1665	50228	055 FAX	254-3312 254-3329	합천, 거창 의령, 함양
	남부지소	경남 통영시 도산면 남해안대로 2018-23	53000	055 FAX	254-3352 254-3369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제주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941	63344	064 FAX	710-8531~5 710-8529	제주